



2008

서울시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행정기반 구축 방안

Policy Recommendations for Food Safety in Seoul

신 경 희



서울시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행정기반 구축 방안
Policy Recommendations for Food Safety in Seoul

2008

연구진

연구책임 신 경 희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원 김 경 혜 • 창의시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정 순 주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자문위원 곽 노 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신 성 균 • 한국여자대학 교수
오 원 택 • 푸드원텍 대표이사
이 철 호 • 고려대학교 교수
정 기 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 선 옥 •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식품안전 문제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정책과 행정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식품안전사고의 유형과 원인이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임. 이에 영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식품안전을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식품안전 관련 기구의 확대와 강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음. 우리나라도 2008년 6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올 12월에 시행할 예정임.
- 서울시의 경우, 식품안전이 2008년 시장 신년사에서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제시됨.
 - 서울시에 2008년 1월 식품안전과가 설치되면서, 식품안전업무가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확대 개편되었음. 중앙정부 차원의 식품안전정책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식품안전과를 신설하고 식품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차원의 식품안전 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없고,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기반도 미약한 실정임.
- 이 연구의 목적은 식품안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차원의 식품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행정기반 구축에 대해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연구는 크게 다음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문헌연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세계의 식품안전 정책방향과 식품안전관리체계 동향을 살펴봄.
 - 둘째, 문헌연구 및 행정내부자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제도와 행정체계 현황을 분석함.

- 셋째, 기존 통계자료 및 행정내부자료의 활용, 전문가·공무원 설문조사, 서울시민 설문 조사를 통해 서울시 식품안전행정여건과 관리실태를 분석함.
 - 넷째,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식품안전 정책방향과 식품안전 행정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함.
- 식품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
- 서울시 식품안전 정책방향 및 행정기반 구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식품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 자치구의 식품위생행정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은 식품안전 19개 업무별 평가, 각 업무별 행정수요 변화 전망, 각 업무별 핵심 행정주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그리고 식품안전 업무별로 서울시의 역할 중요도 및 서울시 식품안전을 위한 행정기반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식품분야 민간 전문가 488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송부하였고, 이 중 75명이 응답을 해주었음. 공무원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식품안전·위생분야 공무원 140명이 응답을 함. 설문조사는 2008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음.
 - 응답자 중 140명(67.3%)이 공무원으로, 이 중 일반행정직이 60명, 전문직(보건직, 수의직, 농업직, 축산직 등)이 80명임. 응답자 중 민간 전문가는 68명으로 교수, 민간 및 공공기관 연구원, 소비자단체 활동가 및 식품분야 언론인 등이 포함되었음.
-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활용
- 서울시 마케팅담당관에서 식품안전과와 협의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및 식품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는 2008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음. 조사대상은 만20세 이상 서울 거주 성인 남녀로, 조사표본은 1,000명임.

3. 세계의 식품안전관리의 기본방향

-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원칙, 위험분석체계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 지향
-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망의 모든 단계에 걸쳐 식품안전을 일관관리하는 것이 추세임. 그리고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의 세 요소로 구성된 위험분석체계 개념을 도입하여 식품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런던시와 도쿄도의 식품안전정책도 기본적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원칙, 위험분석체계를 수용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과제와 사업을 도출하고 있음.

- 식품안전과 보건정책의 연계 및 통합관리
 -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과 보건건강정책은 연계 및 통합되고 있으며, 식품안전이 보건건강정책의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
- 식품안전에 시민 참여 중시
 - 식품안전 관리에서 소비자 우선주의, 소비자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생산자, 사업자 책임 강조 및 지원사업 중시
 - 제5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식품안전성 확보에 생산자, 제조업자, 거래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결의함.
- 시민 및 학교의 식품안전교육 강조
 - 제5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시민 및 학생 대상 건강·영양교육프로그램에 식품안전문제를 포함하도록 제안함. 런던시는 식품전략 6대 과제의 하나로 시민들의 식품 이슈 이해도 증진과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사업을 정하고 있음. 특히 학교의 주요 교육과정에 식습관, 식품, 요리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음. 도쿄도도 식품안전 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 식육계획(食育計劃)을 수립하여 추진함.
- 조사연구 강조
 - 도쿄도는 식품안전 정책의 기반이 되는 생산·제조기술 발전, 식품검사법 개발·개량, 식품안전 기초연구 추진을 강조하고 있음. 런던시는 식품관련 이슈 중 논쟁의 소지가 있는 이슈에 대한 연구조사, 시책추진에 필요한 기초연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건강과 식품 간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4. 세계의 식품안전 행정기반체계

- 법제도의 구축
 -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기존의 식품안전 관련법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음. 영국은 기존의 「식품안전법」과 별도로 1999년 「식품기준법」을 제정하고, 일본은 「식품위생법」과 별도로 2003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도쿄도는 식품안전정책 기본방향과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는 ‘도쿄도 식품안전조례’를 2004년에 제정함.

- 식품안전평가 전문기구의 신설과 기능 강화
 - 식품안전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과학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식품안전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 신설과 운영
 - 도쿄도는 식품분야 전문가와 사업자, 시민대표로 ‘식품안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전문가와 공모방식으로 선출된 도민대표로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런던시는 식품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식품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20명으로 ‘런던식품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및 조정 네트워크 구축
 - 도쿄도는 식품안전업무와 관련해 복지보건국, 생활문화국, 환경국, 산업노동국으로 ‘식품안전대책추진조정회의’를 구성하고, 이슈별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업무협력을 하고 있음. 그리고 도쿄도와 자치구, 국가, 다른 자치체 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음.
 - 런던식품위원회도 중앙부처를 비롯해, 런던기초자치단체협회, 런던지방청, 런던시의 여타 위원회와 협력네트워크를 맺어 사업을 하고 있음.
- 행정주체별 식품안전 관리기능의 역할 명확화
 - 도쿄도는 자치구와 도구협정(都區協定)을 맺어 식품안전 감시지도와 관련해 역할 분담을 하고 있음.
 - 런던시는 식품안전을 포함해 식품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런던의 식품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기능을 함. 음식점 식품안전 감시·감독,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표시제 감시 등의 감시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함. 식품기준청은 기초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관리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식품(안전)기본계획의 수립
 - 런던시는 식품안전을 포함해 건강, 환경, 경제, 사회·문화를 통합하는 10개년 런던식품 전략계획(2007~2016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도쿄도는 5개년 도쿄도 식품안전추진계획(2005~2009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인력의 전문성

- 도쿄도 치요타구(千代田區)의 경우 음식점, 제조업 시설허가와 유통식품 지도감시 등의 감시업무를 15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이 하고 있음. 식품위생감시원은 정규직 전문공무원(의사, 수의사, 약제사, 공중위생 전공 등)임. 치요타구(千代田區)는 식품위생감시원의 부족한 인력 확충과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과제로 삼고 있음.

5. 국내 식품안전관리제도와 행정체계

○ 부처별 식품안전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기반 마련

-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2008. 12. 14 시행)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업무 확대

- 식품안전기준법에 지방자치단체(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 수립과 시행, 연도별 식품안전 관리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시행에 따르는 인력과 재원을 우선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009. 3. 22 시행)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수판매업소 지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품목과 의무대상 음식점이 확대됨. 따라서 원산지표시 감시업무가 대폭 늘어나게 됨.

○ 위험평가 기구의 분산화 및 자율성을 담보하기 힘든 체계

-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에 의해 부처별 식품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음. 식품안전기본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장관(식약청 포함 7개 부서)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식품안전 관계부처 합동회의(2008년 7월 11일)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과학적·전문적 조사연구 및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소비

자 단체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영국과 일본, EU 국가들은 식품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위험관리 기구(정부부처)와 독립된 위험평가기구를 만들거나 각 부처에 분산된 위험평가 기구를 통합하여 기능을 강화하면서 위험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험평가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이 위험관리를 하고 있음.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농촌진흥청 등에서도 위험평가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소관 기구들이 위험관리를 하고 있음. 즉 위험평가 기구가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기능도 미약하여, 정부부처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8개 정부부처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하에 위험평가를 담당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위험평가 기구가 중복적으로 개설되는 것이며, 또한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 위험관리 행정체계가 복잡하여 업무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체계
 - 식품품목별, 식품망 단계별로 위험관리를 하는 행정부처가 다름. 특히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감시·지도업무의 경우, 식약청, 지방식약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업무 중복 가능성과 업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식품관련업소 관리·감시·지도업무의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
 - 식품관련업소 감시·지도업무의 행정주체가 복잡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시·지도업무의 대부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6. 서울시 식품안전행정기반

- 식품망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 행정체계 틀은 구비되어 있음.
 - 복지부 식품안전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생활경제담당관, 농수산물공사, 농업기술센터, 특별사업경찰지원과 등 식품 관련 조직이 6개로, 1차 생산단계, 제조·가공단계, 유통, 소비에 이르는 단계까지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체계는 갖추어져 있음. 각 부서는 식품망 단계별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음. 복지국 식품안전

추진단은 제조·가공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단계 식품의 안전성 평가업무를 하고 있음.

○ 식품안전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 및 예산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

-서울시 식품안전 정책의 추진근거가 되는 제도적 틀로 ‘서울시식품안전조례’가 2008년 9월 제정됨. 그리고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 이어 식품관련단체 협의회, 식품안전대책자문단, 식품안전감시협의회가 구성되었음. 이로써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 및 기구의 틀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의 2007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약 954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제도기반, 예산확보와 같은 기본틀을 현재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향후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과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봄.

○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통합성 결여

-최근 세계적으로 보건건강정책에서 식품안전 등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안전과 관련된 식중독관리업무는 1차 담당부서가 보건소와 병원임. 서울시의 경우 보건 및 건강업무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되어 있어, 식품안전과 보건업무의 통합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음. 복지국 소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식품안전성 분야 외에 전염병 관련 시험연구,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훈련, 의약품팀이 있어 보건업무와도 연관이 있음. 따라서 보건건강과 식품안전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6개 조직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아보면 기본적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단계별로 안전관리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부서별 사업들이 식품안전 일관관리라는 통합된 구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위험정보교환 담당부서 부재와 감시·관리감독 중복

-식품안전관리에서는 위험정보교환 업무가 중요함. 식품안전에서 식품안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며, 이는 위험정보교환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달려 있음. 하지만 식품안전 추진단의 조직이 감시·관리감독 위주로 구성되면서, 팀별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음.

7. 자치구 식품안전 행정기반

○ 인력 배치의 합리적 기준 부재

- 자치구별 식품안전 업무 담당 인력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배치되고 있음. 자치구별로 관리해야 하는 식품관련업소 수가 다르며, 유형별 업체 수도 다름. 관리업소 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1만 4,541개)의 보건위생과 인력은 9명인데 반해, 관리업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용산구(4,717개) 보건위생과와 성북구(6,114개) 건강정책과의 인력은 각각 15명임.

- 25개 자치구 식품안전 관련부서의 직군별 인력은 일반행정직이 46.6%, 보건·수의직 등 전문직군이 42.6%임. 자치구별로 일반행정직과 보건·수의직 등 전문직군 인력에 차이가 있음. 종로구는 보건·수의직 등 전문직군 인력이 1명인 반면, 광진구는 9명으로 격차가 큼.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행정직과 보건·수의직의 인력 배치기준이 없음.

○ 식품안전 전담 인력의 부족

- 업무내용과 업무량을 기준으로 인력산출을 하는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치구의 식품안전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자치구 보건위생과(환경위생과, 위생청소과)의 평균 인력은 13명이나, 이중 공중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제외하면 식품안전 담당인력은 자치구당 평균 6.5명 수준에 불과함.

- 도쿄도 치요타구의 경우, 식품관련업소가 총 1만 664개로, 정규직 전문인력(의사,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식품위생감시원 15명이 있음. 치요타구는 식품위생감시원 수가 부족하여, 허가업무, 민원, 상담 등에 업무가 국한되고, 직접 감시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의 인원 확충을 고려하고 있음.

- 자치구의 식품안전 관련 업무는 관내 식품관련업체의 영업허가 및 관리, 유통식품 수거와 검사 의뢰,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관리감독을 포함해 약 13가지에 달함. 식품관련업체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 등의 업무는 업무특성상 절대 시간을 필요로 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최종 행정처분권한은 공무원이 해야 함. 3개 자치구의 보건위생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층면접조사에 의하면 식품안전 업무의 범위가 식품관련업체 영업허가 및 관리, 관내 통계자료 작성과 보고, 그리고 시울시가 배당한 식품수거업무와 합동단속반 참여에 국한되고 있음.

○ 식품안전 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미흡

- 자치구 식품안전 전담인력 부족은 자치구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함.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위생행정평가 결과(2006년, 2007년)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음.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실적 또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음. 그리고 수거검사와 위반업소 처분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받음. 자치구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5개 자치구의 경우 특히 위생담당인력이 부족하며,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점검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8.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여건과 관리실태

- 서울은 식품의 대소비지, 유통지의 특성을 가짐.
 - 서울시의 식품 1차 생산(재배, 사육) 비중은 전국의 1%에도 못 미침. 식품제조·가공업 비중은 이보다 높은 14.3%를 차지하지만, 식품산업 매출액이 전국의 3.8%에 불과함. 반면 서울의 도매시장 청과물 유통량은 부산시의 4.5배, 수산물은 인천시의 7.1배임. 서울의 식품접객업소 수는 전국의 19.4%, 식품판매업은 17.9%, 수입식품판매업은 47.4%,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29.4%를 차지함. 이처럼 서울은 식품 생산지 역할보다는 식품의 대소비지, 유통지의 특성을 가짐.
- 서울시민의 식품안전 관심도에 비해 식품안전 신뢰도가 매우 낮음.
 - 서울시민의 86.1%는 식품안전에 관심이 있음. 그러나 유통식품이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시민(40.7%)보다 신뢰하지 않는 시민(59.1%)이 더 많음.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84.6%에 이름.
 - 식품생산업체, 유통업체, 판매업 종사자를 신뢰한다는 서울 시민은 50%도 되지 않음. 시민의 66.1%가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며, 35.7%가 서울시의 식품안전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음.
-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식품안전관리 19개 업무 중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업무는 하나도 없음. 2개 업무만이 보통이라고 평가를 받고, 나머지 17개 업무는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II. 정책건의

1.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기본방향

- 부서별 식품사업을 식품안전 일관관리 개념으로 총괄관리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생활경제담당관, 식품안전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자치구별로 추진되고 있는 식품관련사업을 식품망 단계별 일관관리 개념으로 총괄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의 부서별 식품사업을 종합해보면 식품망 단계별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추진되며, 식품망 단계별 식품안전 일관관리(즉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지는 않음. 부서별 단위사업의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일관관리 개념을 적용하여 부서별 사업들의 총괄관리가 필요함.
- 식품안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 적용
 - 식품안전 문제를 환경, 식품산업, 건강, 음식문화와 통합하여 접근하는 방향이 필요함. 이들은 상호의존적인 정책영역으로, 상호 상승시키는 관계에 있음. WHO(세계보건기구)는 식품안전이 보건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식품 안전성 향상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등의 경제적 이득, 경제발전(식품시장 확대, 관광경쟁력 제고) 효과를 강조하기도 함.
 - 런던시는 식품안전, 환경, 식품경제, 음식문화, 식품안보가 상호의존적 정책분야로 통합적 식품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계도시 런던'이란 시정목표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음. 이런 차원에서 런던시의 식품정책은 8단계의 식품망 단계(1차 생산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단계까지)마다, 환경, 건강, 식품경제, 음식문화, 식품안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이런 통합적 식품정책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안전 일관관리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예를 들면 로컬푸드(local food)유통사업은 식품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면서, 동시에 유통시간 단축과 이력추적관리의 용이성 등으로 식품안전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진됨. 또한 환경기준이 높은 영농방식 채택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중개서비스는 환경부담 감소와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되고 있음. 런던시의 임대 채소밭 확대사업의 경우, 환경, 식품생산에 대한 시민 및 학생교육, 식품안전 확보라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온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이해관계자 식품안전 역량 강화

- 최근 식품안전 사건의 원인 및 식품 관련 이슈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됨. 식품안전 문제는 식품 국제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가간 분쟁을 야기할 잠재성이 있음. 그리고 정부 불신,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분야가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생산자·사업자, 위험평가자, 위험관리 담당 정책결정자 및 집행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소비자인 시민, 청소년이 식품안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식품안전정책에서는 소비자 및 학생 대상의 식육사업(食育事業)을 중시하여, 식육계획(食育計劃)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식육(食育)은 건전한 식생활과 건강 추구, 음식문화 계승을 위해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지식습득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선택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서울시는 연령별, 또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식품안전 및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 및 강좌 등의 방식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함.
- 식품안전 사건의 복잡성, 식품이슈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음. 현재 서울시는 식품직군이 없는데, 식품직군을 설치하여 식품분야 전문 공무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 인력 중에서 일반행정직이 53%이며, 보건·수의직이 32%임. 25개 자치구의 보건위생업무 인력의 47%는 일반행정직이며, 보건·수의·농업·축산직은 43%임.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전문공무원의 차별화된 식품안전 교육훈련이 필요함. 식품분야 업무에 관련 직군의 전문직 공무원 배치율을 점차 확대하도록 함.
- 서울시에선 위험평가 담당과 조사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 서울시가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독자적인 위험평가 기능을 강화·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런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험평가 및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충원 및 장비 확충에 대해 검토를 실시함.
- 식품 생산자와 사업자의 자주책임을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세계적 추세임. 생산자와 사업자의 식품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기술보급 및 교육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하도록 함.

○ 식품안전에 시민 참여와 정보제공 중시

-서울시가 식품안전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잘해 식품안전의 과학성,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하여도, 시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시민의 식품안심을 확보할 수 없음. 따라서 소비자인 시민의 의견을 식품안전정책에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에 시민과 소비자단체의 참여기회를 강화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임. 서울시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공청회, 계획안 공고와 홍보절차를 거치고, 매년 사업성과를 공고해야 함.

○ 식품안전 기초조사연구의 활성화

-식품안전을 건강, 환경, 식품경제, 관광, 식량안보 등의 영역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제에 대한 기초조사연구가 전제되어야 함. 그리고 서울시가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식품안전정책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조사에 따라 추진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기초조사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2. 행정기반 구축 방안

○ 식품보건국(가칭) 신설

-식품안전 업무와 보건·건강업무를 단일 국 단위로 배치함. 즉 복지국의 식품안전추진단, 여성가족정책관의 보건정책담당관, 건강증진담당관 업무를 통합하여 식품보건국(가칭)을 신설함. 식품분야는 식품안전정책을 총괄·기획·조정하는 식품정책과와 식품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식품감시과를 둬. 보건분야는 보건정책을 총괄·기획·조정하는 보건정책과, 위생 및 건강업무를 담당하는 위생·건강증진과, 제약업무 담당 의약과로 구분함.

-식품안전추진단의 위생과, 식품안전과, 원산지관리추진반은 감시·감독 업무에 치중하고 있으나 식품안전과의 기획·통합·조정역할을 강화해야 함. 또한 식품안전에서 식품안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험정보교환 업무가 중요함. 따라서 위험정보교환을 담당하는 팀을 설치해야 함.

○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조정회의(가칭) 구성과 운영

-생활경제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공사, 보건환경연구원, 특별사법경찰지원과 등 식품관련부서의 장으로 '식품안전대책조정회의'를 구성함. 의장은 식품안전업무를 담당하

는 국의 국장으로 함. 식품안전대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관련업무의 식품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함.

- 식품안전추진회의에서 각 기관의 식품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조정 및 논의를 거치고, 의장은 이를 반영하여 식품안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함. 의장은 ‘서울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 식품안전종합관리계획을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견 청취,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침. ‘식품안전대책조정회의’의 구성과 역할을 서울시식품안전조례에 명문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도록 함.

○ 자치구 식품안전위생 분야에 공무원의 적정 배치

- 자치구에서 수행해야하는 식품안전 직무를 기준으로 표준화된 필요인력수를 산정하는 연구를 함.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 수, 전문직군 필요인력수를 산정하여 자치구의 식품안전 분야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전문직군(보건, 수의직, 농업, 축산 등)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는 중앙정부,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정원 확대 방안을 모색함.

- 식품안전 업무의 전문성이 점차 요구되므로 서울시도 식품직군을 두고, 식품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함.

○ 공무원 식품안전 교육 내실화

- 서울시에서 전문직(보건, 수의, 농업, 축산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전문 공무원 교육을 실시함. 커리큘럼 구성과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함.

- 서울시에서 식품안전 업무에 배치받은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공무원 교육을 실시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초조사연구 기능 강화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현재 수거식품의 안전성 검사에 국한되어 있음. 식품안전 기준 설정과 위험평가 기능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식품안전 선행조사, 해외정보와 학술정보 수집, 시험검사법 개발과 개량 등의 기초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서울시도 런던, 도쿄도처럼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식품 전문가들은 서울시 식품안전의 행정기반으로 ‘서울시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서울시 식품안전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식품안전기본계획은 런던의 식품전략계획처럼 식품망 단계별로 식품안전과 건강, 환경, 식품경제, 식량안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도록 함. 또한 런던, 도쿄도처럼 계획 수립과정에 시민의 의견반영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구함.

○ 식품진흥기금의 활용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 현재 약 954억원이 조성되어 있음. 식품진흥기금 집행액의 약 절반이 음식점 시설개선 용자사업에 지원됨.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 공무원 교육훈련커리큘럼 개발, 기초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
1.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5
제2장 세계의 식품안전 정책방향과 안전관리체계	11
제1절 식품안전관리의 원칙 및 접근방법	11
1. 유럽위원회의 식품안전관리 기본원칙	11
2. WHO 식품안전 세계전략(WHO global strategy for food safety)	11
3.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원칙	13
제2절 해외 사례	16
1. 영국	16
2. 일본	22
제3절 요점 및 정책 시사점	30
제3장 식품안전관리제도와 행정체계 현황	37
제1절 법제도	37
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37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42
3. 원산지표시제의 확대 강화	43
4. 요점 및 정책 시사점	43
제2절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와 역할분담	44
1. 중앙정부 식품안전관리 기본체계	44
2. 식품유형 및 식품망 단계별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45
3.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 행정체계	50
4. 요점 및 정책 시사점	58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기반	59
1. 행정조직	59
2.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64
3. 식품안전 관련 조례	65
4. 식품진흥기금	66
5. 요점 및 정책 시사점	67
제4절 자치구 식품안전 행정기반	70
1. 행정 부서	70
2. 인력	71
3. 식품진흥기금	76
4. 요점 및 정책 시사점	77
제4장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여건과 관리실태	81
제1절 식품 생산과 소비 현황	81
1. 식품생산	81
2. 식품소비	82
제2절 식품안전관리실태	86
1.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사업	86
2. 자치구 식품안전업무와 관리실태	90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실태 평가	92
1. 서울시민의 식품안전 신뢰도	92
2. 전문가 및 공무원의 평가	96
제4절 요점 및 정책 시사점	103
제5장 정책방향 및 행정기반 구축 방안	109
제1절 전문가 및 공무원의 식품안전정책 전망과 의견	109
제2절 국·내외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시사점 종합	133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기본방향	138
제4절 행정기반 구축방안	142
참고문헌	151
부 록	155
영문요약	163

표 목 차

<표 1-1> 식품분야 전문가·공무원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	6
<표 1-2> 서울시민 설문조사 응답자 인구 및 가구 특성	8
<표 2-1> 런던식품전략계획의 6대 실천사항과 추진사업	20
<표 2-2> 런던식품전략계획의 5개 주제영역별 식품이슈	20
<표 2-3> 식품망 단계별 주요 실행사업과 런던의 역할	21
<표 3-1>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련법 현황	38
<표 3-2> 식품안전기본법의 구성체계	39
<표 3-3> 식품안전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	40
<표 3-4> 식품안전기본법의 관계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	41
<표 3-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기초자치단체 책무 및 역할 규정	42
<표 3-6> 수입식품의 유통단계별 위험관리	49
<표 3-7>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 역할분담	50
<표 3-8> 식품관련업소 영업 허가 및 신고 행정체계	50
<표 3-9> 수거검사 분담체계	52
<표 3-10> 식중독 관리 행정체계	56
<표 3-11> 식품안전업무별 행정 분담체계	57
<표 3-12>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 인력현황(2008년)	60
<표 3-13> 식품안전추진단 부서별 업무내용(2008년)	61
<표 3-14>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안전 관련 인원 및 부서의 업무	62
<표 3-15>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기능과 구성	65
<표 3-16> 서울시 식품안전 관련 조례	65
<표 3-17>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67
<표 3-18> 2007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	67
<표 3-19> 식품망 단계별 행정부서의 사업내용	68
<표 3-20> 자치구별 식품안전 관리 행정부서	70
<표 3-21> 자치구별 보건위생 담당부서의 인력현황	71
<표 3-22> 자치구별 식품관련 업체 수	73
<표 3-23> 자치구별 인력 대비 식품관련 업체 수	74

<표 3-24> 자치구별 인구 대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수	75
<표 3-25>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 현황	76
<표 4-1> 서울시 농작물 재배 현황(2006년)	81
<표 4-2> 서울시 가축 사육두수(2006년)	81
<표 4-3> 서울시 식품제조업 현황(2006년)	82
<표 4-4> 서울시 식품산업 매출 현황(2005년)	82
<표 4-5> 서울시 식품 서비스업(2006년)	83
<표 4-6> 서울시 육류 소비량(2006년)	83
<표 4-7> 서울시 도축 현황(2006년)	83
<표 4-8> 서울시 및 6대 광역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량(2005년)	84
<표 4-9> 가구 월평균 식료품 지출액(2006년)	84
<표 4-10> 서울시 학교급식 현황	85
<표 4-11> 수입식품 건수 및 물량	85
<표 4-12> 2008년 기관별 수거검사 목표	86
<표 4-13> 서울시 홈페이지의 식품안전사이트 구성	89
<표 4-14> 2007년 자치구 위생행정업무 평가영역	90
<표 4-15>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	93
<표 4-16> 식품관련 분야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	94
<표 4-17> 학력 및 연령별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신뢰도	95
<표 4-18>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서울시 식품안전 발표에 대한 신뢰도	96
<표 4-19> 식품안전 기준 설정 및 연구조사 분야 대응수준 평가	97
<표 4-20>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 기준 설정 및 연구조사 분야 대응수준 평가	97
<표 4-21> 식품안전 선진관리 수단 적용 및 지원 대응수준 평가	98
<표 4-22> 응답자 유형별 선진관리 수단 적용 및 지원 대응수준 평가	98
<표 4-23>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의 대응수준 평가	100
<표 4-24>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의 대응수준 평가	101
<표 4-25>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 분야의 대응수준 평가	103
<표 4-26>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대응수준 평가	103
<표 5-1> 식품안전기준 설정 및 조사연구 분야 행정수요 전망	110
<표 5-2>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기준 설정 및 조사연구 분야 행정수요 전망	110
<표 5-3>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적용 및 지원의 행정수요 전망	111
<표 5-4>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적용 및 지원의 행정수요 전망	112

<표 5-5>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의 행정수요 전망	113
<표 5-6>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 행정수요 전망	113
<표 5-7>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분야 행정수요 전망	116
<표 5-8>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분야 행정수요 전망	116
<표 5-9> 식품안전 기준 설정 및 연구조사의 핵심 행정주체	118
<표 5-10>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적용 및 지원의 핵심 행정주체	119
<표 5-11>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의 핵심 행정주체	120
<표 5-12>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 핵심 행정주체	121
<표 5-13> 서울시의 식품안전 업무 기획조정 및 조사연구 역할 중요도 평가	122
<표 5-14> 응답자 유형별 서울시의 식품안전업무 기획조정 및 조사연구 역할 중요도 평가	123
<표 5-15> 서울시의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지원 역할 중요도 평가	124
<표 5-16> 응답자 유형별 서울시의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지원 역할 중요도 평가	125
<표 5-17> 서울시의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 역할 중요도 평가	126
<표 5-18> 응답자 유형별 서울시의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 역할 중요도 평가	126
<표 5-19> 서울시의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홍보, 교육 역할 중요도 평가	128
<표 5-20> 응답자 유형별 서울시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홍보, 교육 역할의 중요도 평가	128
<표 5-21>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기반 항목별 필요도 평가	130
<표 5-22> 응답자 유형별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기반 필요도 평가	13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내용 및 연구체계도	4
<그림 2-1>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원칙에 따른 안전성 관리제도	14
<그림 2-2> 식품안전관리 위험분석체계의 개념	15
<그림 2-3> 도쿄도 식품안전조례 개요	23
<그림 2-4> 도쿄도 식품안전추진계획의 전략과 시책	25
<그림 2-5> 도쿄도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26
<그림 2-6> 도쿄도 식품안전관리체계	27
<그림 2-7> 치요타구(千代田區) 식품위생감시지도체계	29
<그림 3-1> 중앙정부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45
<그림 3-2> 농산물 안전관리 행정체계	46
<그림 3-3>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47
<그림 3-4>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48
<그림 3-5> 식품유형별·식품망 단계별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49
<그림 3-6> 서울시 식품안전 관련 행정부서	60
<그림 3-7>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조직도	64
<그림 4-1> 서울시민의 유통식품 신뢰도	93
<그림 4-2> 식품유형별 안전 신뢰도	94
<그림 4-3> 식품안전관리 분야별 대응수준 평가	105
<그림 5-1> 식품안전관리업무별 행정수요 전망	117
<그림 5-2> 식품안전관리업무별 서울시의 역할 중요도 평가	129
<그림 5-3> 서울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기반 항목별 필요도	133
<그림 5-4> 서울시 부서별 식품안전 일관관리 개념	139
<그림 5-5>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체계 개편안	14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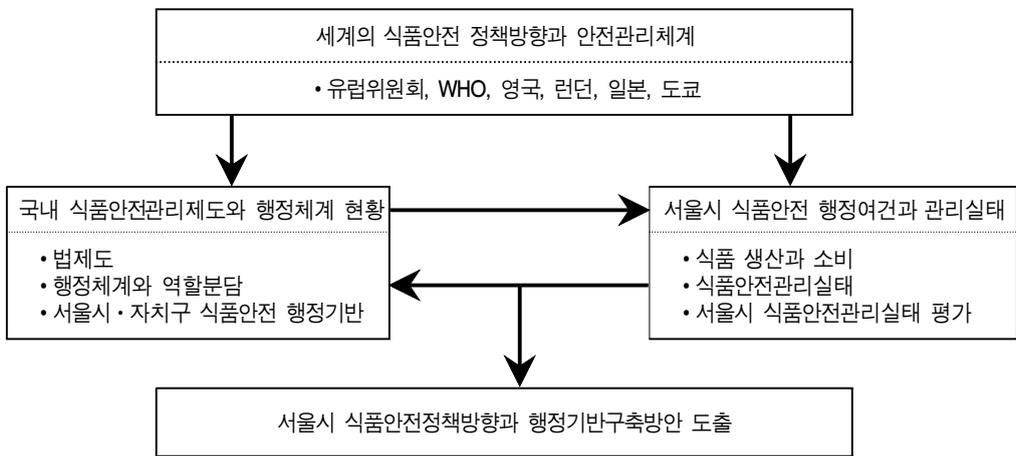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최근 10년간 식품안전사고의 유형과 원인이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임.
 - 유전자재조합식품(GMO)과 같이 식품생산에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식품에 안전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리고 식품의 국제교역량 증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확보의 문제가 국가, 지방정부 단위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국가 간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한편 외식문화가 보편화되고, 단체급식이 늘면서 대규모 집단적인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잠재성이 커지고 있음.
- 식품안전 문제의 복합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정책과 행정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선진국은 BSE(소해면상뇌증) 발생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국가 차원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식품안전 관련 기구의 확대와 강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음.
 - 우리나라도 2008년 들어 일명 광우병(BSE) 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2005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던 「식품안전기본법」이 2008년 6월에 통과되어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임. 그리고 2008년 7월 원산지표시제 적용업소 확대, 2008년 7월 11일 식품안전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식품안전종합대책’이 발표된 것도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임.
- 서울시의 경우, 식품안전이 2008년 시장 신년사에서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제시됨.
 - 서울시에 2008년 1월 식품안전과가 설치되면서, 식품안전업무가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확대 개편되었음. 식품안전과는 1월부터 ‘안심하고 드세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중앙 정부 차원의 식품안전정책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식품안전과를 신설하고 식품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차원의 식품안전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없고,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기반도 미약한 실정임.
- 이 연구의 목적은 식품안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차원의 식품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행정기반 구축에 대해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제1장 서론을 포함해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에서는 문헌연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세계의 식품안전 정책방향과 안전관리체계를 살펴보았음.
- 제3장에서는 문헌연구 및 행정내부자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제도와 행정체계 현황을 분석하였음.
- 제4장에서는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여건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행정내부자료를 조사하는 한편, 서울시에서 2008년 2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였음. 이와 함께 식품분야 전문가 및 서울시, 자치구의 식품안전위생분야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였음.
-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기본방향과 식품안전 행정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1-1> 연구내용 및 연구체계도

2. 연구방법

1) 식품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

(1) 조사목적과 조사내용

○ 조사목적

- 서울시 식품안전 정책방향 및 행정기반 구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식품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 자치구의 식품위생행정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

- 첫째, 식품안전과 관련한 19개 업무유형을 제시하여, 업무별로 현재 우리사회의 대응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업무별 행정수요 변화 전망, 업무별 핵심행정주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음.
- 둘째, 19개 식품안전 업무별로 서울시의 역할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셋째, 서울시 식품안전을 위한 행정기반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민간 전문가

- 한국식품위생학회 회원,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자문단, 서울시 식품안전감시협의회 위원, 서울시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보건연구원, KT&G 중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정보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식품분야 연구원과 77개 대학교의 식품분야 교수를 포함한 488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송부하였음. 이 중 75명이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설문지를 보내주었음. 설문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68명의 응답자는 연구원이나 대학교 교수가 52명, 기업의 식품전문가가 9명, 소비자단체 활동가 및 식품분야 언론인이 7명임.

○ 공무원

- 서울시 위생과와 식품안전과, 그리고 25개 자치구의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위생청소과, 환경위생과 등에 소속된 326명의 공무원 중 158명을 설문조사 대상자로 추출함. 공무원 설문조사는 연구원 및 조사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였음.

설문지는 조사원이 직접 회수하거나 이메일로 받았으며, 서울시 19명, 자치구 121명이 답변한 총 140부가 수거되었음.

- 설문조사는 2008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음.

(3) 응답자 특성

- 응답자 중 140명(67.3%)이 공무원으로, 이 중 일반행정직이 60명, 전문직(보건직, 수의직, 농업직, 축산직 등)이 80명임. 응답자 중 민간 전문가는 68명으로 교수, 민간 및 공공기관 연구원, 소비자단체 활동가 및 식품분야 언론인 등이 포함되었음.
- 성별은 남성이 63.0%, 여성이 37.0%임. 연령은 40대가 42.7%, 30대가 24.8%, 50대가 21.8%, 20대가 7.8%, 60대 이상이 2.9%임.

<표 1-1> 식품분야 전문가·공무원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

구 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 별	남자	131	63.0
	여자	77	37.0
	합계	208	100.0
연 령	20대	16	7.8
	30대	51	24.8
	40대	88	42.7
	50대	45	21.8
	60대 이상	6	2.9
	합계	206	100.0
소 속	일반행정직 공무원	60	28.8
	전문직 공무원	80	38.5
	민간 전문가	68	32.7
	합계	208	100.0

2) 서울시민 설문조사

- 서울시 마케팅담당관에서 식품안전과와 협의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및 식품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설문조사는 2008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화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음.

(1) 조사목적과 조사내용

○ 조사목적

- 서울시의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들의 식품구매행태와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임.

○ 조사내용

- 첫째, 식품구매와 관련한 사항으로, 구매량이 많은 식품유형, 식품구매 조건 및 장소, 식품정보 획득 매체 등에 관해 조사를 하고 있음.
- 둘째,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도와 식품유형별 안전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음.
- 셋째, 식품분야별 종사자에 대한 신뢰, 서울시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음.
- 넷째, 식품안전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음.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대상은 만20세 이상 서울 거주 성인 남녀로, 조사표본은 1,000명임.
- 표본추출은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할당추출을 하였음.
- 표본오차는 최대 ± 3.1 (95% 신뢰구간)
-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전화로 조사하였음.

(3) 응답자 특성

<표 1-2> 서울시민 설문조사 응답자 인구 및 가구 특성

구 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 체		1,000	100.0
성 별	남성	477	47.7
	여성	523	52.3
연 령	20대	224	22.4
	30대	223	22.3
	40대	222	22.2
	50대 이상	331	33.1
직 업	전문직, 경영·관리직, 사무직, 전문기술직	212	21.2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생산·단순기술직	65	6.5
	자영업	159	15.9
	전업주부	322	32.2
	학생	143	14.6
	기타 (무직 포함)	99	9.9
학 령	중학교 이하	93	9.3
	고등학교	279	27.9
	대학 이상	623	62.3
	응답 거절	5	0.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2	20.2
	200~399만원	478	47.8
	400만원 이상	302	30.2
	응답 거절/모름	18	1.8
가구원 수	1~2명	126	12.6
	3~5명	826	82.6
	6명 이상	48	4.8

제2장 세계의 식품안전 정책방향과 안전관리체계

제1절 식품안전관리의 원칙 및 접근방법

제2절 해외사례

제3절 요점 및 정책 시사점

제2장 세계의 식품안전 정책방향과 안전관리체계

제1절 식품안전관리의 원칙 및 접근방법

1. 유럽위원회의 식품안전관리 기본원칙

- 1990년대 유럽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 유럽위원회는 1990년대 들어 BSE(소해면상뇌증)의 유럽 확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사건 발생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그래서 2000년에 개혁적인 식품안전관리원칙을 담은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를 발표함.

- ‘식품안전백서’에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란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였음. 유럽 국가들은 식품안전백서를 자국의 식품안전정책지침으로 받아들여, 이에 맞게 식품안전 관련 법률의 재정비와 조직개편을 하였음.

- 식품안전백서에서 식품안전관리원칙을 제시

- 식품안전백서에서 제시한 식품안전성 확보 관리원칙의 핵심은 첫째,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망의 모든 단계에 걸쳐 통합성을 가지고 일관관리한다는 원칙, 둘째, 위험분석체계(risk analysis system)를 도입한 관리원칙, 셋째,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세 가지로 요약됨.

- 식품안전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관리원칙들은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EU(유럽연합), OECD국가들은 이러한 관리원칙에 따라 법률 정비와 기구개편,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2. WHO 식품안전 세계전략(WHO global strategy for food safety)

WHO는 보건차원에서 식품안전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음. 이런 점에서 WHO의 식품안전 전략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함.

- 제53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의 식품안전 결의안

- 2000년 제53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 결의안에 식품안전을 세계보건문제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밝힘.

- 결의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식품의약품안전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 i) 회원국은 자국의 보건 및 영양정책에 식품안전을 필수적으로 포함
- ii) 식품매개성 질환을 감소시키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예방조치를 구상하고 시행
- iii) 식품안전성 확보에 생산자, 제조업자, 거래업자의 책임을 강화
- iv) 식품위험평가에 필요한 과학발전 지원, 특히 개발도상국의 실험실 역량을 강화
- v) 시민 및 학생, 식품생산자의 건강·영양 교육프로그램에 식품안전문제를 포함
- vi) 영세한 식품산업체의 GHMP(Good Hygiene and Manufacturing Practices) 도입을 지원
- vii)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들 간에 식품안전관리정책을 조율, 조정
- viii) 경고,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 정확하고 적절한 식품정보표시제를 시행

○ WHO 식품안전 세계전략 (WHO global strategy for food safety)

- 2002년 식품안전을 위한 WHO 식품안전 세계전략이 승인됨. 이 전략의 목표는 식품매개성 질환을 줄이기 위한 세계적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것임(식품의약품안전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 WHO 식품안전 세계전략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i) 첫째, 식품매개성 질환을 줄이기 위해 위험분석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ii) 둘째, 국가 및 지역단위, 세계적 차원에서 위험분석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조직 및 관리체계가 개발되고, 이러한 조직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iii) 셋째, 식품안전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모든 과정에 걸쳐 관리함.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제의 필요성을 고려함.
- iv) 넷째, WHO는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협력하여 식품안전 국제규격, 식품안전 지침의 국제적 중개 및 조율 역할을 할 것임.

-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i) 식품매개성 질환 감시시스템 강화
- ii) 위험평가 개선 : 국제적 규격과 지침 확립, 국제적으로 합의된 평가도구 개발,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위험평가방법 개발

- iii)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 iv) 세계적으로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Codex 규격 설정을 위한 지원
- v) 위험정보교환에 산업계, 소비자, 생산자 등의 이해관계자 참여, 소비자 교육 증진
- vi) 식품안전성 향상으로 얻을 수 있는 국민 건강증진, 경제적 이득(의료비 절감 등), 경제발전(식품시장 확대, 관광경쟁력 제고 등) 효과를 강조하여, 보건정책에서 식품안전이 우선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함.
- vii)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관들 간의 효과적 연계 활동 및 조정 기능 강화
- viii) 식품안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및 전문인력개발 지원

3.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유럽위원회의 식품안전백서에서 제시한 다음 세 가지 식품안전관리 원칙은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음.

1)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망 모든 단계에 걸쳐 식품안전을 일관관리함

- 식품생산단계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식품망(food chain) 단계별로 식품위해 요소가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임. 즉 식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공, 유통, 소비단계를 거칠 때마다 위해요인이 추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확실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안전을 통합관리해야 함.
- 일관관리원칙에 따라 식품망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제도가 도입되는 추세임. 예를 들면 생산단계의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가공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이나 우수제조관리제도(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유통 및 판매단계의 우수위생관리제도(Good Hygienic Practices, GHP), 최종소매 및 소비단계의 회수제도(Recall System)가 있음. 식품망 모든 단계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로는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가 있음(최지현외, 2004).

생산	수확 후 처리	가공	유통·판매	소비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위해요소중점관리제 우수제조물관리제도 (HACCP, GMP)		
			우수위생관리제도 (GHP)	
				회수명령제도 (RECALL)
이력추적관리제(TRACEABILITY)				

자료 : 최지현 외(2004),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1>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원칙에 따른 안전성 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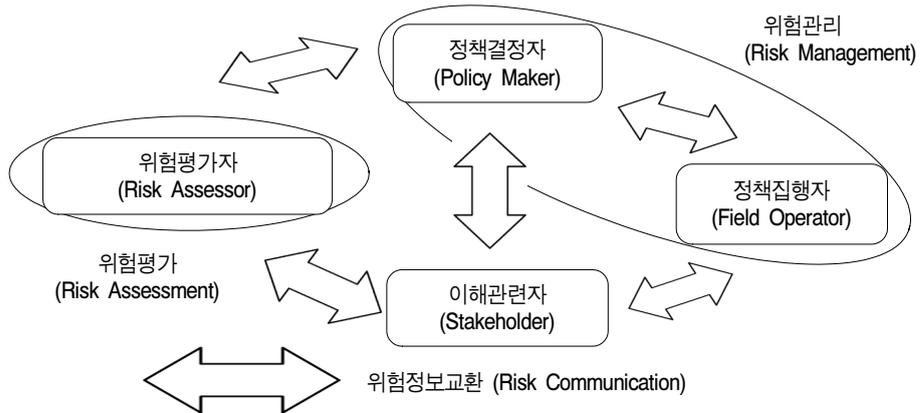
-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을 일관관리한다는 것은 식품관리체계의 복합성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이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 기능 및 통합네트워크가 중요하며, 관련법들을 통합하는 입법 또한 필요해진다 는 것을 의미함.

2) 위험분석체계에 기반한 식품안전관리

- 식품안전관리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위험분석체계가 도입되고 있음.
 - 위험분석체계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정보교환 (risk communication)의 세 요소로 구성됨. 유럽연합, OECD국가들은 위험분석체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 i) 위험평가 : 과학에 근거해 위해요소 확인과 가능성을 측정하는 단계
 - ii) 위험관리 : 위험평가 결과에 근거해 정책결정자가 적절한 관리방안을 선택하고 집행 하는 단계
 - iii) 위험정보교환 : 위험평가자, 위험관리자, 소비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
 - 위험분석체계에 기반한 식품안전관리에서는, 위험평가기능과 위험관리기능을 어떤 방식 으로 구성하여 조직할 것인가가 논의됨. 선진국은 소비자의 신뢰성과 정책 개방성 및 투 명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험평가기구를 관리기구에서 독립시키거나 각 부처에 분산되

어 있는 위험평가기구를 통합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위험평가기구가 위험관리 부처에서 독립되어 있는 나라는 EU, 영국, 프랑스, 일본이 있음. 각 부처의 평가기구를 통합하여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업무도 수행하는 나라는 독일, 스웨덴,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가 있음.



자료: 광노성(2002), 「국가 식품안전관리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보건복지포럼 제71호.

<그림 2-2> 식품안전관리 위험분석체계의 개념

3) 사전예방원칙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

- 사전예방원칙은 식품으로 인한 건강 위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정책결정자는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
- 사전예방원칙의 주요 이슈로는 1990년대 중반 식품 또는 사료로 상용화된 유전자재조합(GM)식품을 들 수 있음. 사전예방원칙은 일관관리원칙, 위험분석체계 도입 관리원칙과 달리, 식품과 식품안전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국가 간 입장 차이로 무역마찰도 발생시킬 수 있음. 국가별로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차이가 있음. GM식품, 생명공학기술 적용 식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형태의 사전예방원칙은 없다고 볼 수 있음¹⁾. 그러나 많은 나라가 국민에게 GM식품 안전성 평가에 대한 상세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0), 「OECD 식품안전성특별회의의 대응전략 연구: 식품무역 국제규범인 WTO/SPS 협정에서는 사전예방원칙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학적 근거가 미진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OECD는 2000년대 들어 생명공학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국가별 사전예방원칙의 입장 차이가 국제무역 마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GM식품과 사전예방원칙에 초점을 둔 식품안전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음.
- 유통과정에서 수거검사, 위생검사 같은 사후관리위주에서 생산·가공제조단계 중심의 안전관리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협의의 사전예방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GAP, HACCP 도입, 농축산·양식 농가에 대한 농약 및 약품사용지침 등의 교육도 사전예방원칙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라고 할 수 있음.

제2절 해외 사례

1. 영국

1)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식품정책은 국가 차원의 식품정책과 맞물려 있으므로 런던의 식품정책 동향을 살펴보기 전에 중앙정부의 식품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함.

(1) 식품기준법 제정

- 영국은 BSE(소해면상뇌증)가 최초로 발생한 나라임. 1980년대 후반 BSE의 발생 원인과 발병 메커니즘이 규명되었으나, 정부대처가 미흡하여 8년이 지난 후에야 예방책이 수립됨. 이러한 사건을 거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음.
-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과 기존의 식품안전기본법(Food Safety Act)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을 제정함. 이 법에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설립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2) 식품기준청 설립

- 2000년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이 설치됨. 식품기준청은 정부조직이지만 특정 정부부서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하는 독립 체제로 운영됨. 이곳에는 약 2,295명(2007년 기준)의 직원들이 있음²⁾.

- 식품기준청은 안전한 식품과 건강한 먹거리를 비전으로 삼아, 식품과 관련한 시민 건강과 소비자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 소비자 우선주의, 개방성과 독립성, 과학과 증거주의라는 세 가지 가치를 기조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 식품기준청의 2005년~2010년까지 전략 목표는 i)안전한 식품으로 국민 건강 향상, ii)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식습관 관련 질병 감소, iii)소비자가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효과적인 표시제 및 정보제공, iv)부정식품과 불법으로부터 소비자보호 향상, v)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관리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추구하는 것임.
- 식품기준청은 식품안전과 관련한 기준설정과 위해평가, 연구사업을 함. 그리고 식품기준법과 식품안전법을 집행하는 지방정부 및 관련 집행기구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시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식품안전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함.

(3) 식품관련 정부부서의 식품정책

- 식품기준청 이외에 식품위험관리에 관련된 중앙부서로는 환경식품농촌부, 보건부가 있음.
- 2001년 토니 블레어 당시 영국 총리는 ‘미래의 농업과 식품정책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이 위원회는 2002년 12월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을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함. 이 전략은 영국의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 정부, 소비자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 그리고 식품망(food chain)에 농업, 경제, 환경, 소비자를 연계하는 전략하에 수립된 계획임. 이 전략계획에서는 런던의 특성을 고려한 런던식품전략을 개발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보건부는 ‘식품과 건강행동계획(Food and Health Action Plan)’을 통해 식품안전과 식품위생을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보건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학교급식 수준 향상과 학생 건강을 위한 먹거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이러한 식품전략들은 런던의 식품전략에도 영향을 미침.

2) www.food.gov.uk : 영국의 식품기준청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의 정원은 2008년 7월 11일자 기준으로 1,432명(현원 1,398명)임. 영국 식품기준청이 우리나라 식약청보다 약 900여명의 인력이 더 많음.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청이 영국의 식품기준청과 달리 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약청의 식품전문 인력수가 이보다 훨씬 더 적다고 할 수 있음

(4) 식품안전 감시지도 업무

- 식품안전과 관련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체의 위생 관리감독, 유통식품 감시·관리 감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에서 수거한 식품은 시험을 위해 법적 자격을 가진 전문가(Public Analyst)가 있는 실험기관이나, 보건보호청(Health Protection Agency)의 지역미생물네트워크에 속한 협력실험기관에 제출됨³⁾.
- 식품안전업무는 규제서비스에 속하므로, 지방정부규제서비스조정기관(Local Authorities Coordinators of Regulatory Services)에서도 지방정부의 식품안전감시 업무 지침개발을 비롯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음⁴⁾.

2) 런던시

(1) 런던푸드 설립⁵⁾

- 런던시장은 런던시민에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3년 11월 런던푸드(London Food)를 설립함. 2004년 9월 런던푸드를 운영할 런던식품위원회(London Food Board)가 구성됨. 런던식품위원회 회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시장과 회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2년 임기로 임명함. 위원들은 식품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됨.
- 런던푸드는 런던개발공사(London Development Agency)에서 예산을 지원받음. 런던개발공사는 3년간 387만 파운드의 예산을 런던푸드에 지원하였음. 또한 런던식품전략부(Food Strategy Unit)를 설치하였음.
- 런던푸드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i)식품으로 인한 환경부담 감소와 생태를 고려한 먹거리 운동, ii)식품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교육으로 런던의 식품경제 활성화, iii)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런던시민 건강 향상과 건강 불평등 감소, iv)식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간계획, v)런던의 다양한 음식문화 촉진, vi)런던의 식품 안전성 발전임.
- 런던푸드는 중앙부처를 비롯해 런던지방청(GOL), 런던기초자치단체협회(ALG), 그리고 런던시의 여타 위원회와 연계하여 일을 하고 있음.

3) www.hpa.org.uk; www.the-apa.co.uk : 화학분석은 Public Analyst 협회의 실험기관에서 하고, 미생물 분석은 보건보호청의 지역미생물네트워크(Regional Microbiology Network)에 속한 협력실험기관에서 수행함.

4) www.lacors.gov.uk

5) www.lda.gov.uk; www.london.gov.uk : 2008년 새로 선출된 Boris Johnson 시장은 2008년 5월 런던푸드 회장을 새로 임명함.

(2)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런던식품전략계획)

○ 2006년 런던식품전략계획 발표

- 런던식품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2005년 런던식품 전략안을 수립한 후, 6개월간 수차례의 공청회 개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품 이슈 및 런던식품전략안에 대한 홍보,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5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런던 식품전략계획(Healthy and Sustainable Food for London)’을 발표함.

- 전략계획은 2016년까지 10년 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런던시는 전략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런던식품위원회는 전략계획 수행을 위해 식품실행운영위원회(Food Implementation Steering Group)를 구성함. 식품실행운영위원회는 런던식품전략계획에서 제시된 사업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자문과 정보제공, 프로그램 감독, 이해당사자 간 조정 등의 역할을 함.

○ ‘지속가능한 세계도시 런던’을 지향하는 런던의 식품전략계획

- 런던식품전략계획의 최종 목적은 ‘지속가능한 세계도시 런던’을 지향하는 시정목표에 부응하는 런던식품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임.

- 런던식품전략계획은 식품이 건강, 환경, 경제, 사회·문화, 안전과 관련된 통합적이고 상호의존적 정책분야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음. 식품에 대한 통합적·상호의존적 접근은 식품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역으로 식품안전은 건강과 환경, 경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런던의 식품체계는 현재 소비자인 시민을 비롯해 사업자와 다양한 조직과 단체, 그리고 외국 등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뒤엉켜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 파트너십으로 협력하여 런던식품전략계획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전략목표는 다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런던시민의 건강 향상과 식품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해소

-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할 수 있는 런던식품체계 구축

- 식품경제의 활성화

- 런던의 음식문화 증진

- 런던의 식품안전 발전

○ 런던식품전략계획의 6대 실천사항과 추진사업을 <표 2-1>로 요약하였음.

6) London Development Agency(2006),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for London*; www.lda.gov.uk

<표 2-1> 런던식품전략계획의 6대 실천사항과 추진사업

실천사항	추진사업
1. 상업적 활력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 • 런던의 음식문화 촉진 • 농부, 식품제조업자, 전문시장, 식품클러스터 유통지원
2. 소비자 참여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시민들의 식품 이슈 이해도 증진과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교육
4. 식품조달능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지속가능한 식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고 권장하는 활동을 함
5. 광역적 연결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과 런던 주변 생산자들의 런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연결망과 지원 시스템을 발전시킴.
6. 건강한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학교의 요리교육프로그램 운영
7. 음식관련쓰레기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및 관련 사업체에서 음식쓰레기 및 포장쓰레기 감축과 퇴비화 활용

자료 : London Development Agency(2006),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for London*.

- 런던식품전략계획은 건강, 환경, 경제, 사회·문화, 안전 등의 5개 주제영역과 8단계 식품망(food chain)별로 전개됨. 런던의 5개 주제영역별 식품 이슈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2-2>와 같음.

<표 2-2> 런던식품전략계획의 5개 주제영역별 식품이슈

주제영역	식품 이슈
건강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습관과 건강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 • 불평등과 식품섭취, 건강 간의 상관관계 • 식품으로 전염되는 질병, 식품 과소비와 연관된 질병
환경 (environmen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시스템은 환경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 런던의 생태발자국지수(ecological footprint)의 41%를 식품이 차지
경제 (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의 식품산업 분야 종사자수는 약50만명에 이룸. • 런던제조업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이 식·음료산업임. • 외식업과 식품소매업은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역동적 경제영역임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침. • 식품산업 분야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식품소비 불평등
사회와 문화 (social &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런던을 세계의 미식도시로 부각시킴 • 가정 내 요리문화 대신 외식문화 발달로 런던에는 1만 2,000개의 식당, 6,000개의 카페, 5,000여 개의 주점이 있음. • 런던주민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4만 종류의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음.
식품안전 (food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은 식품망 전 단계에 걸쳐 부각되는 이슈임. • 식품안전은 비상사태(홍수, 테러, 석유공급중단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식품시스템, 런던의 잠재적 식품자립수준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함 • 이력추적관리시스템(traceability)도 식품안전에 해당되는 사항임.

자료 : London Development Agency(2006),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for London*.

- 런던식품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식품망 단계별 사업과 런던의 역할에 대해 <표 2-3>으로 정리하였음.

<표 2-3> 식품망 단계별 주요 실행사업과 런던의 역할

식품망 단계	실행사업	런던의 역할
1단계 : 1차 생산단계 (primary p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준 높은 농업경영계획 채택 • 농부와 소비자 연계 증대 서비스 수행 • 임대채소밭 확대 • 농업인 훈련, 자문, 정보제공 • 생산자 협업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은 구매활동을 통해 영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2단계 : 가공 및 제조 (processing & manufactu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보건 지침과 법규 강화 •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 마케팅 훈련 및 기술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의 식품사업자에게 높은 기준을 지정하고 요구
3단계 : 운송, 저장 및 유통 (transport, storage & distrib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수송의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 실시 • 지방(local)과 중간권역(sub-regional) 간 물류 및 도매파트너십 발전 • 지역식품(local food) 유통 및 도매시장 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효율적인 식품유통기반 시설을 구축
4단계 : 식품소매 (food ret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확대 • 소매업자 간의 협업 지원 • 공정거래무역상품 판매 증가 프로그램 개발 • 노점상(street market)을 포함해 식품소매공급의 다양성 보 • 호 도시계획 시스템 사용 • 식품소매 및 제조 클러스트 지원 • 관광전략에 식품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판매에 책임을 짐.
5단계 : 식품구매 (purchasing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해로운 식품 제한 •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조사연구와 소비자 홍보 • 농장방문프로그램 시행 학교 수 증가 • 건강한 식품 안내판(directory) 개발 • 식품 표시제 강화 • 공공부문 식품조달에 로컬푸드 지원 지속가능성과 건강 이 • 슈를 고려한 식품조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시민이나 각 조직들의 식품 구매방식은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확립에 기여
6단계 : 식품 준비, 저장 및 조리 (food preparation, storage & coo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가 있고 안전한 식품저장 및 조리방식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캠페인 실시 • 학교교육에 식품교육 및 요리교육을 주류화함. • 공공집단급식소의 질 좋은 식재료 이용과 조리설비 향상 종 • 사자 교육 • 친환경인증 주방설비 인식 확대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훈련 • 기술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준비하고 요리할 수 있도록 도움
7단계 : 섭취 및 소비 (eating & consum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식품 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확대와 공공 교육프로그램 개발 • 런던주민 및 근로자 대상의 '건강한 식사상(London Healthy Eating award)' 개발과 촉진 • 계절식품, 로컬푸드, 슬로우푸드(slow food)에 대한 인식 증진 • 런던식품이벤트 지원과 활성화, 런던의 이벤트에서 식품이벤트 강화 • 런던의 식품 공급처 다각화 • 건강한 학교급식을 먹는 학생 수 증가 • 유치원, 학교의 식수 향상 • 친환경, 건강한 식품자동판매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건강을 생각한 먹거리에 대한 런던시민의 이해와 인식 확대
8단계 : 처리(dispos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퇴비화 증진 • 가정의 식품쓰레기 연구 • 노점상, 생산자 직거래 시장의 식품 및 식품포장쓰레기 처리 참여 • 대형소매업체 비닐백 사용 감소 식품포장쓰레기 재활용 확대 • 식품관련쓰레기 감소 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재활용 등

자료 : London Development Agency(2006),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for London.*

2. 일본

1) 중앙정부

- 일본에서 2001년 처음으로 BSE가 확인된 이후에도 소고기 허위표시, 수입식품의 첨가물과 수입농산물 농약기준치 초과 등과 같은 식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인식이 높아졌음.
- 이러한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를 통해 다음의 문제점이 제기됨. 첫째 식품안전행정이 생산자를 우선하고 소비자를 경시함. 둘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사고 예방과 위협을 최소화하는데 미흡함. 셋째,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고, 정보 투명성이 불충분함.

(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서 2003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식품위생법」을 처음으로 개정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처하고 있음.
- 식품안전기본법의 목적 및 이념은 첫째, 국민의 건강보호, 둘째, 식품공급의 단계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셋째,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동향, 국민의 의견 배려,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조치를 하는 것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소비자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음.

(2) 식품안전위원회(Food Safety Commission) 설치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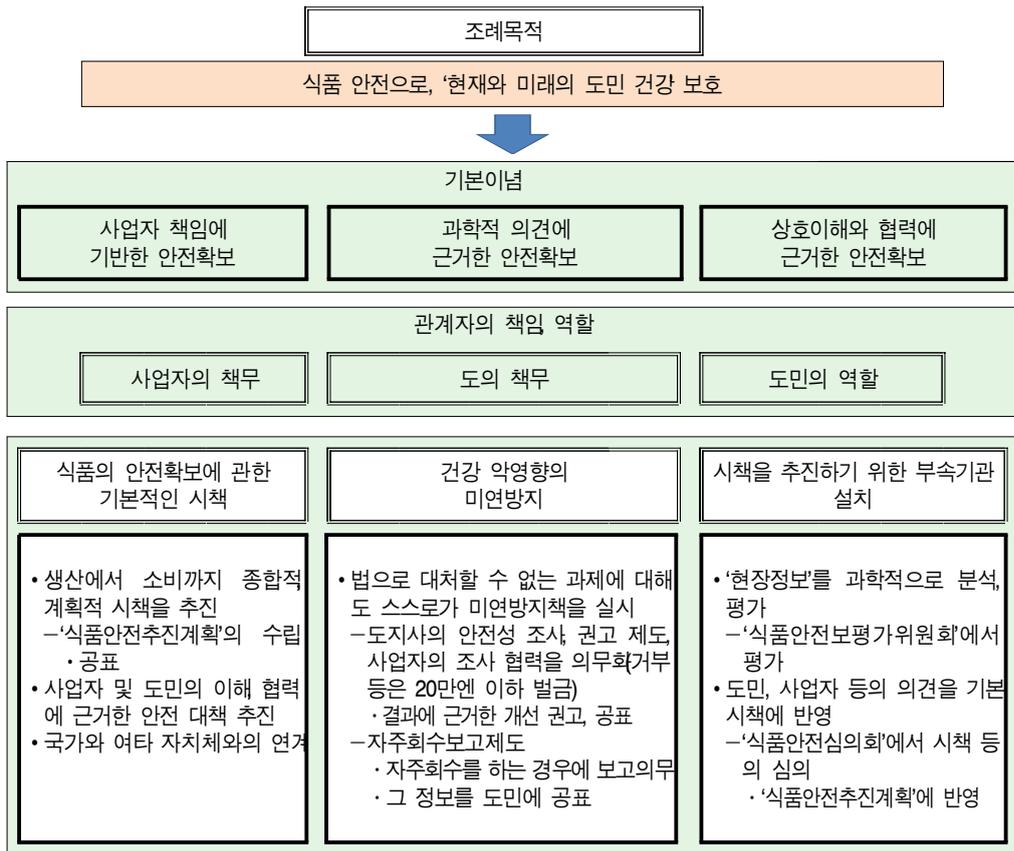
- 2003년 7월 내각부에 식품위험평가를 담당하는 독립된 조직으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전문조사회(専門調査會)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문조사회는 14개 평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40명(2007년 기준)의 전문가가 있음.
-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평가를 통해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 관련 부처에 위험관리를 하도록 권고함. 그리고 위험관리가 실시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일원화된 위험정보 수집 및 정리, 위험정보 교환, 위기관리에도 관여하고 있음.

7) www.fsc.go.jp

2) 도쿄도

(1) 식품안전조례 제정

- 도쿄도는 2004년 ‘도쿄도 식품안전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도쿄도식품안전추진계획(2005~2009년)’을 수립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 및 행정기반을 구축하였음.
- 도쿄도 식품안전조례에서는 사업자 책임 강조, 과학에 기반한 식품안전, 상호이해와 협력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사업자, 도쿄도, 도민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에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식품안전심의회,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도쿄도 식품안전조례의 목적과 기본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2-3>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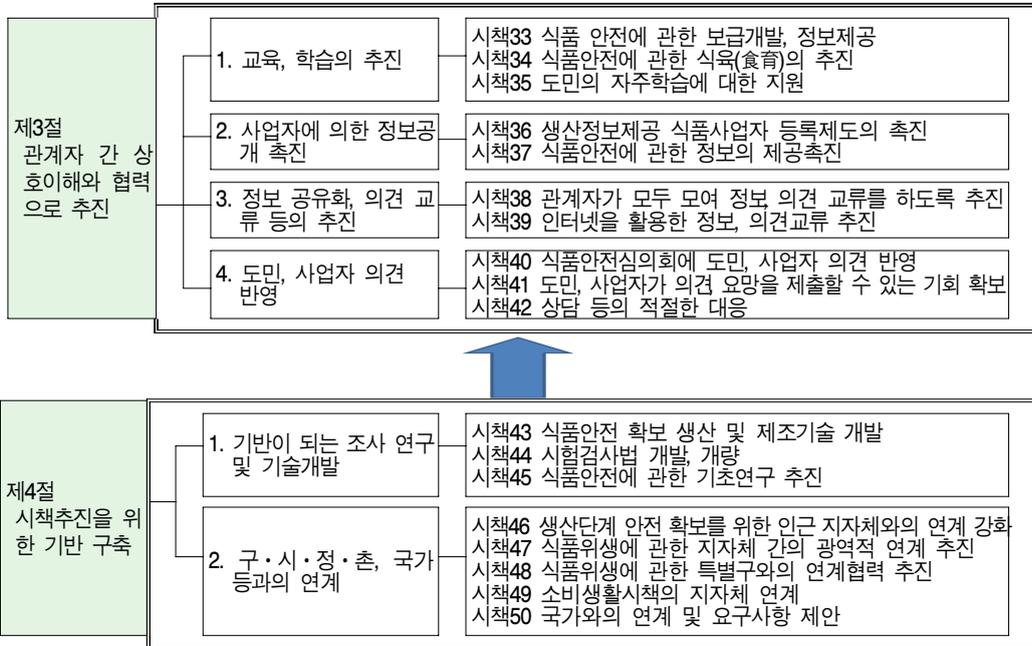
자료 : 도쿄도 복지보건국(2005), 「東京都食品安全推進計劃」.

<그림 2-3> 도쿄도 식품안전조례 개요

(2) 도쿄도 식품안전추진계획(2005~2009년)

- 도쿄도 식품안전조례에 의해 2005년 ‘도쿄도 식품안전추진계획(2005~2009년)’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대해 매년 중간점검과 평가를 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국은 매년 식품위생감시계획을 작성함.
- 도쿄도 식품안전추진계획은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일관관리, 과학을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 확보, 관계자 간 의사소통,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기반확보를 전략으로, 13개 과제와 50개 시책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도쿄도 식품안전추진계획의 전략과 시책사업을 요약하면 <그림 2-4>와 같음.

제1절 사업자 책무에 의한 식품안전 확보	1. 사업자 자주 위생 관리의 추진	시책1 식품위생자주관리 인증제도 추진 시책2 생산 위생관리체계의 정비 시책3 HACCP 도입지원 시책4 식품위생추진원제도 활용 시책5 식품위생자치지도원 제도의 지원 시책6 도매시장의 안전, 품질관리자 배치
	2. 생산에서 판매까지 식품망 단계별 정보 기록	시책7 이력추적관리제의 보급촉진 시책8 기록의 작성, 보존제도
	3. 사업자 기술 지원	시책9 농산물과 가축 안전대책 보급지도 시책10 식품가공분야 기술 보급지도 시책11 제조, 수입, 도매업자 등에 대한 강습회
제2절 생산에서 판매 까지 일관하여 미연방지·확 대방지	1. 정보 수집, 정리, 분석, 평가추진	시책12 가축의 병과 병충해 발생현황 파악 시책13 식중독의 발생동향과 원인조사 시책14 식품 안전에 관한 선행조사 시책15 다이옥신류 등의 미량화학물질의 실태조사 시책16 해외정보와 학술정보의 수집 시책17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의 운영 시책18 안전성 조사, 조치권고 제도의 활용
	2. 식품 등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감시, 지도 등	시책19 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 생산자재의 적정 활용에 관한 감시 지도와 검사 시책20 축산물 등의 안전대책 시책21 BSE대책 시책22 제조, 가공, 조리, 판매시설 등의 감시지도 시책23 식품 등의 수거검사 시책24 광역유통식품에 대한 감시 시책25 건강식품 대책 시책26 자주회수보고 제도의 운영
	3. 적절한 식품표시제	시책 27 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적정표시 지도 시책 28 알기 쉬운 식품표시제 보급 시책 29 소비생활조사원에 의한 조사
	4. 긴급 시의 체제정비	시책30 식품안전대책추진도정회의의 긴급 대응 체제 정비 시책31 대규모 식중독 대응 매뉴얼 정비 시책32 도매시장 내의 위기관리대응



자료 : 도쿄도 복지보건국(2005), 『東京都食品安全推進計劃』.

<그림 2-4> 도쿄도 식품안전추진계획의 전략과 시책

(3) 도쿄도 식품안전 관리체계

○ 행정부서

- 도쿄도는 복지보건국의 건강안전부에서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사업방침, 기획조정기능을 하고 있음. 건강안전부는 건강안전과, 식품감시과, 약무과, 약사감시과, 환경보건과, 환경위생과, 전염병대책과 등의 7개과로 구성됨. 이중 건강안전과와 식품감시과가 식품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식품안전 관련 행정부서들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을 목적으로 '식품안전대책추진조정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건강안전연구센터

- 건강안전부 산하 건강안전연구센터는 감시기능과 시험검사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건강안전연구센터는 광역유통식품감시부에 식품기동감시반(8개반), 수입식품감시반(2개반), 타마지소 식품기동감시반(2개반), 타마지소 시장감시반(4개반), HACCP지도반(1개반)을 두고 있음. 이중 식품기동감시반은 대규모 제조시설, 유통거점시설을 대상으로 지도감시, 식품수거검사, 위반식품 조치 등의 감시기능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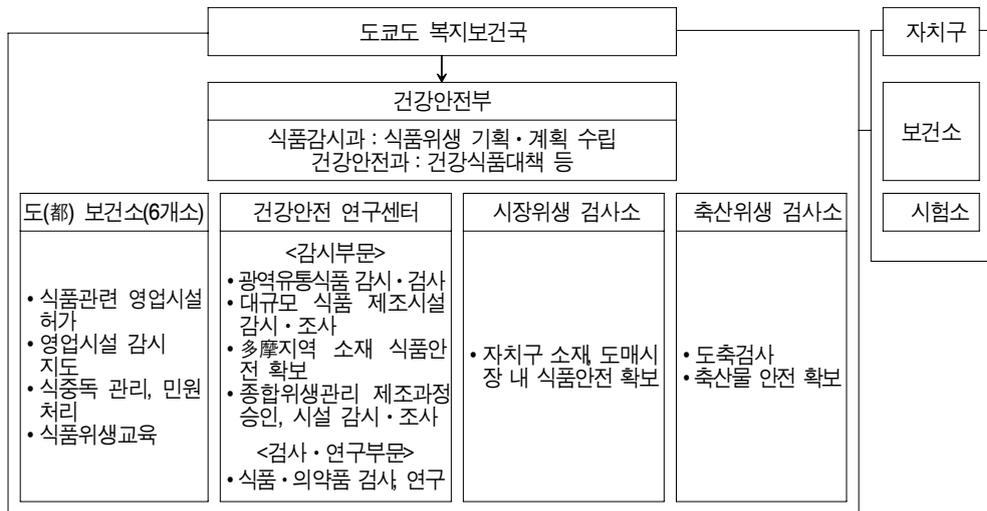
- 건강안전연구센터는 대규모 식품제조시설, 도매업, 수입업을 대상으로 감시지도 및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함. 이처럼 수거한 식품에 대한 검사와 함께,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 검사, 식품안전을 위한 새로운 검사법의 연구개발을 하고 있음. 건강안전연구센터 인력은 총 334명(2008년 기준)임⁸⁾.

○ 도 보건소

- 도서지역의 6개 도(都) 보건소에서는 해당 지역의 식품영업시설 허가, 감시업무를 수행함.
 - 보건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도쿄도 23개 자치구 보건소는 해당 관내의 식품영업시설 허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위생감시·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보건소에는 간단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가 있음. 도쿄도와 자치구는 도구협정(都區協定)을 맺어, 감시감독업무의 역할을 분담함.

○ 도매시장 및 도축장 위생검사소

- 도매시장과 도축장에 위생검사소가 있어 농수축산품에 대한 검사를 함.



자료 : www.Tokyo-eiken.go.JP

<그림 2-5> 도쿄도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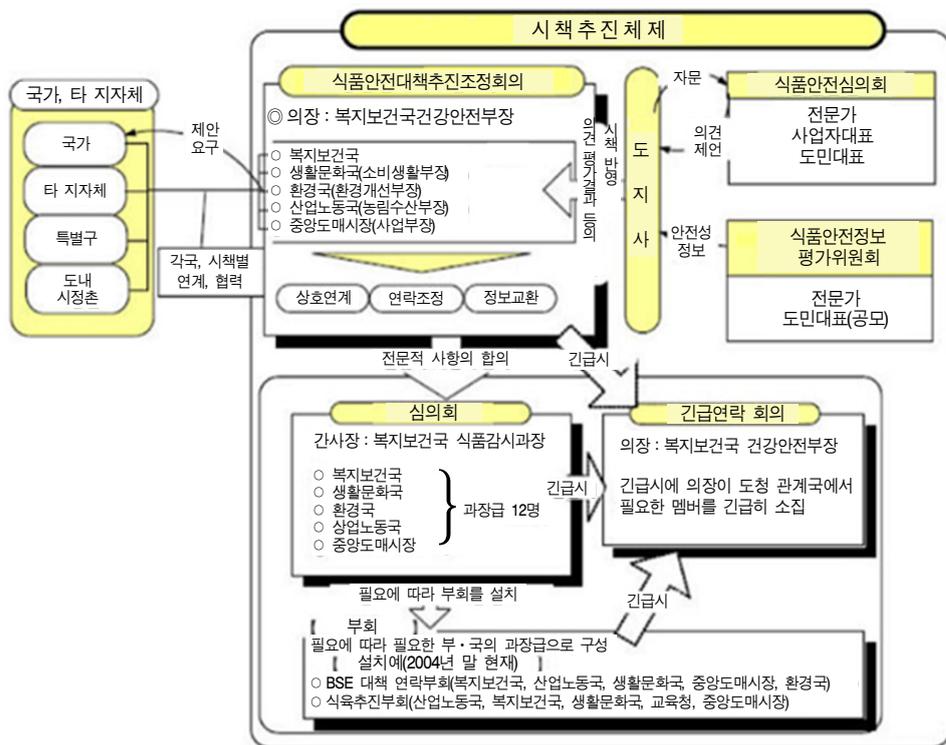
8) 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구임 건강안전연구센터의 경우 334명(2008년 4월 1일 기준)의 인력이 있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283명(2008년 7월 21일 기준)의 인력이 있음. 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인력이 50여명 더 많음. www.tokyo-eiken-go.jp 참고로 도쿄도에는 도쿄도립식품기술센터가 있음.

○ 식품안전심의회와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

- 도쿄도는 전문가, 사업자, 시민대표로 구성된 ‘식품안전심의회’, 그리고 전문가, 시민대표로 구성된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도지사에게 제공하며, 도지사는 식품안전심의회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자문을 받음.

- 식품안전 관련 행정부서들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을 목적으로 관련부서의 부장급으로 구성된 ‘식품안전대책추진조정회의’가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실무사항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관련부서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조정회의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부서의 과장급으로 임시조정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그림 2-6>는 도쿄도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나타낸 것임.



자료 : 도쿄도 복지보건국(2005), 「東京都食品安全推進計劃」.

<그림 2-6> 도쿄도 식품안전관리체계

(4) 도쿄도와 자치구의 식품안전 감시지도 역할분담

- 도쿄도에는 23개 자치구와 시정촌(市町村)이 있는데, 도쿄도는 23개 자치구와 보건위생사무사업에 대한 도구협정(都區協定)을 맺어, 식품안전 감시지도와 관련해 역할분담을 하고 있음. 이를 위해 도쿄도는 대규모 식품제조시설과 대형 유통시설의 식품안전 감시업무를 하고, 자치구는 그 외 관내 식품관련업체에 대한 감시업무를 함. 타마지역과 도서지역의 경우 도쿄도 6개 보건소에서 그 지역의 식품안전감시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의 광역유통감시부는 대규모 식품제조시설, 대형유통시설,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검사지도 및 수거검사를 실시함. 도쿄도는 도매시장과 도축장에 검사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5) 자치구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 식품위생법에는 보건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사업계획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주민에게 계획을 공표하고 계획 달성상황도 알리도록 되어 있음.
- 자치구는 중앙정부의 ‘식품위생 감시지도 실시에 관한 지침’을 기반으로 매년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을 작성하고 있음. 자치구는 도쿄도와 협정을 맺어 식품안전감시지도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 도쿄도 치요타구(千代田區) 사례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감시체계를 살펴보기로 함⁹⁾.
- 식품위생감시원
 - 치요타구의 경우 보건소 식품위생감시원이 정규직 전문인력(의사, 수의사, 약제사, 공중위생 전공 등)으로 15명 있음(2007년 기준).
 - 식품위생감시원은 음식점·제조업 시설허가 및 감시, 유통식품 지도감시, 위반식품 조치, 행정처분, 식품수거 의뢰조사, 식중독 대응, 사업자 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치요타구는 2006년 현재 음식점 7,146개소, 식품판매업소 3,518개소로 총 1만 664개소의 식품위생관계업소가 있음. 상주인구는 4만 1,778명(2005년 기준)이며, 주간인구는 약 85만명임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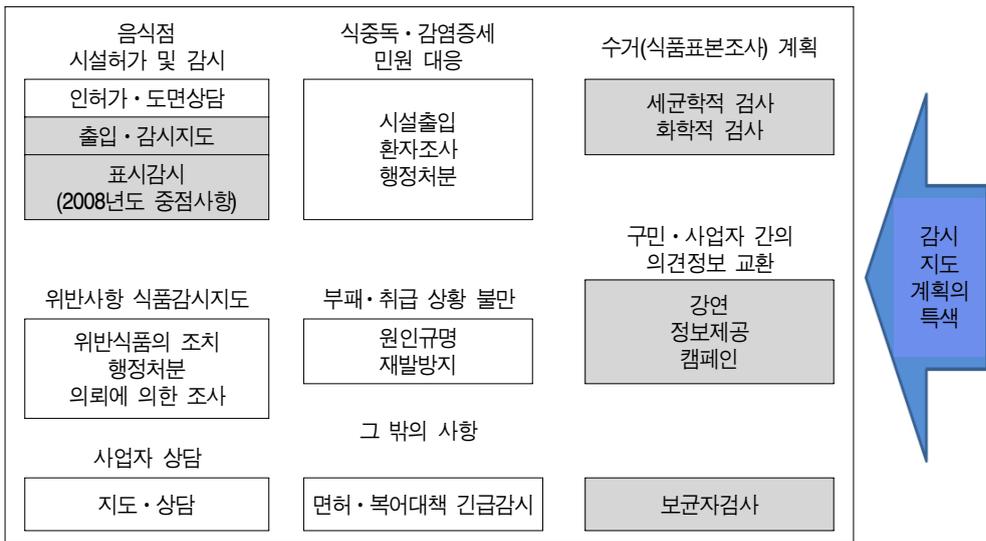
9) www.city.chiyoda.lg.jp.

10) 강남구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1만 2,406개를 비롯해 식품관련업소가 1만 4,541개 있음(2007년 기준). 강남구의 경우

- '2008년 치요타구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千代田區食品衛生監視指導計劃)'에서는 식품위생 감시원 인력 수가 부족하여, 업무가 허가, 민원, 상담 등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과제로 직접 감시지도를 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원확충과 전문자질 향상을 들고 있음.

○ 치요타구 보건복지종합계획(2007~2011년)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 교육 강조

- 건강과 식생활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식품안전이나 표시제에 대한 시민 교육, 음식점 및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감시 강화를 과제로 하고 있음. 특히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먹거리 교육(食育)을 중시하고 있음.



자료 : 千代田區(2008), 「2008년 千代田區食品衛生監視指導計劃」

<그림 2-7> 치요타구(千代田區) 식품위생감시지도체제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공무원 수가 9명으로 이중 전문인력(보건, 수의직 등)은 5명에 불과함.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을 함께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9명이므로 치요타구에 비하면 식품관련업무를 하는 인력의 절대적인 수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제3절 요점 및 정책 시사점

- 1990년대 들어 BSE 확산, GM 식품의 상용화, 식품의 국제교역량 증가 등으로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고 있음. 이에 식품안전이 세계기구, 국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책으로 이슈화되면서, 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식품안전관리의 세 가지 원칙, 즉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원칙, 식품안전관리에 위험분석체계 도입, 사전예방원칙이 세계적으로 수용되는 추세에 있음. 선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식품안전관리원칙을 식품안전정책의 뼈대로 삼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기구의 신설과 정비,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세계기구 및 영국, 일본, 런던시, 도쿄도의 식품안전정책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식품안전 관리의 기본방향

1)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원칙, 위험분석체계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 지향

-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식품안전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망 모든 단계에 걸쳐 식품안전을 일관관리하는 것이 추세임. 그리고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의 세 요소로 구성된 위험분석체계 개념을 도입하여 식품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런던시와 도쿄도의 식품안전정책도 기본적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원칙, 위험분석체계를 수용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과제와 사업을 도출하고 있음.

2) 식품안전과 보건정책의 연계 및 통합관리

- 제53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세계보건문제에 식품안전을 우선순위로 두며, 회원국은 보건 및 영양정책에 식품안전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결의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과 보건건강정책은 연계 및 통합되고 있으며, 식품안전이 보건건강정책의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 도쿄도 복지보건국의 건강안전부는 식품안전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서 관할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는 식품안전과 보건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임.
- 도쿄도 치요타구의 보건복지종합계획(2007~2011년)에서는, 건강과 식품안전을 연계하여 다루고 있으며, 먹거리 교육(食育)을 강조하고 있음.

- 런던의 식품전략계획에서도 식품문제는 일차적으로 건강과 직접 관련된다는 관점에서 전략이 짜여져 있음. 그리고 식품안전은 건강, 식품산업, 환경, 관광 분야와 상호상승 작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3) 식품안전에 시민 참여 중시

- 식품안전 관리에서 소비자 우선주의, 소비자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에게 계획을 공표하고, 그 성과를 주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음.
- 런던시는 런던식품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6개월간 시민 홍보, 공청회, 시민의견조사, 인터뷰 등을 하여 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침.

4) 생산자, 사업자 책임 강조 및 지원사업 중시

- 제5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 제조업자, 거래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결의함.
- 도쿄도와 런던시의 경우, 생산단계에서 식품안전의 사전관리 차원에서 생산자와 사업자의 책임 강화, 그리고 기술지원사업을 중시하고 있음. 도쿄도는 식품안전조례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식품안전추진계획에서는 사업자 자주위생관리, 이력 추적관리제 보급 촉진, 사업자 기술지원과 관련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런던시는 1차 생산단계의 실행사업으로 환경기준이 높은 농업경영계획을 채택하고, 농업인 대상 훈련, 자문,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가공제조단계에서는 안전, 보건지침 법규를 강화하고,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음.

5) 시민 및 학교의 식품안전교육 강조

- 제5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시민 및 학생 대상 건강·영양교육프로그램에 식품안전문제를 포함하도록 제안함.
- 런던시는 식품전략 6대 과제의 하나로 시민들의 식품 이슈 이해 증진과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사업을 정하고 있음. 특히 학교에서 식습관, 식품, 요리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음.

- 도쿄도와 자치구는 식품안전 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 식육계획(食育計劃)을 수립하여 추진함.

6) 조사연구 강조

- 도쿄도는 식품안전 정책의 기반이 되는 생산·제조기술 발전, 식품검사법 개발 및 개량, 식품안전 기초연구 추진을 강조하고 있음.
- 런던시는 식품관련 이슈 중 논쟁의 소지가 있는 이슈에 대한 연구조사, 시책추진에 필요한 기초연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건강과 식품 간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2. 행정기반 구축

1) 법제도의 구축

(1) 식품안전 통합관리를 위한 법과 조례 제정

- 선진국들은 식품안전 관리범위를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망 모든 단계로 확대하고, 일관관리 원칙을 수용하고 있음. 이는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이에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기존의 식품안전 관련법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음. 영국은 기존의 「식품안전법」과 별도로 1999년 「식품기준법」을 제정하고, 일본은 「식품위생법」과 별도로 2003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함.
- 도쿄도는 2004년 식품안전정책 기본방향과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는 ‘도쿄도 식품안전조례’를 제정함. 조례는 ‘도쿄도 식품안전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심의회’와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2) 조직 구성과 운영

(1) 식품안전평가 전문기구의 신설과 기능 강화

- 선진국들은 식품안전을 위해 위험분석체계(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의 적용관리 원칙을 수용하면서, 식품안전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식품안전위험평가기구는 위험관리기구(정부 부처)와 분리되거나 위험평가기능을

통합강화하여 위험관리도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 식품안전평가 전문기구의 신설과 기능 강화는 과학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EU는 2002년 위험평가기능을 하고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설립함. 영국은 2000년 위험평가기능과 정부부처에 안전관리 제언, 감시기능을 하는 독자적 지위를 가진 식품기준청을 설립함. 일본 또한 2003년 내각부에 식품위험평가 기능과 관련부처에 안전관리 제언, 감시역할을 하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함.

(2) 식품안전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 신설과 운영

- 도쿄도는 식품분야 전문가와 사업자, 시민대표로 ‘식품안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전문가와 공모방식으로 선출된 도민대표로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식품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식품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20명으로 ‘런던식품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3) 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및 조정 네트워크 구축

- 도쿄도는 식품안전업무와 관련해 복지보건국, 생활문화국, 환경국, 산업노동국으로 ‘식품안전대책추진조정회의’를 구성하고, 이슈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협력을 하고 있음. 그리고 도쿄도와 자치구, 국가, 다른 자치체 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음.
- 런던식품위원회도 중앙부처를 비롯해, 런던기초자치단체협회, 런던지방청, 런던시의 여타 위원회와 협력네트워크를 맺어 사업을 하고 있음.

(4) 행정주체별 식품안전 관리기능의 역할 명확화

- 도쿄도는 자치구와 도구협정(都區協定)을 맺어 식품안전 감시지도와 관련해 역할 분담을 하고 있음. 즉 대형식품제조업소, 대형유통시설, 도매시장의 식품안전 감시지도는 도쿄도에서 하고,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의 식품안전 감시지도 감독은 자치구에서 맡음. 그 외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가 없는 타마지역이나 도서지역은 도쿄도가 보건소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식품안전 감시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런던시는 식품안전을 포함해 식품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런던의 식품정책 방향을 제

시하는 기획기능을 함. 음식점 식품안전 감시·감독,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표시제 감시 등의 감시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함. 식품기준청은 기초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관리의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3) 식품(안전)기본계획의 수립

- 런던시는 식품안전을 포함해 건강, 환경, 경제, 사회·문화를 통합하는 10개년 런던식품전략계획(2007~2016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도쿄도는 5개년 도쿄도 식품안전추진계획(2005~2009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4) 인력의 전문성

- 도쿄도 치요타구의 경우 음식점, 제조업 시설허가와 유통식품 지도감시 등의 감시업무를 식품위생감시원 15명이 하고 있음. 식품위생감시원은 정규직 전문공무원(의사, 수의사, 약제사, 공중위생 전공 등)임. 치요타구는 식품위생감시원의 부족한 인력 확충과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과제로 삼고 있음.

제3장 식품안전관리제도와 행정체계 현황

제1절 법제도

제2절 식품안전관리행정체계와 역할분담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기반

제4절 자치구 식품안전 행정기반

제3장 식품안전관리제도와 행정체계 현황

제1절 법제도

- 2008년 들어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임. 「식품안전기본법」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같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게다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의무대상 업소가 식품접객업소 전반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임.
-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총괄 및 통합, 규제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방향으로 법제도가 변하고 있는 경향임.

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 2008년 6월 13일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식품안전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그 동안 식품안전이 식품유형 및 소관부처마다 개별법으로 관리되어, 식품안전의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런 차원에서 2005년 2월 보건복지부, 농림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08년 6월 13일 제정, 2008년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임.
- 식품안전 관련 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식품안전관련법령등’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은 28가지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염관리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임.
 -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제도 및 소관부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을 알 수 있음.

<표 3-1>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련법 현황

소관부처	관련법
보건복지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전염병예방법 · 약사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진흥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법 · 농약관리법 · 인삼산업법 · 친환경농업육성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사료관리법 · 비료관리법 · 양곡관리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 · 학교보건법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관리법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 · 먹는물관리법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세법

식품안전 기본법

국무총리

식품안전정책 위원회

1) 식품안전기본법의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식품안전기본법이 향후 서울시의 식품안전 정책의 지침 및 추진 근거이므로 식품안전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함.

○ 식품안전기본법의 목적

-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영위를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음.

○ 식품안전기본법의 구성

- 식품안전기본법은 1장 총칙, 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3장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5장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6장 소비자의 참여 등, 총 6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음.

<표 3-2> 식품안전기본법의 구성체계

장	조
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의 임기와 의무)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 (전문위원회)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제14조 (자료 및 조사·분석 요청)
3장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제15조 (긴급대응) 제16조 (생산·판매 등의 금지) 제17조 (검사명령) 제18조 (추적조사 등) 제19조 (식품 등의 회수)
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제20조 (위해성 평가) 제21조 (신종식품의 안전관리) 제22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제23조 (시험·분석·연구기관의 운용 등)
5장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제24조 (정보공개 등) 제25조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제26조 (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제27조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6장 소비자의 참여	제28조 (소비자의 참여) 제29조 (신고인 보호) 제30조 (포상금 지급)

○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역할

- 식품안전기본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하고 있음.

첫째,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둘째, 식품안전정책 수립 시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

셋째, 식품 등의 제조·가공·사용·조리·포장·보존 및 유통에 관한 기준과 식품 등의 성분 규격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정, 개정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는 것

넷째,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식품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표 3-3> 식품안전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

조	규정 내용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사용·조리·포장·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 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등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기본법상의 관계행정기관의 역할

- 식품안전기본법(제2조)에서는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농촌진흥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식품 등에 대해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관계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와 관련해 다음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음. 정부의 긴급대응방안의 시행에 협력해야 하고,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해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음. 또한 사업자에게 검사명령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와 관련해 식품안전 시험·분석 또는 연구를 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음.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과 관련해 식품안전법령을 위반한 해당 식품 및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상호 협력해야 하며,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도 공유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소비자의 식품안전활동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련연구기관이나 단체에게 연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참여와 관련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식품 시험·분석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표 3-4> 식품안전기본법의 관계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

조	규정 내용
15조 (긴급대응)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 사업자 및 소비자는 긴급대응방안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16조 (생산·판매 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17조 (검사명령)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들 -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들 - 그 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조 (추적조사 등)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이 있는 때에는 합동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함께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23조 (시험·분석·연구 기관의 운용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시험·분석 또는 연구를 하는 소속기관 정부 출연 기관 또는 식품안전법령 등에서 지정한 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4조 (정보공개 등)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 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관계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한다.
25조 (관계행정 기관 간의 상호협력)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 국내외의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7조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식품 등의 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검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 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식품 등의 관련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 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표 계속> 식품안전기본법의 관계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

조	규정 내용
28조 (소비자의 참여)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한다.
30조 (포상금지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 2008년 3월 21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 법의 목적(1조)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책무는 <표 3-5>와 같음.

<표 3-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기초자치단체 책무 및 역할 규정

조	규정 내용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교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7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 업소로 지정하여, 보건가족부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13조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 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어린이식생활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7조 (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28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산지표시제의 확대 강화

-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불안감 해소, 축산농가 보호,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2008년 5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원산지표시제를 확대·강화하고 있음(농림수산식품부,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 2008년 6월 24일).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 품목 및 의무대상 음식점을 확대함.
- 원산지표시는 유통단계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까지 확대됨.
- 식품위생법에 의해 2008년 6월 22일부터 영업장 면적 100m²이상인 음식점은 소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쌀(밥류)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함. 더 나아가 2008년 7월부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는 소고기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함. 2008년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100m² 이상인 음식점의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원산지표시제 강화로 서울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약 14만개가 원산지 점검대상이 됨.
- 농산물품질관리법(18조)에 시·도지사는 원산지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음.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 공표명령 등의 처분권한도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음.

4. 요점 및 정책 시사점

1) 부처별 식품안전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기반 마련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2008년 12월 14일 시행)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업무의 확대

- 식품안전기준법은 지방자치단체(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 수립과 시행, 연도별 식품안전

관리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시행에 따르는 인력과 재원을 우선 확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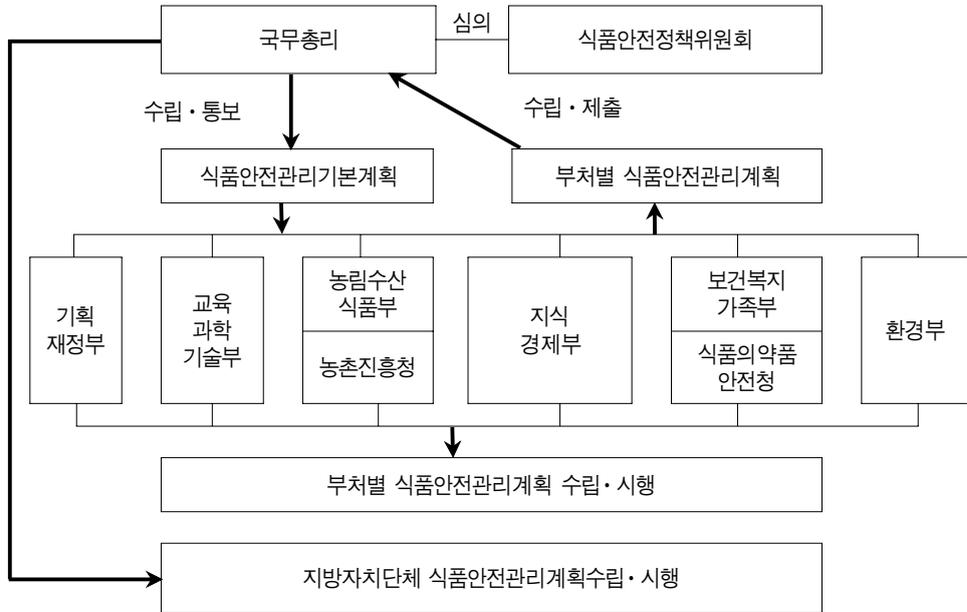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009. 3.22 시행)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우수판매업소 지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사업들을 할 수 있음.
-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품목과 의무대상 음식점이 확대됨. 따라서 원산지표시 감시업무가 대폭 늘어나게 됨.

제2절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와 역할분담

1. 중앙정부 식품안전관리 기본체계

- 식품안전기본법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면 국무총리가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됨.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8개 행정기관은 소관 식품 등에 대한 3년 단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함.
- 국무총리는 8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그리고 8개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8개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음.
-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이 됨. 그리고 식품안전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음.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i)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ii) 식품 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iii)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및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 및 개정
 정에 관한 사항, iv)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
 에 관한 사항, v) 중대한 식품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등



<그림 3-1> 중앙정부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2. 식품유형 및 식품망 단계별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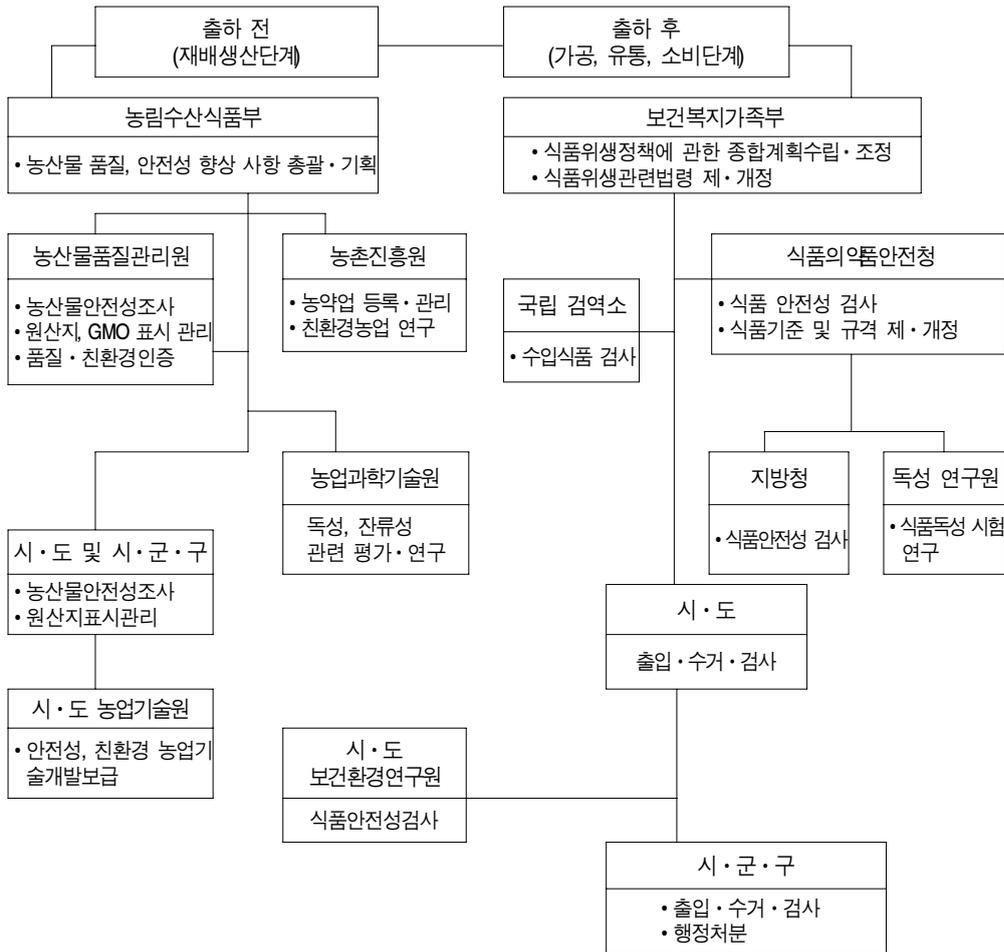
- 안전관리 행정부서가 식품유형과 식품망 단계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분산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는 농축수산식품의 안전성 관리, 품질관리, 표준규격, 시험·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과학원 등이 있음.

1) 농산물

- 농산물의 경우, 1차 생산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농산물 수입과 가공, 유통, 소비단계는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함.
- 생산단계(출하 전) 위험평가는 농촌진흥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주로 하고, 출하 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임. 위험관리도 생산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하고, 수입 농산물과 출하 이후 농산물은 식약청이 관리함.

-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산물 출하 후 유통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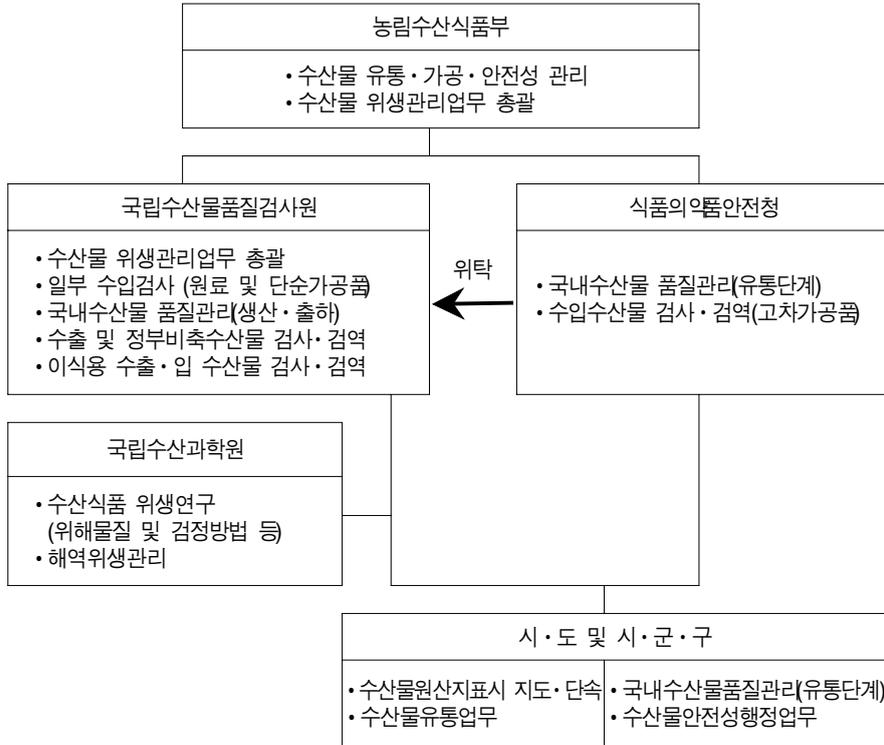
자료 : 오승용(2002), 「농축산물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그림 3-2> 농산물 안전관리 행정체계

2) 수산물

- 수산물의 경우, 1차 생산과 1차 생산품 수입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수산물 가공, 가공품 수입, 유통, 소비단계는 식약청이 관리함.

- 수산물 위험평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주로 함. 생산단계와 수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유통단계는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음.
-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유통단계 품질관리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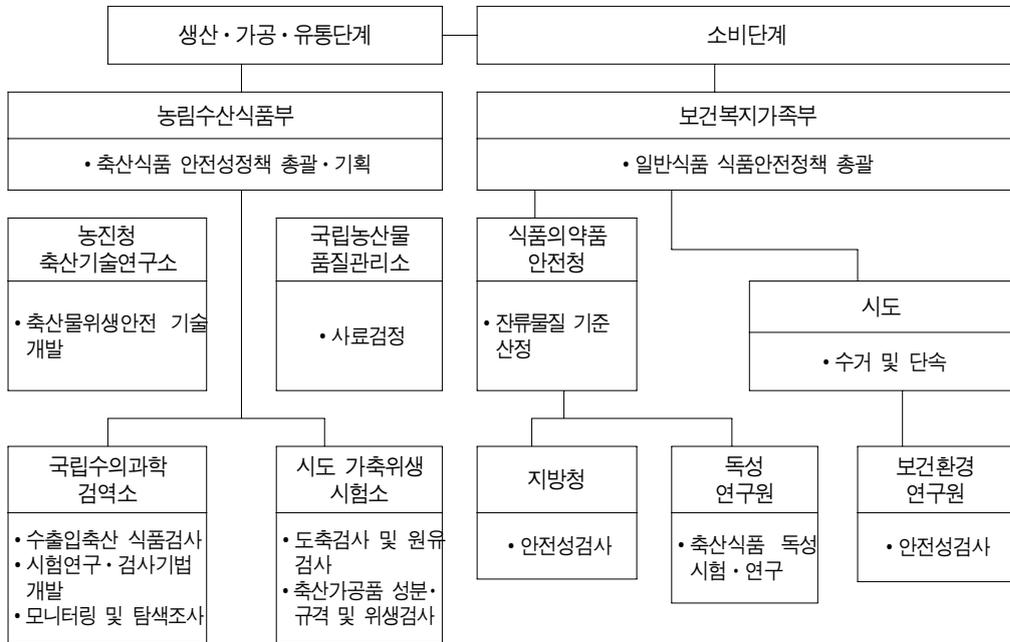


자료 : 최지현 외(2004),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63 재구성.

<그림 3-3>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3) 축산물

- 축산물은 1차 생산에서 가공, 유통단계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소비단계는 식약청이 관리함. 2008년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강화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최종 소비단계도 관여할 수 있게 되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대상 식품(102개)을 제외하고는 식약청에서 관리함.
- 축산물 위험평가는 수의과학검역원과 식약청이 관여하는 이원화체제임. 축산물 위험관리는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하고, 소비단계는 식약청이 함.



자료 : 최지현 외(2004),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3-4>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4) 수입식품 및 기타

○ 수입식품

- 수입식품의 위험관리는 품목별·식품망 단계별로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음. 농산품 및 가공품은 수입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식약청이 관리함. 축산식품은 수입에서 가공·유통단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비단계는 식약청이 관리함. 수산식품은 수입단계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가공·유통, 소비단계에서는 식약청이 관리함.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식품의 가공·유통단계, 소비단계에서 수거검사, 표시제 지도감시업무를 함.

○ 기타

- 식품일반, 포장용기, 식품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함.

<표 3-6> 수입식품의 유통단계별 위험관리

구 분	농산물 및 가공품		축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및 가공품	
	정책수립	정책집행	정책수립	정책집행	정책수립	정책집행
수입단계	식약청	국립검역소	농림수산 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가공·유통 단계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농림수산 식품부	수의과학 검역원·지자체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소비단계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식약청	식약청·지자체·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자료 : 최지현외(2004),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품유형과 식품망 단계별 안전관리 행정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5>와 같음.
- 식품품목별·식품망 단계별로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지도단속의 중첩 및 사각지대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음.

구 분	1차 생산품		2차 생산품		유통(보관·운반 등)	소비 (식당·백화점)
	재배·사육·양식	수입	국내 가공	수입		
농 산 식품	정책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지도단속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수 산 식품	정책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지도단속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지자체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축 산 식품	정책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식약청			
	지도단속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	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수산 식품부·지자체	농림수산 식품부·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식약청·지자체
먹 기 물	정책	환경부				
	지도단속	환경부·지자체				
집 단 급 식	정책	학교급식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집단급식소 (식약청)				
	지도단속	교육청·지자체·식약청				

자료 : 이철호(2008), 「서울시민 밥상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정책 발전방안」, 식품안전정책 서울포럼.

<그림 3-5> 식품유형별·식품망 단계별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3.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 행정체계

- 식약청(2008년 식품안전관리 지침)에서는 식품관련 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해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표 3-7> 참조).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 감시감독 지침 개발, 국내·외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조리·판매·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 기초위생관리, 현장중심 지도·계몽활동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표 3-7>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 역할분담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지방식약청은 기획·계통조사, 민원·제보 등에 의한 특별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소 방문 조사 지양) • 위해요소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 기획·계통조사를 통한 정책감시 • 식품범죄에 대한 수사 활동 • 각종 감시단속,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개발 •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에서 조리·판매·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감시 단속 활동(기초자치단체는 즉석판매업소·가공업소 및 식품접객 업소의 기초위생관리에 역점을 두고 감시단속활동을 수행) • 시설, 개인위생 등 기초위생관리 • 현장 중심의 지도·계몽 활동 • 일상적인 감시단속 활동 • 각종 감시단속지침의 현장적용 및 가이드라인의 보급 •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 수집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2008년 식품안전 관리지침」.

1) 영업허가 및 관리

- 식품관련업소의 영업허가 및 신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업종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있음. 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품목제조보고 업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그 적정성 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표 3-8> 식품관련업소 영업 허가 및 신고 행정체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초자치단체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첨가물제조업(품목제조보고) • 식품조사처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 수입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가공업(품목제조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2008년 식품안전 관리지침」.

2) 식품안전관리 업무별 분담체계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 운영
 - 기초자치단체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을 평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
 - 기초자치단체는 중점관리업소(상습·고의적 위반업소, 위생등급 평가결과 중점관리업소,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소 등)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상습·고의적 위반업소 특별관리
 - 기초자치단체는 식품위생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기초자치단체가 시·도지사에게 특별관리업소 지정, 해제 사항에 대해 보고하면 시·도에서 특별관리업소를 관리하고 있음.
- 식품유통·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 기초자치단체는 위생관리지침을 팜플렛 등으로 제작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배부하고, 위생관리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음. 시·도 또는 시·군·구는 이들 업소 등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면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및 건강식품 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기타 도·소매업 대상으로 수시 점검 및 수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허위·과대광고 행위 단속
 -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단속업무의 경우, 매체별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지, 지역케이블 방송, 지역생활정보지를 모니터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여 노인정, 부녀회 및 농촌지역 등의 방문판매, 관광(효도)여행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모니터하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시·도지사는 허위·과대광고 모니터 및 행정처분 실적을 식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식품 등의 수거검사
 -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는 식약청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식품유형에 따라 수거기관이 다른데,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음.

<표 3-9> 수거검사 분담체계

구 분	대상품목	수거기관	
농·임·축수산물	농·임산물	•엽경채소류(식품공전 고시농약)	시·도 및 시·군·구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시·도
	수산물	•어류, 패류, 해조류, 담수어	시·도
가공식품	일반	•과자류, 빵, 떡류, 초콜릿류 등	시·군·구
	축산물	•햄, 소시지, 유가공품, 아이스크림	시·군·구
식품접객업	•음용수, 수족관, 물, 칼, 도마 등	시·군·구	
농·임산물	•엽경채소류(신규 고시농약) •곡류, 두류, 서류, 과일류 등	지방식약청	
식품첨가물	•화학적합성첨가물 살균·소독제 등	지방식약청	
기구 및 용기 포장류 등	•식품용 기구·용기포장류 등	지방식약청	
기준규격 미설정 항목	•선행조사, 권장규격, 조사연구사업 등 •화객선, 여행자 휴대반입품	지방식약청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2008년 식품안전 관리지침」.

○ 엽경채소류 신속 수거검사

-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식약청은 엽경채소류(배추같은 입줄기 채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수거검사를 함. 수거·검사의뢰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적합한 농산물 생산자(농민)를 반드시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식품위생법).
- 시·도는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할인점 등 농산물 취급업소 및 대형유통업체, 단체 등이 월 1회 이상 잔류농약 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해야 함.
- 수거검사결과에 대해 시·군·구는 시·도에 보고 하고, 시·도는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특별관리대상식품 지정 운영

-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 중 최근 3년간의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비율이 높은 식품을 지정하여 매월 반복수거하는 것임. 식약청은 2008년 시·군·구에서 수거하는 특별관리대상품목으로 28개를 지정함. 지방식약청은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2개 품목을 수거함.
- 시·도는 각 시·군·구의 인력을 감안하여 28개 대상품목이 매월 반복 수거검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기동단속반 운영
 - 지방식약청장, 시·도지사 책임하에 기동단속반을 설치·운영하며, 시·군·구는 단속인력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식약청은 부정불량식품 중앙기획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국 합동단속
 - 전국합동단속은 식약청이 종합계획 수립, 단속인력 확보 등 운영을 총괄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시·도 단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기초자치단체는 단속활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식약청은 수거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업무를 실시함. 전국합동단속은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식품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수시합동단속이나 계절별 환경변화에 따른 사전예방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함.
- 여름철 위해식품 특별단속
 - 여름철 1개월간 유원지, 다중이용시설, 여름철 다소비 식품 및 부패변질우려가 높은 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특별단속,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것임.
 - 시·도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 설과 추석 20일 이전에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무신고 제조 및 판매 행위, 사용원료 적정여부, 유통기한, 보관상태, 표시·광고위반 행위 등을 점검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경우, 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협의하여 대상업소 및 수거검사대상을 선정함.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관내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해당제품의 점검에 대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식약청은 관내 건강식품제조업소·수입업소 및 해당 제품을 점검함.
- 위해식품의 회수·폐기
 - 영업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임.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허가(신고)관청에 제출하며, 허가(신고)관청은 식약청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함(시·군·구는 시·도를 경우).
 - 허가(신고)관청은 유통 중인 당해 회수식품 등의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함.

-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는 반드시 회수업무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특별관리
 - 지방식약청, 농산물품질검사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음.
 - 시·도(시·군·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실적을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1399)포상금제 운영
 -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는 1399 운영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분기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1회 이상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홈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 지방식약청은 5~10개 초등학교별로 학교주변의 위생지도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을 책임지정하여 월 2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 재래시장 등 취약지 특별관리
 - 광역자치단체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 기초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자판기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해야 함.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의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자판기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 계도, 유통식품 표시기준, 허위표시 등의 위반행위에 관해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약청장, 지방식약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음.

○ 시민식품감사인제도 운영

-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영양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함. 시민식품감사인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시설기준 적합 여부·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행 여부의 확인·점검 등을 할 수 있음.

-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식약청장에게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식약청장 및 시·도지사는 영업자의 위촉지정신청에 대비하여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지정 예비인력을 확보해야 함.

- 식약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민식품감사인이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촉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이 출입·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식품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 동업자 조합 및 조합에 가입한 업소들이 일정 자격을 갖춘 자율지도원을 임명하면 이들이 시설기준 지도,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교육 등의 지도, 식품위생지도 등을 하는 것임.

- 자율지도를 하는 단체는 자율지도실시업소 명단 및 결과를 해당업소 허가(신고)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식약청장은 자율지도단체의 자율지도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

- 식약청은 정부합동평가 시 각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을 평가함.

- 시·도는 시·군·구 평가를 하고, 시·군·구는 자체실적을 분석평가함.

○ 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 영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등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검사하는 제도임.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은 자치구에서 시행.

○ HACCP 제도 운영

-시·도(시·군·구) 식품위생관련부서에 HACCP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자치구는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통계관리를 작성하고 이를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HACCP 업체의 관리는 지방식약청에서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징수는 관할 시·군·구에서 함.

○ 식중독 관리

-보건소장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을 보고받은 즉시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해당 사실을 입력하고, 자치구, 시장, 식약청,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식중독대책본부를 설치함.

-시·도는 식중독 대책반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식중독상황처리반을 환경위생과, 보건소에 설치함.

-지방식약청은 식중독관리반(원인식품조사반)을 운영함.

-시·군·구는 식중독 발생우려업소를 집중관리하여야 함.

<표 3-10> 식중독 관리 행정체계

대 상	기 간	점검기관
학교급식소 직영	연 2회	시·도 교육청
학교급식소 위탁 식재료공급업소	6월·8월 (합동단속시)	식약청 주관 지방청, 시도(시군구), 시·도교육청
아동급식, 유치원 사회복지급식시설	5월·11월 (합동단속시)	식약청 주관 지방청, 시도(시군구), 시·도교육청 아동복지 담당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소	연 2회	지방청
기업체 급식소 도시락류 제조·가공업소	4월·7월	시·도
뷔페 및 대형음식점 (100평 이상)	연 2회	시·군·구
청소년수련관	연 2회	시·군·구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2008년 식품안전 관리지침」.

-식약청(2008년 식품안전관리 지침)은 식품안전과 관련한 21개 업무에 대해 식약청, 지방 식약청, 시·도, 시·군·구의 역할분담을 <표 3-11>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표 3-11> 식품안전업무별 행정 분담 체계

업무별	식약청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1) 위생관리 등급 제 운영	•운영지침 제·개정 •전국 운영현황 관리	•소관 업소 평가·관리 -식품첨가물제조업	•관내 시·군·구 운영 현황관리	•소관 업소 평가·관리 -식품제조·가공업
2)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관리지침 제·개정 •기획·계통조사 및 제도 개선	•기획·계통조사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중 중점관리업소	-	•소관업종 중 중점 관리 업소
3) 상습·고의 위반 업소 특별관리	•운영지침 제·개정	•소관업소지정 •지도·점검 -식품첨가물제조업	•업소 현황관리 •지도·점검(시·군· 구 소관 업소)	•소관업소 지정
4) 식품유통·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관리지침 제·개정 •기획·계통조사	•기획·계통조사	-	•지역 내 유통·판매업 소 지도·점검
5) 허위·과대 광고 단속	•관리지침 제·개정 •인터넷(해외) 사이트 •중앙 TV 방송	•인터넷 사이트 •중앙 일간지 •홈쇼핑 방송	•지방지 •지방 TV 방송	•지방지 •지역 케이블 방송 •지역 생활정보지
6) 식품 등의 수거·검사	•관리지침 제·개정 •분석·평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규격 미설정 항목 모니터링 검사	•유통 축·수산물 •유통 축산물 가공 식품	•모든 가공식품
7) 엽경채소류 등 신속 수거·검사	•관리지침 제·개정 •분석·평가	•엽경채소류(신규고시농약) •곡류, 두류, 서류, 과일 등	•시·도 단위 계획수립	•엽경채소류(식품공전 고시 농약)
8) 특별관리 대상 식품 지정·운영	•관리지침 제·개정 •분석·평가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월별 수거·검사 계획 수립 -시·군·구별 역할 분담	•특별관리대상 식품 전 부(식품첨가물, 건강 기능식품 제외)
9) 기동단속반 운영	•운영지침 제·개정 •중앙기획조사반 설치 운영	•지방기동 단속반 설치· 운영	-	-
10) 전국 합동 단속	•관리지침 제·개정 •종합계획 수립	-	•시·도 단위 계획수립	•단속 실시
11) 여름철 위해식품 특별단속	•관리지침 제·개정	-	•시·도 단위 계획수립	•시·군·구 자체 계획 수립 및 단속 실시
12) 명절 성수 식품 특별 단속	•관리지침 제·개정	-	•시·도 단위 계획수립	•시·군·구 자체 계획 수립 및 단속 실시
13)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관리지침 제·개정	•자체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교주변 식품 취급업 소 지도·점검
14) 재래시장 등 취약지 특별관리	•관리지침 제·개정 •실적평가	•교육, 지도·계통 등 지원	•시·도 단위 계획수립 및 지원	•추진 계획 시행
15)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관리지침 제·개정	•영업자 위생교육	•시·도 단위 계획수립 •다중이용시설 지도· 점검	•시·군·구 자체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16) 위생식품 등의 회수·폐기	•운영지침 제·개정 •분석·평가	•회수명령 •계통·추적 조사 •제품 폐기 등 조치	-	•회수명령 •제품 폐기 등 조치
17) 부정·불량 식품 신고 상급제 운영	•운영지침 및 고시 제· 개정	•민원신고 처리 및 포상 금 지급	•민원신고 처리 및 포상 금 지급	•민원신고 처리 및 포상 금 지급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2008년 식품안전 관리지침」.

<표 계속> 식품안전업무별 행정 분담 체계

업무별	식약청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18) 시민감사인 제도 운영	•운영지침 제·개정 •시민감사인 지정 및 추천(식품첨가물제조업)	•시민감사인 위·해촉 관리(위·해촉은 영업자가 함)	•시민감사인 대상자 지정 및 추천(식품제조·가공업)	•시민감사인 위·해촉 관리(위·해촉은 영업자가 함)
19)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운영지침 및 고시 제·개정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20) 식품위생 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지침 및 제·개정	-	•교육·홍보 등 지원	-
21) 식품안전 관리 추진 실적평가	•평가 항목 및 기준 선정 •시·도별 실적 평가	-	•관내 시·군·구 실적 평가	-

4. 요점 및 정책 시사점

1) 위험평가 기구의 분산화 및 자율성을 담보하기 힘든 체계

-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에 의해 부처별 식품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음. 식품안전기본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장관(식약청 포함 7개 부서)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식품안전 관계부처 합동회의(2008년 7월 11일)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에 의하면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과학적·전문적 조사연구 및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될 계획임.
- 영국과 일본, EU 국가들은 식품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위험관리기구(정부부처)와 독립된 위험평가기구를 만들거나 각 부처에 분산된 위험평가기구를 통합하여 기능을 강화하면서 위험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우리나라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험평가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이 위험관리를 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농촌진흥청 등도 위험평가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소관 기구들도 위험관리를 하고 있음. 이처럼 위험평가 기구가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기능도 미약하여, 정부부처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체계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8개 정부부처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하에 위험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위험평가기구가 중복설립되고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

- 2) 위험관리 행정체계의 복잡성으로 업무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체계
 - 식품품목별·식품망 단계별로 위험관리를 하는 행정부처가 다름.
 - 특히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감시·지도업무의 경우, 식약청, 지방식약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중복 가능성과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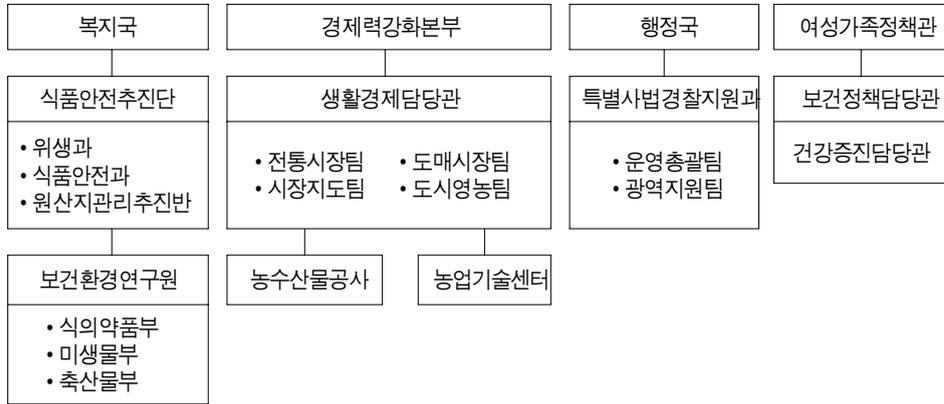
- 3)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식품관련업소 관리·감시·지도업무의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
 - 식품관련업소 감시·지도업무의 행정주체가 복잡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시·지도업무의 대부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기반

1. 행정조직

1) 관련 행정부서

- 2008년 들어 서울시의 식품안전 행정체계는 계속 재편 중에 있음. 서울시는 2008년 1월 복지국에 식품안전과를 신설함으로써, 식품안전업무를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확대하여 관리·운영하기 시작함.
-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 원산지표시제 확대강화로 2008년 7월부터 복지국에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여 위생과, 식품안전과, 원산지관리추진반으로 ‘식품안전추진단’을 구성함. 이는 경쟁력강화본부의 생활경제담당관에서 담당해왔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업무를 식품안전추진단으로 이관하여 원산지 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임.
- 서울시의 식품안전 행정은 2008년 7월 1일 현재 복지국의 식품안전추진단과 경쟁력강화본부의 생활경제담당관을 두 축으로 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음. 이밖에 행정국의 특별사법경찰지원과가 식품안전단속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



<그림 3-6> 서울시 식품안전 관련 행정부서

2) 부서별 조직 및 업무

(1)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은 위생과, 식품안전과, 원산지관리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생과는 위생정책팀, 식품위생팀, 식품감시팀, 공중위생팀, 화장실 수준향상팀의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원 28명 중에서 15명(53%)은 일반행정직이며, 보건·수의직군은 7명(25%), 기능직 및 기타 직군은 6명(21%)임.
 - 식품안전과는 식품안전정책팀, 가공식품안전팀, 축산물안전팀, 농수산물안전팀의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원 21명 중에서 보건·수의직군이 12명(57%)으로 가장 많고, 일반행정직이 7명(33%), 기능직 및 기타 직군이 2명(10%)임.
 - 원산지관리추진반은 원산지관리 1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원 17명 중에서 일반행정직이 13명(76%)으로 가장 많으며, 보건·수의직군이 4명(24%)임.

<표 3-12>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 인력현황(2008년)

부서 \ 직렬	일반행정직	보건·수의·농업·수산직	기능직	기타	계
위생과	15명 (53.57%)	7명 (25.00%)	5명 (17.86%)	공업직 1명 (3.57%)	28명 (100.0%)
식품안전과	7명 (33.33%)	12명 (57.14%)	1명 (4.76%)	계약직 1명 (4.76%)	21명 (100.0%)
원산지관리추진반	13명 (76.47%)	4명 (23.53%)	-	-	17명 (100.0%)
계	35명 (53.03%)	23명 (34.85%)	6명 (9.09%)	2명 (3.03%)	66명 (100.0%)

자료 : 서울시 부서별 내부자료(조사시점 2008년 8월 26일).

- 따라서 식품안전추진단의 총 인원은 66명이 되며, 그중 일반행정직이 35명(53%)으로 가장 많고, 보건·수의직군이 23명(35%), 기능직 및 기타 직군이 8명(12%)임.

○ 식품안전추진단은 식품안전 위험관리와 위험정보교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표 3-13>은 식품안전추진단 3개과의 팀별 업무를 개인별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표 3-13> 식품안전추진단 부서별 업무내용 (2008년)

부서명		업 무	
위생과 (28명)	위생정책팀 (7명)	• 보건환경연구원 지도감독 • 식품진흥기금 사업총괄	• 자치구 위생업무 평가 • 음식관련 각종 행사 지원
	식품위생팀 (5명)	•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 모범음식점 및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관련업무 • 음식문화개선 관련 업무 •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 중점관리업소 관리 및 위생지도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업무 • 식품영양정보표시제 시범실시 업무 • 손씻기 운동 관련 업무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총괄 • 식중독예방 및 관리업무 • 점검업무 • 교육청 학교급식위생지도 점검지원업무 • 식품접객업소 관련단체 업무
	위생감시팀 (5명)	• 식품접객업소 단속업무 총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	• 위해식품 정보수집 및 수거업무
	공중위생팀 (4명)	• 먹는 물 관련업무 총괄	• 공중위생업무 총괄
	확장실 수준향상팀 (4명)	• 음식점확장실 개선 및 지원사업	
식품 안전과 (21명)	식품안전 정책팀 (8명)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 • 식품안전종합대책 수립 • 시민안전성감사청구제 운영 • 식품안전의 날 행사	• 식품안전감시계획수립 •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운영 • 식품안전 감시활동 대시민 홍보
	가공식품 안전팀 (5명)	• 민관합동단속 • 기준규격관리에 관한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 관리사항 • 식품안전전문 교육 및 소비자식품감시원 교육 • 식품소분·판매업 관리 •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유통관리 감시 •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HACCP 관리사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관리사항	• 어린이 먹거리 안전대책 • 행정소송, 질의회신 업무 • 상시단속·수거검사업무 • 식품안전멘토링 시스템 및 기술지원 •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사항 • 1399처리 사항
	축산물 안전팀 (4명)	• 축산물 관련 직능단체 사항 • 도축업 허가 및 위생관리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관리 •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관련업무 •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리	• 상시 축산물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 축산물가공처리업에 관한 위생교육 • 축산물 관련 허위과대광고 • 부정불량 축산물 민관합동 단속 • 축산물 HACCP 운영관리
	농수산물 안전팀 (3명)	• 유통농수산물 관리 • 유기농식품, 농수산물 HACCP운영관리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 수입유해농산물 유통관리	• 재래시장 위생관리 • 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제 • 국내외 식품동향정보
원산지 관리 추진반 (17명)	원산지관리 1팀(6명)	• 원산지업무 기본계획 수립 • 원산지명예감시원 위·해촉관리 • 농수산물유통증서자 증 관리 및 특사경 관련업무	• 원산지업무 홍보 • 원산지업무 편람 및 교육자료 수립
	원산지관리 2팀(10명)	• 기획점검계획 수립 • 농수산물 비교전시회 • 명예감시원 관리	• 자치구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 정부합동점검 자체계획수립 및 실적 관리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관리

자료 : 서울시 부서별 내부자료조사시점 2008년 8월 26일.

주 : 부서별 총인원은 '위생과'는 단장, 과장, 부속실 직원, '식품안전과'는 과장, '원산지관리추진반'은 과장이 포함된 수치임.

(2)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단계에서 수거된 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담당함.
 - 식의약품부, 미생물부, 대기부, 수질부, 축산물부,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대기부와 수질부를 제외한 5개 부서가 식품안전업무와 관련이 있음.
 - 식의약품부는 식품안전성팀, 식품분석팀, 기획검사팀, 첨가물검사팀, 약품화약팀, 독성약품팀의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4개팀(식품안전성, 식품분석, 기획검사, 첨가물검사)이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함. 미생물부는 미생물검사팀, 역학조사팀, 바이러스 검사팀의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생물검사팀과 역학조사팀이 식품안전업무와 관련이 있음.
 - 축산물부는 검사팀, 시험팀, 인수공통전염병팀의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강남농수산물검사소는 위생관리팀, 농산물검사팀, 수산물검사팀으로,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위생관리팀, 잔류농약검사팀, 한약재검사팀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표 3-14>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안전 관련 인원 및 부서의 업무

부 서		업 무
식의약품부 (34명)	연구기획팀	• 식품안전 및 안심(먹을거리 안심) 프로젝트 수행 • 시료수거
	식품안전성팀	• 식품안전성 시험연구 • 건과류가공품류, 음료·다류, 건강기능식품 검사
	식품분석팀	• 빵, 떡, 과자류, 면류, 장류, 도시락류 등 시험검사
	기획검사팀	• 식용유지, 유지가공품, 어육제품, 두부·묵류, 김치절임류, 건포류 등 시험검사
미생물부 (11명)	첨가물검사팀	•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류, 위생용품, 조미식품, 주류,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류 시험검사
	미생물검사팀	• 각종 식품의 미생물 검사, 식중독 검사 •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연구
축산물부 (26명)	역학조사팀	• 전염병 관련 시험연구 •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훈련 및 정도관리
	검사팀	• 도축검사,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등
	시험팀	• 축산물가공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 등
강남농수산물 검사소 (41명)	인수공통 전염병팀	• 가축 및 축산물 인수공통전염병검사 등
	위생관리팀	• 검사대상품목 시료수거와 위생점검 • 부적합 농수산물 폐기 행정조치 의뢰 및 생산자 교육
	농산물검사팀	•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연구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26명)	수산물검사팀	•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연구
	위생관리팀	• 기자재 수급과 유지관리 • 검사대상품목 시료수거 • 강북지역농수산물 유통업소 위생점검 등
	잔류농약검사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및 조사연구
	한약재검사	• 유통 한약재 안전성 검사 및 조사연구

주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총인원은 강서지소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sihe.seoul.go.kr>)(2008년 7월 기준).

(3) 생활경제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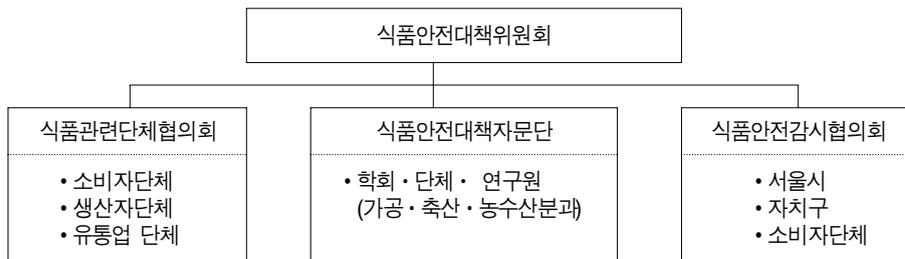
- 경쟁력강화본부의 생활경제담당관은 전통시장팀, 소비자팀, 도매시장팀, 시장지도팀, 동물관리팀, 도시영농팀 등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농수산물공사와 농업기술센터를 관리하고 있음.
- 생활경제담당관의 식품 관련 업무로는 전통시장 내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네트워크 구축, 농축산물 직거래 지원, 식품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친환경주말농장 운영(팔당상수원 수질보호 13개 농장),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관리 등을 들 수 있음.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는 총괄지원팀(6명), 마케팅홍보팀(3명), 새기술교육팀(3명), 친환경기술팀(3명), 원예기술팀(3명), 도시농업팀(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업기술센터는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재배단계에서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하고 있음. 서울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을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장 운영, 전국 우수농산물 추천, 우리농산물 가공 및 요리교육 등의 사업도 함.
-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가락도매시장,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을 운영 함. 그리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매일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 시장에서 속성검사를 하고, 정밀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함. 부적합 판정 시 폐기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함.
 - 농수산물공사는 농협중앙회와 협약체결을 통해 산지안전성 검사사업을 함. 재배 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농약사용이력을 기록관리하며, 농산물 출하 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 그래서 이상이 없을 경우 농산물에 산지안전성검사품을 부착하여 도매시장에 유통시킴. 산지안전성검사품은 생산이력추적을 가능하게 함.
 - 농수산물공사는 원산지표시제 전담반을 구성하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
 - 농수산물공사는 친환경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가, 수의매매 품목 확대, 친환경농산물 전문취급 상인 육성, 우선경매, 친환경농산물 출하자 등록 의무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인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4) 행정국

- 행정국의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운영총괄팀(10명), 광역지원팀(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광역지원팀에서 식품, 위생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단속업무를 지원함.

2.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 서울시는 2008년 1월에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함. 그리고 식품관련단체협의회, 식품안전대책자문단, 식품안전감시협의회(2008년 9월 구성·운영)를 구성할 예정임.
- 식품안전대책위원회는 식품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복지국장이 공동으로 맡음.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역할은 식품안전종합대책 및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및 정책조정 등임.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3-7>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조직도

- 식품관련단체협의회
 - 식품관련단체협의회는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유통업 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며, 식품안전계획에 대한 단체·조합별 의견을 제시, 자체감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됨.
- 식품안전대책자문단
 - 가공식품분과, 농수산물분과, 축산물 분과로 운영되며, 식품안전 세부사업계획 수립 연구·자문역할을 하게 됨.
- 식품안전감시협의회
 - 서울시, 자치구, 농수산물공사, 보건환경연구원, 소비자단체로 구성되며, 식품안전 감시방향 사전협의·조정기능을 하게 됨.

<표 3-15>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기능과 구성

명칭	기능	구성
식품안전 대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종합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과 자문 • 각종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전문 의견 제시, 정책 조정 • 식품안전 사업추진 관련 시민의견 수렴 및 대시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 시민단체, 식품업계, 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외부위원 1인 (공동) • 부위원장 2명 : 복지국장, 외부위원 • 위원 18명 내외 : 외부전문가 17명, 시의원 1명
식품관련 단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계획에 대한 단체·조합별 의견 제시 • 생산·소비·유통단계별 식품안전성에 대한 자체 감시 •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홍보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소비자·유통업 단체 대표, 공무원 등 28명 내외로 구성 • 협의회장 : 복지국장, 소비자단체대표 공동 • 위원 : 외부위원 22명, 식품안전과장, 위생과장 24명
식품안전 대책자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기본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연구·자문 • 식품안전에 대한 이론적 지식 지원 및 사업계획 구체화 방안 자문 • 선진외국 식품안전정책 벤치마킹 등 현장적용 시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 연구원, 단체 실무급 인사 및 공무원 14명 내외로 구성 • 가공식품분과, 농수산물분과, 축산물분과 운영 • 자문단장 : 복지국장, 분과별 부단장 공동 • 위원 : 외부위원 9명, 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 감시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감시대상 품목 및 지역 선정·제시 • 식품안전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 방안 협의 • 식품안전 감시방향 사전 협의·조정 • 사회적 문제 식품 원인규명 및 추적 조사 등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자치구, 농수산물 공사, 보건환경연구원 소비자 단체 등 15명 내외 (10개) • 협의회장 : 식품안전과장 • 위원 : 15명 내외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3. 식품안전 관련 조례

- 서울시는 2008년 8월 현재 '서울시 식품안전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중에 있음. 식품안전에 관련된 서울시 조례로는 '서울시특별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서울시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서울시특별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들 수 있음.

<표 3-16> 서울시 식품안전 관련 조례

조례명	목적
서울특별시 농산물잔류농약검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1999년 제정)	농산물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농산물에 대한 검사와 이에 따른 유통중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1997년 제정)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005년 제정, 2008년 전문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조례 제정 예정(2008년 9월 예정)	서울시 차원의 식품안전 목표 설정, 소비자, 생산자, 서울시, 자치구 간 책임과 역할 설정, 식품안전종합대책 수립 및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서울시 식품안전조례를 2008년 8월에 시의회 상정 심의의결을 하고, 9월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에 있음.

자료 : 서울시 자치법규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2005/law/now_law.php).

4.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용도

- 식품위생법(제71조)에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음.

- 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식품제조업소·식품판매업소 등에서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구성함. 징수한 과징금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60%,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으로 40%를 배분함. 자치구별 징수 과징금의 차이 때문에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액은 차이가 있음.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로 i)영업자(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ii)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iii)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iv)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v)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 신고 보상, vi)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vii)기금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로 정하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 조성액과 집행내역 및 집행액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004년 약 1,210억으로, 그해 약 112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9.31%임. 2007년에는 조성액 955억원 중, 그해 약 127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13.3%임.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2007년)을 보면, 음식점 시설개선 용자사업을 위한 집행액이 전체 집행액의 47.3%인 약 69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음. 교육홍보사업용을 위한 집행액은 약 18억 4천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2.5%를 차지함.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집행 액수는 전체 집행액의 7.3%인 약 10억 7천만원임. 그리고 조사 및 연구사업을 위한 집행액은 총집행액의 1.7%인 약 2억 4천만원임.

<표 3-17>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연도	2004년	2007년
기금조성액(A)	121,005,252	95,493,417
집행액(B)	11,268,855	12,685,015
집행률(B/A*100) (%)	9.31	13.3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표 3-18> 2007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

(단위 : 원/%)

내역	집행액
음식점 시설개선 용자사업	6,976,000,000 (47.3)
교육홍보사업	1,843,814,029 (12.5)
음식문화개선사업	1,076,290,940 (7.3)
행사 등 지원사업	721,170,730 (4.9)
조사 및 연구사업	244,400,000 (1.7)
기타사업	3,885,675,699 (26.4)
계	14,747,351,398 (100.0)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5. 요점 및 정책 시사점

1) 식품망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 행정체계 틀은 구비되어 있음.

- 식품 관련 조직이 복지부 식품안전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생활경제담당관, 농수산물공사, 농업기술센터, 특별사업경찰지원과 등 6개가 되면서, 1차 생산단계에서, 제조·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단계까지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체계는 갖춰져 있음. 각 부서는 식품망 단계별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음.
-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은 제조·가공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함.
-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단계 식품의 안전성 평가업무를 하고 있음.

<표 3-19> 식품망 단계별 행정부서의 사업내용

구 분	1차 생산단계 (재배)	2차 생산단계 (제조·가공)	유통단계	소비단계
식품안전 추진단	-	• 제조업체 식품안전 기술지원사업 • HACCP 지원사업	• 식품 수거·감시 •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보건환경 연구원	-	-	• 수거식품 안전성 검사	-
생활경제 담당관	• 친환경주말농장운영	-	• 친환경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관리	• 농축산물직거래 지원 • 소비자보호사업
농수산물 공사	• 산지안전성검사 사업 및 산지안전성 검사품 유통 • 친환경 농산물 거래 활성화 사업	-	•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 속성 검사 • 원산지표시지도감독	-
농업기술 센터	• 서울시 재배농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 • 안전성 검사 • 도시농장 운영	-	-	• 전국우수농산물 추천 • 우리농산물 가공 및 요리교육
특별사법 경찰지원과		-	• 수거 및 감시	• 식품접객업소 감시감독

- 생활경제담당관은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하므로,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1차 생산단계에서 안전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음. 또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을 통해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하고, 식품을 포함한 소비자보호사업을 통해 소비단계의 안전관리에도 개입한다고 할 수 있음.
- 농수산물공사는 산지안전성 검사사업과 산지안전성검사품 유통을 통해 1차 생산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일부 한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속성검사를 하므로 유통단계에서 안전성 평가업무도 하고 있음.
- 농업기술센터는 서울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과 재배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1차 생산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일부 함. 그리고 전국우수농산물 추천과 우리농산물 가공 및 요리교육을 통해 소비단계에서 안전관리도 한다고 할 수 있음.

2) 식품안전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 및 예산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

- 서울시 식품안전 정책의 추진근거가 되는 제도적 틀로서 ‘서울시식품안전조례’가 2008년 9월 제정됨. 그리고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 이어 식품관련단체 협의회, 식품안전대책자문단, 식품안전감시협의회가 구성됨. 이로써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 및 기구의 틀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의 2007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약 954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제도기반, 예산확보와 같은 기본틀은 현재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과 활용에 대한 고려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짐.

3)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통합성 결여와 중복

- 보건건강과 식품안전업무의 통합성 결여
 - 최근 세계적으로 보건건강정책에서 식품안전을 비롯해 식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식품안전과 관련된 식중독관리업무의 1차 담당부서는 보건소와 병원인 반면, 보건 및 건강업무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되어 있어, 식품안전과 보건업무의 통합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음. 복지국 소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식품안전성 분야 외에 전염병 관련 시험연구,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훈련, 의약품팀이 있어 보건업무와도 연관이 있음. 이처럼 보건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 일관관리 원칙 하에 통합관리한다는 개념이 부재
 - 서울시 6개 조직의 사업을 모아보면 부분적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단계별로 안전관리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부서별 사업들이 식품안전 일관관리라는 통합된 구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즉 식품망 단계별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부서별 사업들에 대해 식품안전 일관관리원칙하에 사업목표치를 설정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위험정보교환 담당부서 부재와 감시·관리감독 중복
 - 식품안전관리에서는 위험정보교환 업무가 중요함. 식품안전에서 식품안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며, 이는 위험정보교환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달려 있음. 식품안전추진단의 조직이 감시·관리감독 위주로 구성되면서, 팀 간 업무 중복성이 있음.

4)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목표치 설정이 없음

-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별로 최소한 또는 최대한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치의 설정이 미흡함. 가령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제조업체

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멘토링 사업을 전체 제조업의 몇 %로 설정한다거나, 제조업 유형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하지는 않음. 식품망 단계별로 식품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 (최소한, 최대한) 수행해야 하는 사업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제4절 자치구 식품안전 행정기반

1. 행정 부서

- 자치구의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도 2008년 7월부터 변화 중에 있음. 자치구 식품안전관리 행정부서는 보건소의 보건위생과(21개 자치구), 주민생활국 환경위생과나 위생청소과(4개 자치구)에 소속되어 있음. 농축산 유통 및 원산지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2008년 7월부터 원산지표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시의 원산지관리전담팀 구성 권고로 자치구마다 원산지관리전담팀을 설치하고 있음.

<표 3-20> 자치구별 식품안전 관리 행정부서

자치구	식품안전·위생업무 담당부서	원산지표시제 담당부서
종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원산지관리추진반
중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원산지관리팀
용산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역경제과 원산지관리팀
성동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역경제과 원산지관리팀
광진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역경제과 원산지관리추진반
동대문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원산지관리추진반
중랑	보건소 보건위생과	재정경제국 원산지관리추진반
성북	보건소 건강정책과	보건소 원산지관리팀
강북	주민생활국 위생청소과	지역경제과 식품안전추진단
도봉	보건소 보건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 원산지관리추진반
노원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소 원산지관리추진반
은평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소 원산지관리추진반
서대문	보건소 보건위생과	재정경제국 원산지관리추진반
마포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소 식품안전추진반
양천	보건소 보건위생과	기획재정국 원산지관리추진반
강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 원산지관리추진팀
구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환경경제국 식품안전추진반
금천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역경제과 식품안전추진반
영등포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소 원산지관리추진반
동작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원산지관리팀
관악	보건소 보건위생과	재정경제국 원산지관리추진반
서초	보건소 보건위생과	기업환경과 식품안전추진반
강남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원산지관리반
송파	보건소 보건위생과	기획재정국 원산지관리추진반
강동	보건소 보건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 식품안전추진반

자료 : 서울시 자치구별 내부자료(조사기간은 2008년 7월 15일~18일).

2. 인력

-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보건위생과, 환경위생과, 위생청소과의 공무원 현황을 보면 현원(현재 인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용산구, 성북구, 관악구로 각각 15명씩임. 10명 이하인 자치구는 강북구(10명), 강남구(9명)임. 자치구당 평균 인력은 13명임.

<표 3-21> 자치구별 보건위생 담당부서의 인력현황

(단위 : 명, %)

자치구	현원(명)				정원
	일반행정직	보건·수의·농업·축산직	기능직	계	
종로	10 (90.9)	1 (9.1)	0 (0.0)	11 (100.0)	11
중구	8 (57.1)	4 (28.6)	2 (14.3)	14 (100.0)	17
용산	4 (26.7)	6 (40.0)	5 (33.3)	15 (100.0)	15
성동	6 (50.0)	6 (50.0)	0 (0.0)	12 (100.0)	12
광진	5 (35.7)	9 (64.3)	0 (0.0)	14 (100.0)	14
동대문	6 (46.2)	5 (38.5)	2 (15.4)	13 (100.0)	16
중랑	5 (35.7)	7 (50.9)	2 (14.3)	14 (100.0)	20
성북	7 (46.7)	5 (33.3)	3 (20.0)	15 (100.0)	15
강북	4 (40.0)	6 (60.0)	0 (0.0)	10 (100.0)	12
도봉	5 (41.7)	6 (50.0)	1 (8.3)	12 (100.0)	11
노원	6 (42.9)	7 (50.0)	1 (7.1)	14 (100.0)	14
은평	6 (50.0)	5 (41.7)	1 (8.3)	12 (100.0)	12
서대문	9 (64.3)	4 (28.6)	1 (7.1)	14 (100.0)	14
마포	6 (42.9)	5 (35.7)	3 (21.4)	14 (100.0)	14
양천	5 (38.5)	7 (53.8)	1 (7.7)	13 (100.0)	13
강서	8 (57.1)	5 (35.7)	1 (7.1)	14 (100.0)	14
구로	7 (58.3)	4 (33.3)	1 (8.3)	12 (100.0)	12
금천	4 (30.8)	7 (53.8)	2 (15.4)	13 (100.0)	13
영등포	7 (50.5)	6 (42.9)	1 (7.1)	14 (100.0)	14
동작	6 (42.9)	8 (57.1)	0 (0.0)	14 (100.0)	15
관악	7 (46.7)	5 (33.3)	3 (20.0)	15 (100.0)	15
서초	7 (53.8)	6 (46.2)	0 (0.0)	13 (100.0)	13
강남	4 (44.4)	5 (55.6)	0 (0.0)	9 (100.0)	9
송파	4 (36.4)	5 (45.4)	2 (18.2)	11 (100.0)	11
강동	6 (42.9)	5 (35.7)	3 (21.4)	14 (100.0)	14
계	152 (46.6)	139 (42.6)	35 (10.7)	326 (100.0)	340

자료 : 자치구별 내부 자료(2008년 5월 22일 기준).

- 25개 자치구 보건위생과, 환경위생과, 위생청소과의 공무원 총 현원(326명)은 정원(340명)의 95.8%임. 이들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 비율은 46.6%, 보건·수의직 비율은 42.6%, 기능직은 10.7%임. 자치구당 보건·수의직의 평균인원수는 5.56명이며, 일반행정직은 평균 6.08명임.

- 종로구는 보건·수의직 비율이 9.1%로 가장 낮음. 중구와 서대문구도 보건·수의직 비율이 28.6%로 낮음. 광진구는 보건·수의직 비율이 63.3%(9명)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으며, 절대수로도 가장 많음.

1) 인력 대비 관리업체수

- 25개 자치구의 식품업체 유형별 분포와 숫자에 차이가 있음.
 -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212개)와 동대문구(105개), 강남구(91개)임.
 - 즉석판매·제조업가공업소가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1000개), 강남구(706개), 관악구(655개), 동대문구(647개)임.
 - 식품소분업이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268개), 중구(144개), 강남구(127개), 서초구(123개)임.
 - 유통전문판매업소가 많은 자치구는 서초구(337개), 송파구(250개), 강남구(241개)임.
 - 식품자동판매기가 많은 자치구는 중구(855개), 영등포구(792개), 종로구(750개)임.
 - 식품운반업소가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69개), 강서구(26개), 영등포구(13개)임
 - 용기포장류제조업소가 많은 자치구는 중구(36개), 성동구(17개)임.
 - 식품접객업소가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1만 2,406개), 송파구(7,779개), 영등포구(7,590개), 서초구(7,275개), 중구(7,239개)임.
 - 집단급식소가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289개), 노원구 (237개), 송파구(218개) , 강서구(210개)임.
 - 따라서 식품관련업체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1만 4,541개)이고, 송파구(1만 524개), 영등포구(9,461개), 서초구(9,243개), 중구(8,944개), 종로구(8,162개) 순임. 반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금천구(4,273개)이고, 성동구(4,355개), 도봉구(4,606개), 용산구(4,717개) 순임.
- 자치구별 식품관련 업체수를 고려한 인력 배치(인력수, 직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식품관련업체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보건위생과 인력이 9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업체 수는 1,616개나 됨. 보건위생과 직원의 약 절반이 공중위생업무를 담당한다고 보면, 1인당 평균 업체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됨. 공무원 1인당 평균 업체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용산구로, 1인당 315개 업체를 담당함. 용산구도 보건위생과가 공중위생 업무를 담당하므로 1인당 담당 업체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됨. 이처럼 강남구의 공무원 1인당 담당업체수는 용산구의 5.13배에 달함.

<표 3-22> 자치구별 식품관련 업체 수

(단위 : 개소)

자치구 식품 업소별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 제조 가공업	식품 소분업	식용 유 판매업	기타 식품 판매업	유통 전문 판매업	식품 자동 판매기	식품 운반업	식품 냉동 냉장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계
종로	22	196	25	2	9	42	750	0	0	1	6,959	156	8,162
중구	67	348	144	0	8	78	855	3	0	36	7,239	166	8,944
용산	23	216	24	2	8	32	395	3	0	3	3,888	123	4,717
성동	68	297	26	5	9	21	445	3	0	17	3,299	165	4,355
광진	53	455	22	3	18	25	427	0	0	1	4,480	126	5,610
동대문	105	647	70	5	22	74	597	10	1	4	5,570	136	7,241
중랑	58	484	50	1	18	13	578	4	0	2	4,469	127	5,804
성북	32	455	25	5	22	16	730	0	0	2	4,635	192	6,114
강북	44	452	39	4	16	14	551	4	0	0	4,222	129	5,475
도봉	39	511	59	2	19	16	541	1	0	1	3,265	152	4,606
노원	44	556	47	6	37	12	705	9	0	0	4,166	237	5,819
은평	42	520	40	2	19	27	527	3	0	2	4,090	141	5,413
서대문	65	359	31	3	16	27	700	1	1	1	4,907	144	6,255
마포	63	395	46	1	20	110	515	7	0	1	6,143	132	7,433
양천	53	572	79	2	28	80	488	9	1	1	3,861	173	5,347
강서	83	571	104	2	25	76	554	26	2	5	5,882	210	7,540
구로	57	432	35	3	18	22	709	2	0	5	4,927	180	6,390
금천	60	264	15	0	6	23	295	6	2	6	3,420	176	4,273
영등포	80	578	72	2	25	112	792	13	1	4	7,590	192	9,461
동작	50	467	26	3	18	30	683	2	0	0	4,034	158	5,471
관악	44	655	46	9	25	46	693	1	0	2	5,826	172	7,519
서초	38	526	123	2	37	337	706	9	1	0	7,275	189	9,243
강남	91	706	127	6	29	241	636	10	0	0	12,406	289	14,541
송파	212	1,000	268	1	33	250	690	69	1	3	7,779	218	10,524
강동	78	576	56	9	20	32	671	3	0	0	5,501	174	7,120
계	1,571	12,238	1,599	80	505	1,756	15,233	198	10	97	135,833	4,257	173,377

자료 : 자치구별 내부 자료(2007년 말 기준).

<표 3-23> 자치구별 인력 대비 식품관련 업체 수

(단위 : 개소, 명, %)

자치구	식품관련 업체 수 (A)	식품안전 공무원 수 (B)	공무원 1인당 평균 업체 수 (A/B*100)
종로	8,162	11	742.0
중구	8,944	14	638.9
용산	4,717	15	314.5
성동	4,355	12	362.9
광진	5,610	14	400.7
동대문	7,241	13	557.0
중랑	5,804	14	414.6
성북	6,114	15	407.6
강북	5,475	10	547.5
도봉	4,606	12	383.8
노원	5,819	14	415.6
은평	5,413	12	451.1
서대문	6,255	14	446.8
마포	7,433	14	530.9
양천	5,347	13	411.3
강서	7,540	14	538.6
구로	6,390	12	532.5
금천	4,273	13	328.7
영등포	9,461	14	675.8
동작	5,471	14	390.8
관악	7,519	15	501.3
서초	9,243	13	711.0
강남	14,541	9	1615.7
송파	10,524	11	956.7
강동	7,120	14	508.6
계	173,377	326	531.8

자료 : 서울시 자치구별 내부 자료(2007년 말 기준).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99명)이고, 노원구(81명), 관악구(80명), 강남구(70명), 강북구(70명)의 순임. 가장 적은 자치구는 종로구(28명)이고, 서대문구(28명), 중구(30명), 성동구(31명), 중랑구(37명), 은평구(37명)의 순임. 25개 자치구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총 1,273명이며, 자치구당 평균인원은 51명임.

- 상주인구 대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구와 용산구로 인구 천명당 0.22명임. 가장 적은 자치구는 은평구와 서대문구로 인구 천명당 0.08명임. 인구 천명당 소비자식품감시원수가 가장 많은 구는 가장 적은 구의 2.75배가 됨.

<표 3-24> 자치구별 인구 대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수

(단위 : 명)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수 (A)	상주 인구 수 (B)	인구 천명당 평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수 (A/B*1,000)
종로	28	173,843	0.16
중구	30	134,420	0.22
용산	50	232,035	0.22
성동	31	334,437	0.09
광진	46	374,851	0.12
동대문	40	376,431	0.11
종량	37	427,226	0.09
성북	48	469,973	0.10
강북	70	350,823	0.20
도봉	48	375,975	0.13
노원	81	616,753	0.13
은평	37	464,580	0.08
서대문	28	348,575	0.08
마포	42	400,392	0.10
양천	52	504,000	0.10
강서	50	566,495	0.09
구로	64	420,817	0.15
금천	50	249,286	0.20
영등포	46	408,186	0.11
동작	47	414,978	0.11
관악	80	535,571	0.15
서초	53	412,898	0.13
강남	70	564,658	0.12
송파	99	621,506	0.16
강동	46	454,546	0.10
계	1,273	10,233,255	0.12

자료 : 서울시 자치구별 내부 자료(2007년 말 기준).

3. 식품진흥기금

- 2007년 기준 식품진흥기금이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약 34억원)이고, 서초구(약 28억원), 중구(약 21억원), 종로구(약 19억원), 강서구(약 15억원), 영등포구(약 15억원)의 순임. 반면에 적은 자치구는 마포구(약 1억 4천만원), 강북구(약 3억 3천만원)임.
- 2007년 기준 식품진흥기금 집행액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약 11억 5천만원)이고, 종로구(약 4억 9천만원), 영등포구(약 4억 9천만원), 성북구(약 3억 3천만원), 서대문구(약 3억 2천만원)의 순임. 반면에 가장 적은 자치구는 마포구(약 6천 9백만원)이고, 용산구(약 7천만원), 광진구(약 9천 8백만원), 중구(약 9천 9백만원) 순임.

<표 3-25>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 현황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천원)		(B/A)*100 (%)
	총액(A)	집행액(B)	
종로	1,933,953	489,890	25.3
중구	2,114,880	98,994	4.7
용산	768,578	69,806	9.1
성동	520,925	199,909	38.4
광진	1,421,003	98,249	6.9
동대문	1,115,593	109,100	9.8
중랑	567,137	235,007	41.4
성북	1,024,961	328,645	32.1
강북	336,430	150,193	44.6
도봉	843,500	216,240	25.6
노원	735,046	194,731	26.5
은평	752,289	140,833	18.7
서대문	987,467	322,286	32.6
마포	142,322	68,907	48.4
양천	755,320	223,508	29.6
강서	1,535,015	185,475	12.1
구로	598,165	184,796	30.9
금천	962,765	115,419	12.0
영등포	1,533,204	487,308	31.8
동작	830,966	116,012	14.0
관악	807,941	109,902	13.6
서초	2,754,290	173,380	6.3
강남	3,406,330	1,154,194	33.9
송파	1,098,230	154,823	14.1
강동	1,365,898	157,286	11.5
계	28,912,208	5,784,893	20.0

자료 : 서울시 구청별 내부 자료(2007년 말 기준).

- 2007년 기준 식품진흥기금 총액대비 집행액 비율이 40%를 넘는 자치구는 3개 구로 마포구(48.4%)가 가장 높고, 강북구(44.6%), 중랑구(41.4%)가 그다음임. 집행비율이 10%가 안 되는 자치구는 5개 구로 중구(4.7%), 서초구(6.3%), 광진구(6.9%), 용산구(9.1%), 동대문구(9.8%)의 순임.

4. 요점 및 정책 시사점

1) 인력 배치의 합리적 기준 부재

- 자치구별 식품안전 업무 담당 인력배치가 합리적 기준으로 배치되지 않고 있음. 인력배치 시 자치구별로 관리해야 하는 식품관련업소 수, 유형별 업체 수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관리업소 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1만 4,541개)의 보건위생과 인력은 9명이며, 관리업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용산구(4,717개) 보건위생과와 성북구(6,114개) 건강정책과의 인력은 각각 15명임.
- 25개 자치구 식품안전 관련부서의 직군별 인력은 일반행정직이 46.6%, 보건·수의직 등 전문직군이 42.6%임. 자치구별로 일반행정직과 보건·수의직 등 전문직군 인력에 차이가 있음. 종로구는 보건·수의직 등 전문직군 인력이 1명인 반면, 광진구는 9명으로 격차가 큼. 이는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일반행정직과 보건·수의직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임.

2) 식품안전 전담 인력의 부족

-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따라 인력산출을 하는 기준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치구의 식품안전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자치구 보건위생과(환경위생과, 위생청소과)의 평균 인력은 13명이나, 식품위생업무와 공중위생업무를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치구의 식품안전 담당인력은 평균 6.5명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도쿄도 치요타구의 경우, 총 1만 664개의 식품관련업소가 있는데, 정규직 전문인력(의사,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식품위생감시원이 15명이 있음. 치요타구는 식품위생감시원 수가 부족하여, 이들의 업무가 허가업무, 민원, 상담 등으로 국한되고, 직접 감시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의 인원 확충을 고려하고 있음.
- 자치구의 식품안전 관련 업무는 관내 식품관련업체의 영업허가 및 관리, 유통식품 수거와

검사 의뢰,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관리감독을 포함해 약 13가지나 됨. 특히 식품관련업체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 등의 업무는 업무특성상 절대 시간이 필요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최종 행정처분권한은 공무원이 해야 함. 3개 자치구의 보건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 의하면 식품안전 업무의 범위가 식품관련업체 영업허가 및 관리, 관내 통계자료 작성과 보고, 그리고 서울시가 배당한 식품수거업무와 합동단속반 참여 등에 국한되고 있음.

3)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전반적 미흡

- 자치구의 식품안전 전담인력 부족으로 자치구 식품안전 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위생행정평가 결과(2006년, 2007년)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음. 그리고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부진하고 수거검사와 위반업소 처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자치구 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은 5개 자치구는 특히 위생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점검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4장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여건과 관리 실태

제1절 식품생산과 소비현황

제2절 식품안전관리실태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실태 평가

제4절 요점 및 정책 시사점

제4장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여건과 관리실태

제1절 식품 생산과 소비 현황

1. 식품생산

1) 농작물 재배 및 사육

- 서울시가 차지하는 농작물 재배 비중은 전국의 1%를 넘지 않음. 서울시 농가는 전국 농가의 0.24%이며, 전국 대비 서울시 경지면적은 0.09%, 식량작물생산량은 0.05%, 채소류생산량은 0.25%에 불과함.

<표 4-1> 서울시 농작물 재배 현황(2006년)

구분	농가(호)	경지면적(ha)	식량작물생산량(톤)	채소류생산량(톤)
서울(B)	2,934	1,640	3,240	23,623
전국(A)	1,245,083	1,800,470	6,002,367	9,445,481
B/A*100(%)	0.24	0.09	0.05	0.25

자료 : 농림부(2007), 「농림통계연보」.

주 : 경지면적은 논과 밭을 더한 수치임

- 서울시가 차지하는 가축사육 비중도 전국의 1%가 안 됨. 한육우와 젓소의 사육수는 전국 대비 각각 0.02%, 0.03%에 불과함.

<표 4-2> 서울시 가축 사육두수 (2006년)

(단위 : 마리)

구분	한육우	젓소	돼지	닭
서울(B)	333	124	-	-
전국(A)	2,019,516	464,056	9,382,039	119,180,640
B/A*100 (%)	0.02	0.03	-	-

자료 : 농림부(2007), 「농림통계연보」.

2) 식품제조 및 가공

- 서울시에 있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수는 1,655개로 전국 대비 7.3%임. 즉석판매·가공업소 수는 12,776개로 전국 대비 16.3%이며, 식품첨가물제조업 수는 14개소로 전국 대비 2.7%, 식품소분업소 수는 1,716개로 전국 대비 15.1%를 차지함.
- 서울시의 가공식품 생산 비중도 작물재배 및 사육과 같은 1차 식품생산에 비해서는 높으나 전국 대비 비중은 낮은 편임.

<표 4-3> 서울시 식품제조업 현황(2006년)

(단위 : 개소)

구 분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소분업
서울(B)	1,655	12,776	14	1,716
전국(A)	22,586	78,632	518	11,393
B/A*100 (%)	7.33	16.25	2.70	15.06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 : //www.kfda.go.kr](http://www.kfda.go.kr)).

3) 식품산업 매출액

- 2006년 서울시 식품산업 총 매출액은 전국의 3.83%에 불과함.

<표 4-4> 서울시 식품산업 매출 현황 (2005년)

(단위 : 천원)

구분	식품	식품첨가물	가구·용기·포장	계
서울(B)	1,074,872,368	150,924,646	26,551,564	1,252,348,578
전국(A)	28,607,872,914	887,557,864	3,163,701,868	32,659,132,646
B/A*100 (%)	3.76	17.00	0.84	3.83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 식품소비

1) 식품 서비스업

- 서울시의 식품접객업소 수는 13만 7,588개소로 전국의 19.4%임. 집단급식소 수는 3,956개소로 전국의 13.8%, 식품판매업은 2만 879개소로 전국의 17.9%임. 그리고 수입식품판매업소 수는 전국의 47.4%에 이르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전국의 29.4%를 차지함.

<표 4-5> 서울시 식품 서비스업 (2006년)

(단위 : 개소)

구 분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수입식품 판매업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서울(B)	137,588	3,956	20,879	9,283	13,800
전국(A)	711,006	28,632	116,703	19,600	46,911
B/A*100 (%)	19.35	13.82	17.89	47.36	29.42

자료 : 서울시(2007), 「서울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 육류 소비 및 도축

- 서울시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은 전국의 21.4%를 차지함.

<표 4-6> 서울시 육류 소비량 (2006년)

(단위 : 톤)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육류총량
서울(B)	70,878	187,561	89,374	347,813
전국(A)	330,554	874,704	416,849	1,622,107
B/A*100 (%)	21.44	21.44	21.44	21.4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주 : 1인당 소비량은 쇠고기는 6,844g, 돼지고기는 18,111g 닭고기는 8,630g이며, 서울의 축산물소비량은 2006년 기준 서울시 인구 10,356,202명에 1인당 소비량을 곱하여 계산한 수치임

- 서울시에서 도축되는 소는 전국의 14.1%, 돼지는 2.4%를 차지함.

<표 4-7> 서울시 도축 현황 (2006년)

(단위 : 마리)

구 분	소	돼지
서울(B)	89,175	309,619
전국(A)	630,458	13,003,286
B/A*100 (%)	14.14	2.3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3)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량

- 서울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청과물은 부산시보다 4.5배가 많으며, 수산물은 인천시보다 7.1배가 많음.

<표 4-8> 서울시 및 6대 광역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량(2005년)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청 과		수 산	
	유통량	금액	유통량	금액
서울	2,439,364	2,713,125	219,255	702,615
부산	541,156	534,292	-	-
대구	394,418	331,264	14,816	27,296
인천	405,606	386,608	23,049	98,588
광주	402,321	439,195	6,955	23,494
대전	314,870	304,414	8,671	15,260
울산	90,511	88,980	7,027	21,624

자료 : 각 도시별 통계연보(2006).

- 서울시는 식품 생산지 기능보다는 식품의 대소비지 및 유통지 기능을 하고 있음.

4) 외식 및 학교급식

- 2006년 서울시 가구의 식료품비 중에서 외식비 지출액은 47.7%로 식료품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서울시 가구의 외식비 지출액은 전국 가구보다 한 달 평균 18.3천원이 많으며, 식료품 대비 외식비 비중도 전국 가구보다 높음.

<표 4-9> 가구 월평균 식료품 지출액(2006년)

(단위 : 천원)

구 분	주 식		부 식		기호식품		외 식		합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서울	41.7	7.5	153.9	27.6	95.9	17.2	266.2	47.7	557.7	100.0
전국	42.6	7.8	157.1	28.9	96.3	17.7	247.9	45.6	543.9	100.0

자료 : 통계청(2007), 「한국통계연감」.

- 2006년 서울시 학생의 95.2%는 학교급식을 하고 있음.

<표 4-10> 서울시 학교급식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학교급식 실시인원(A)	전체 학생 수(B)	비율(A/B*100)
2000	1,099,888	1,588,116	69.3
2003	1,331,847	1,484,588	89.7
2006	1,345,704	1,413,452	95.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연보」.

5) 식품 수입

-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은 건수와 물량에서 200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 2006년 식품 수입 건수는 2000년보다 1.8배, 수입물량은 1.1배 각각 많아짐.
- 건강기능식품 수입건수도 2004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2006년 수입건수는 2004년보다 1.2배 증가하였으나, 중량은 2005년 증가하다가 2006년에 약간 감소함.

<표 4-11> 수입식품 건수 및 물량

(단위 : 건, 톤)

구 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가공식품	건수	70,474	110,816	110,967	126,420	141,474
	물량	2,640,189	3,118,087	3,432,414	3,554,102	3,706,986
식품 첨가물	건수	21,632	25,767	27,613	28,227	30,038
	물량	109,949	140,400	162,956	167,172	172,740
가구·용기 포장	건수	20,249	20,056	20,256	20,790	24,161
	물량	161,482	192,210	169,722	178,299	188,785
농·임산물	건수	21,406	28,660	32,316	33,051	35,643
	물량	7,438,914	7,668,240	7,677,900	7,348,692	7,147,745
건강기능 식품	건수	-	-	5,816	7,006	7,223
	물량	-	-	11,385	13,173	11,254
총 계	건수	133,761	185,299	196,968	215,494	238,539
	물량	10,350,534	11,118,937	11,454,377	11,261,438	11,227,51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00, 2003, 2004, 2005, 2006),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2절 식품안전관리실태

1.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사업

- 복지국 식품안전과의 ‘식품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2008. 4)’에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과제와 사업으로 감시업무, 식품안전 사각지대 안전대책, 식품안전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 감시활동, 식품안전 관련자 역량강화, 식품안전 홍보 등의 6개를 제시하고 있음.

1) 식품 감시업무

- 식품감시는 기획감시와 상시감시로 이루어짐. 기획감시는 계절별 성수식품, 규격 및 기준 미설정 식품, 외국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국내 유통식품, 시민신고 식품 등이 대상이 됨. 월 2건 이상 기획감시 활동을 함.
- 상시감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식품군별로 중점감시품목을 정해 연중 감시를 하는 것임. 그 대상지역도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에서 채래시장, 소매시장, 노점상 등으로 확대할 것임.
- 2008년 식품 수거검사 목표는 총 4만 300건이며, 기관별로 수거검사 목표는 <표 4-12>와 같음.

<표 4-12> 2008년 기관별 수거검사 목표

구분	수거 목표	가공 식품	농·수·축산물 (정밀검사)					특별관리 대상식품	수입 식품	건강기능 식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한약재	소계			
본청	2,800	1,700	100	-	1,000	-	1,100	1,450	150	40
보건환경 연구원	6,100	6,100	-	-	-	-	-	4,000	490	-
강남·강북 검사소	15,600	-	11,200	4,000	-	400	15,600	200	1,900	-
자치구	15,800	14,800	500	-	500	-	1,000	8,350	2,960	-
소계	40,300	22,600	11,800	4,000	1,500	400	17,700	14,000	5,500	40
농수산물공사 (간이)	145,000	-	145,000	-	-	-	145,000	-	-	-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주 : 특별관리대상식품(시민다소비식품), 수입식품 수거검사 목표치는 가공식품 및 농·수·축산물 목표치에 포함된 수치임.

2) 식품안전사각지대 대책

○ 학교 주변 식품안전 사업

- 초등학교 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실태 전수조사와 전담 모니터 요원 지정 및 감시활동(572명)을 실시함. 식품취급업소와 서울시 공동 부담으로 업소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함. 초등학교 집단급식 식료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출장과 어린이 및 학부모, 식품업소,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함. 2008년 소요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 5,25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 향후 건강증진담당관의 아토피 없는 서울프로젝트와 식약청의 어린이 먹거리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

○ 재래시장 식품위생환경 향상사업

- 서울시에는 303개의 재래시장이 있음. 재래시장 내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판매업체가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업소당 백만원을 지원함. 2008년에는 4개 구의 4개 시장(시장당 50개 업소)이 그 지원 대상이며,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에서 2억 600만원이 책정됨.

○ 길거리 음식 위생 향상

- 길거리 음식 판매업소는 관련법상 인·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역임. 노점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 길거리 음식에 대한 식품위생검사, 취급자 위생기준, 건강검진 의무를 포함시킴.

- 포장마차 등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식품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언론 및 식품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함. 또한 길거리 음식위생취급 매뉴얼 제작과 배포, 종사자 교육을 추진함.

3) 식품안전 상생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와 생산자 네트워크

- 다른 도가 생산하는 품질인증 농수축산물의 식품안전 협력 강화,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인 양해각서 체결, 자치구와 농어촌 간의 자매결연 지원사업을 함.

○ 식품제조업체 식품안전 멘토링 실시

- 식품제조업체에 전문가를 멘토로 결연하여 기술 지원사업을 하는 것임. 대상제조업체는

20개소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등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식품안전자문위원회, 식품안전감시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소비자 감시원을 확대함.

4) 시민참여 감시활동 사업

- 시민의 식품안전 검사 청구제
 - 시민들이 연대하여 식품 및 제조업체 안전성 검사를 청구하면 검사를 실시하고 통보해 줌.
- 시민참여형 식품안전 감시 활성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425명에서 500명으로, 학교식품안전지킴이는 533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학교식품안전지킴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함.
- 식품안전 뉴스레터 발행·배포
 - 식품정보 및 식품안전 감시결과를 뉴스레터(홈페이지 게시, 인터넷 메일, 레터 발송)로 만들어 배포함.
- 부정불량식품 신고창구 다원화 및 포상금 확대 지급
 - 신고창구를 120, 인터넷, 1399로 다원화하고 관리는 일원화함.
 -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함.

5) 식품안전 의식함양 및 역량강화 사업

- 사업체를 찾아가는 위생교육 실시
 - 식육·부산물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축산물 등급제 등의 교육을 실시함.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 시와 자치구의 식품위생감시원 2,0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부정불량 식품의 식별, 신고요령, 감시활동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식품관련 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 식약청 지정 HACCP 전문교육기관에서 시 및 자치구 식품안전담당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연 2회(1박 2일)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함.
- 시민 대상 식품안전 교육
 - FSI홈페이지를 통한 식품안전 인터넷 교실 운영,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식품안전 교육, 식생활정보센터, 자치구 보건소 아토피 교실 등을 교육, 언론매체를 통한 식품안전 정보제공을 함.

<표 4-13> 서울시 홈페이지의 식품안전사이트 구성

구분	구성내용		
부적합식품	•알립니다.	• 조치현황	• 검색
식품안전자료실	• 식품안전교실	• 식중독자료실	
참여마당	• 신고센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대학생식품위생감시원
알림마당	• 식약청	• 관련기관 안내	• 공지사항
사이트 안내	• 사이트 소개	• 사이트 지도	

자료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 : //www.fsi.seoul.go.kr](http://www.fsi.seoul.go.kr)).

6) 식품안전 홍보사업

- 식품안전 사각지대 관리대책의 홍보,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단속 결과의 홍보를 강화함. 소비자, 생산자·사업자, 전문가, 중앙정부와 여타 지방자치단체, 관광객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정보제공을 함.

7) 자치구 위생행정 평가

- 서울시는 2003년부터 자치구의 위생행정 분야를 평가했으며, 2008년에는 자치구 위생행정 평가사업에서 우수한 자치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사업비를 부여함. 최우수구에는 3억원, 우수구(2개구)에는 2억원씩, 장려구(5개구)에는 1억 5천만원씩을 지급함.
- 자치구 위생행정 평가체계는 10개 평가분야, 41개 평가영역, 90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표 4-14> 참조).

<표 4-14> 2007년 자치구 위생행정업무 평가영역

분 야	평가영역(41개 영역)	
1. 위생인프라	① 인력 ③ 재정 ⑤ 장비보유 ⑦ 위생행정민원처리 ⑨ 행정소송	② 조직 ④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⑥ 업무충실도 ⑧ 식품위생전문교육실시 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2. 식품진흥기금 운용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③ 식품진흥기금 용자 ⑤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② 식품진흥기금 조성 ④ 식품진흥기금 효율적 운영
3. 식중독 예방	① 식중독 발생 ③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⑤ 예방홍보사업	② 예방지원사업 ④ 학교건강지킴이 활동
4. 위생정보관리	① 소고기원산지표시 점검률 ③ 식생활정보센터운영	② 위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효율화
5.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① 식품접객업소위생점검(주간단속) ③ 좋은식단체 운영	② 모범음식점 운영 ④ 음식점 화장실 개선
6. 식품안전관리	①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③ 유통식품 점검	② 식품안전검사
7. 식품위생감시 활동	①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야간단속) ③ 합동단속 참여율	② 허위과대광고관리
8. 공중위생업소 및 시설관리	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도 운영 ③ 공중이용시설측정사업 추진	② 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 ④ 수거검사 실시
9. 위생분야 공무원 청렴도	① 청렴도	② 위생분야공무원 청렴도교육
10. 특수사업	① 특수사업	

자료 : 서울시 내부 자료

2. 자치구 식품안전업무와 관리실태

1) 기본 업무

○ 식품위생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자치구에서 담당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련 기본업무는 다음 1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음.

- i)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
- ii)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평가, 관리) 운영
- iii) 지역 내 유통 가공식품 수거 및 검사의뢰
- iv) 지역 내 상습·고의위반업소 특별관리를 위한 소관업소 지정
- v) 지역 내 식품유통판매업소 위생지도점검
- vi) 지방지, 지역생활정보지, 지역케이블 방송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 vii)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viii)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사업
- ix) 지역 내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지도점검
- x) 식품회수·폐기 조치
- xi)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통계관리와 식약청 보고, HACCP 적용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징수
- xii)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집중관리, 식중독 발생 시 보건소장은 즉시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에 해당사실을 입력·보고하고, 자치구, 시장, 식약청,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하며 식중독상황처리반을 설치
- xiii) 원산지표시제 감시·감독

2) 자치구 위생행정 평가결과

- 서울시는 2006년 자치구 위생행정 평가사업을 통해 자치구 위생행정의 문제점 세 가지를 제기함.
 - 첫째, 주간에 실시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추진실적이 대체로 부진함.
 - 둘째,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식품조리 용구 등의 수거, 식중독균 간이키트검사, 대신민 홍보실적이 부진함.
 - 셋째, 일상적인 위생업무 외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가 많지 않음.
- 2007년 자치구 위생행정평가사업을 통해 나타난 자치구 위생행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25개 자치구의 위생행정평가 종합점수는 평균 56점으로 자치구의 위생업무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추진된다고 평가됨.
 - 25개 자치구의 위생인프라 영역 평점은 50점으로 자치구의 위생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식품진흥기금 운영 영역에 있어 과징금 징수율 등의 기금 조성노력이나, 예치율 등의 기금관리는 비교적 우수하나, 기금 용자 및 홍보, 기금사업비의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5개 자치구의 식중독 예방관리 평점은 58점으로, 식중독환자발생은 감소(2006년 61건, 2,559명에서 2007년 48건, 505명)하였으나,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중점 점검과 식중독 예방홍보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5개 자치구의 식품안전 관리영역 평점은 55점으로 실질적인 수거검사와 위반업소 처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5개 구의 경우, 특히 위생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식품 접촉업소 지도 점검실적이 미흡하며, 부정불량식품 점검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실태 평가

- 식품안전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와 식품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자 함. 서울시민 설문조사는 서울시 마케팅담당관에서 2008년 2월에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음. 식품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조사방법은 제1장 제2절 연구방법 참고).

1. 서울시민의 식품안전 신뢰도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식품안전 및 정책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음.

1)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

- 식품안전에 대해 평소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가 37.6%, ‘대체로 관심이 있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8.5%임. 응답자의 86.1%가 평소 식품안전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성은 92.3%가 ‘식품안전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 79.3%에 비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4-15>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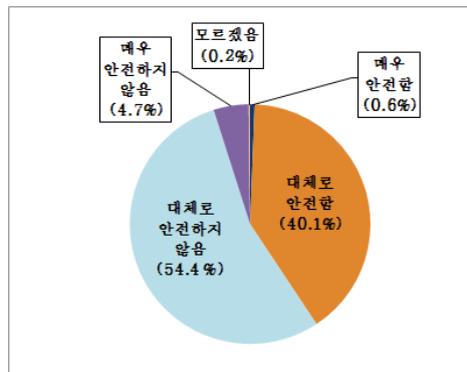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계
매우 관심이 있음	29.6	44.9	37.6
대체로 관심이 있음	49.7	47.4	48.5
별로 관심이 없음	20.1	7.6	13.6
전혀 관심이 없음	0.6	0.0	0.3
계 (명(%))	477 (100.0)	523 (100.0)	1,000 (100.0)

2)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 신뢰도

(1) 유통식품의 안전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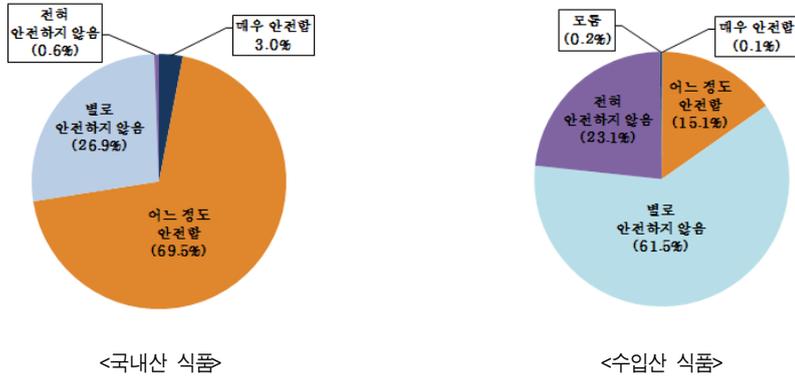
- 현재 식품들이 안전하게 유통, 관리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59.1%는 ‘유통 및 관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했으며, 40.7%는 ‘안전하다’고 대답함. 이처럼 서울시민의 식품안전 관심수준은 높으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 즉 안심수준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1> 서울시민의 유통식품 신뢰도

(2) 식품유형별 안전 신뢰도

- 수입산 식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5%가 ‘별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23.1%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응답자의 84.6%가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5%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자는 3%임. 즉 응답자의 72.5%가 국내산 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산 식품에 대해 27.5%의 응답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4-2> 식품유형별 안전 신뢰도

3) 식품관련 분야별 종사자 신뢰도

-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서울시민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식품생산·가공·제조업 종사자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3.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6%로, 응답자의 68.8%가 식품생산·가공·제조업 종사자를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식품 유통·관리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4%가 별로 신뢰하지 않으며, 6.1%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대담해, 응답자의 71.5%가 식품유통·관리업 종사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판매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1%가 신뢰를 하지 않으며, 44.7%는 신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관련 정부기관 및 연구단체 대해서는 57.5%가 신뢰하고, 42.0%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함.

<표 4-16> 식품관련 분야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구 분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계(명(%))
식품생산·가공·제조업 종사자	0.6	30.3	63.2	5.6	0.3	1,000 (100.0)
식품유통·관리업 종사자	0.2	27.9	65.4	6.1	0.4	1,000 (100.0)
식품판매업 종사자	1.1	43.6	52.5	2.6	0.2	1,000 (100.0)
식품관련 정부기관 연구단체	2.7	54.8	39.7	2.3	0.5	1,000 (100.0)

4) 서울시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도

- 서울시의 식품안전정책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60.8%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며, 5.3%는 매우 낮다고 대답함. 즉 응답자의 66.1%가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며,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0%에 불과함.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중졸 이하 학력자는 56.0%, 고졸 학력자는 64.2%, 대학 이상 학력자는 68.7%가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30·40대 응답자가 20대와 50대 이상에 비해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음. 20대는 64.8%, 30대는 74.0%, 40대는 71.2%가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수준이 낮다고 보고 있음. 반면 50대 이상은 58.3%가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여, 20대, 30대, 4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7> 학력 및 연령별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신뢰도

(단위 : %)

구 분		매우 높다	높다	낮다	매우 낮다	모름	계(명(%))
학 력	중학교 이하	0.0	38.7	53.8	2.2	5.4	93(100.0)
	고등학교 졸업	0.4	34.4	57.7	6.5	1.1	279(100.0)
	대학교 이상	0.2	29.5	63.4	5.3	1.6	623(100.0)
	응답 거절	0.0	40.0	40.0	0.0	20.0	5(100.0)
연 령	20대	0.4	33.0	61.2	3.6	1.8	224(100.0)
	30대	0.0	25.6	67.3	6.7	0.4	223(100.0)
	40대	0.0	27.9	65.8	5.4	0.9	222(100.0)
	50대 이상	0.3	37.8	52.9	5.4	3.6	331(100.0)
전 체		0.2	31.8	60.8	5.3	1.9	1,000(100.0)

○ 서울시 식품안전 발표에 대한 신뢰도

- 식품안전에 대한 서울시 발표에 대해 응답자의 64.1%는 신뢰하지만, 35.7%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서울시 발표에 대해 신뢰도가 낮음. 남성 32.7%, 여성 38.4%가 서울시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의 41.2%, 40대의 43.7%가 서울시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 20대의 33.9%, 50대 이상의 27.8%에 비해 신뢰 수준이 낮음.
-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식품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

음.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29.7%, 200~399만원인 응답자의 34.9%, 4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40.1%가 식품안전에 대한 서울시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8>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서울시 식품안전 발표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구 분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않음	전혀 신뢰 않음	모름	계(명(%))
성 별	남성	2.3	64.8	29.8	2.9	0.2	477 (100.0)
	여성	0.4	61.0	36.7	1.7	0.2	523 (100.0)
연 령 별	20대	0.9	65.2	32.6	1.3	0.0	224 (100.0)
	30대	0.4	58.3	37.2	4.0	0.0	223 (100.0)
	40대	0.5	55.4	42.3	1.4	0.5	222 (100.0)
	50대 이상	2.7	69.2	25.4	2.4	0.3	331 (100.0)
소 득 수 준 별	200만원 미만	3.0	66.8	27.2	2.5	0.5	202 (100.0)
	200~399만원	1.3	63.8	34.1	0.8	0.0	478 (100.0)
	400만원 이상	0.3	59.3	36.1	4.0	0.3	302 (100.0)
전 체		1.3	62.8	33.4	2.3	0.2	1,000 (100.0)

2. 전문가 및 공무원의 평가

- 식품안전 확보와 관련해 제시한 19개 업무분야 중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4점 이상)고 평가를 받은 업무는 하나도 없음.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와 ‘유통식품의 수거 및 위해검사’의 경우에도 각각 3.03점, 3.01점을 받아, 보통수준에 그침. 나머지 17개 업무분야는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음. 우리사회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전문가와 공무원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1) 식품안전 기준 설정 및 연구조사 분야

- 식품안전을 위한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 ‘식품안전 선행조사와 평가’, ‘국내·외 식품위해정보 수집과 제공’ 등의 3개 분야 모두, 보통(3점)이하의 평점을 받아, 우리사회의 대응수준이 현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표 4-20> 참조).
-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
 - 우리 사회가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에 대해 현재 충분히 대처(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9.7%, 미흡(매우 미흡+대체로 미흡)하다는 응답자가 39.4%로 미흡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충분하다는 응답자보다 2배 정도 더 많음.

-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 기준설정'은 평점 2.75점으로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음. 이 분야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평균 평점은 2.76점,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2.75점, 전문직 공무원은 2.73점으로 응답자 유형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표 4-20> 참조).

<표 4-19> 식품안전 기준 설정 및 연구조사 분야 대응수준 평가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미흡	대체로 미흡	보통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계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	16(7.7)	66(31.7)	85(40.9)	37(17.8)	4(1.9)	208(100.0)
식품안전에 대한 선행조사와 평가	16(7.7)	103(49.5)	73(35.1)	16(7.7)	0(0.0)	208(100.0)
국내·외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	27(13.0)	76(36.5)	85(40.9)	18(8.7)	2(1.0)	208(100.0)

<표 4-20>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 기준 설정 및 연구조사 분야 대응수준 평가

(단위 : 점)

구 분	민간 전문가	일반 공무원	전문 공무원	전체	F값
과학적, 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	2.76	2.75	2.73	2.75	0.036
식품 안전에 대한 선행조사와 평가	2.29	2.65	2.38	2.43	4.081 *
국내·외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	2.56	2.43	2.45	2.48	0.418

주 : '매우 미흡' 1점, '대체로 미흡' 2점, '보통' 3점, '대체로 충분' 4점 '매우 충분' 5점임.

* p<0.1, ** p<0.05, *** p<0.01임.

○ 식품안전 선행조사와 평가

- 우리 사회가 '식품안전에 대한 선행조사와 평가'에 대해 현재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7%에 불과함. 반면 미흡(매우 미흡+대체로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57.2%에 이 름. 이 분야에 대한 평균 평점은 2.43점으로 우리 사회의 대응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 사됨.

- '식품안전 선행조사와 평가'에 대해 민간 전문가는 평균 평점 2.29점, 전문직 공무원은 2.38점,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2.65점을 부여함. 민간전문가와 전문직 공무원이 '식품안전 선행조사와 평가'에 대해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를 하고 있음.

○ 국내·외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

- '국내·외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에 대해 충분히 대처(대체로 충분+매우 충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9.7%, 미흡하다(매우 미흡+대체로 미흡)는 응답자가 49.5%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평균 평점은 보통(3점)이하인 2.48점으로 우리 사회의 '국내·외 식품위해정보 수집과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2) 식품안전 선진관리 수단 적용 및 지원

○ '식품안전 사전관리수단 적용과 생산자 지원' 분야 3개 항목 모두, 2.5점 이하의 평점을 받아, 대응수준이 미흡(2점)하다는 평가를 받았음(<표 4-22> 참조).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9.2%에 그친 반면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54.9%로 과반수를 넘고 있음.

<표 4-21> 식품안전 선진관리 수단 적용 및 지원 대응수준 평가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미흡	대체로 미흡	보통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계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	23 (11.1)	91 (43.8)	75 (36.1)	18 (8.7)	1 (0.5)	208 (100.0)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	31 (14.9)	97 (46.6)	64 (30.8)	16 (7.7)	0 (0.0)	208 (100.0)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36 (17.3)	92 (44.2)	67 (32.2)	13 (6.3)	0 (0.0)	208 (100.0)

<표 4-22> 응답자 유형별 선진관리 수단 적용 및 지원 대응수준 평가

(단위 : 점)

구 분	민간 전문가	일반 공무원	전문 공무원	전체	F값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	2.47	2.52	2.35	2.44	0.789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	2.21	2.43	2.31	2.31	1.233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1	2.40	2.24	2.27	1.021

주 : '매우 미흡' 1점, '대체로 미흡' 2점, '보통' 3점, '대체로 충분' 4점 '매우 충분' 5점임.

* p<0.1, ** p<0.05, *** p<0.01임.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 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 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만이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미흡하다는 평가를 한 응답자는 61.5%로 과반수를 넘음.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3%인 반면,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61.5%임. 대응수준이 가장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3)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

-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과 관련된 9개 업무 중에서 보통(3점) 평점을 받은 업무는 '유통식품의 수거 및 위해검사'(3.01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3.03점)의 2개 분야에 불과함.
- 나머지 7개 분야는 보통(3점) 이하의 평점을 받음. 특히 '음식점 원산지표시 감시와 계도' 분야의 대응수준이 가장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표 4-24> 참조).
-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의 위생평가 및 지도관리
 -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의 위생평가 및 지도관리'를 충분히(매우 충분+대체로 충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5.9%, 미흡하다(매우 미흡+대체로 미흡)는 응답자가 31.8%로 나타나, 미흡하다는 응답자가 충분하다는 응답자에 비해 약 2배가 많음. 이 업무의 평균 평점은 보통(3점)보다 낮은 2.79점임.
- 유통식품의 수거 및 위해검사
 - 응답자의 26.4%가 '유통식품의 수거 및 위해검사'에 대해 충분(매우 충분+대체로 충분)하다고 평가하였고, 미흡(매우 미흡+대체로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26.5%로 나타나,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응답자와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응답자 비율이 거의 같은 수준임. 이 분야의 평균 평점은 3.01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음.
 -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은 '유통식품의 수거 및 위해검사'에 대해 각각 3.15점과 3.09점을 부여하여, 민간 전문가의 2.79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음(<표 4-24> 참조).

○ 유통식품의 성분 및 원산지표시 감시와 계도

- ‘유통식품의 성분 및 원산지표시 감시·계도’에 대해 대응수준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한 응답자는 14.4%,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이보다 약 3배에 가까운 41.8%임. 이 분야의 평균 평점은 2.64점으로 보통(3점) 이하의 평가를 받았음.

<표 4-23>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의 대응수준 평가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미흡	대체로 미흡	보통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계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지도관리	12 (5.8)	54 (26.0)	109 (52.4)	31 (14.9)	2 (1.0)	208 (100.0)
유통식품의 수거 및 위해 검사	7 (3.4)	48 (23.1)	98 (47.1)	46 (22.1)	9 (4.3)	208 (100.0)
유통식품의 성분 및 원산지표시 감시·계도	21 (10.1)	66 (31.7)	91 (43.8)	27 (13.0)	3 (1.4)	208 (100.0)
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 유통관리	19 (9.1)	78 (37.5)	86 (41.3)	22 (10.6)	3 (1.4)	208 (100.0)
음식점의 위생관리 감시와 계도	17 (8.2)	64 (30.8)	92 (44.2)	29 (13.9)	6 (2.9)	208 (100.0)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감시와 계도	38 (18.3)	91 (43.8)	64 (30.8)	12 (5.8)	3 (1.4)	208 (100.0)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9 (4.3)	42 (20.2)	96 (46.2)	56 (26.9)	5 (2.4)	208 (100.0)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11 (5.3)	62 (29.8)	97 (46.6)	31 (14.9)	7 (3.4)	208 (100.0)
소비자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구축 및 처리	11 (5.3)	48 (23.1)	94 (45.2)	47 (22.6)	8 (3.8)	208 (100.0)

○ 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 유통관리

- ‘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 유통관리’에 대해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2.0%이며,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46.6%임. 이 분야의 평균 평점은 2.58점으로 보통(3점)이하의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음식점의 위생관리 감시와 계도

- ‘음식점의 위생관리 감시·계도’에 대해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6.8%이며,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39.0%로 나타남. 이 분야의 평균 평점은 보통(3점)보다 낮은 2.73점으로 나타남.

- ‘음식점의 위생관리 감시·계도’에 대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평균 평점은 보통(3점) 이상

인 3.13점임. 전문직 공무원은 이보다 낮은 2.7점, 민간 전문가는 가장 낮은 2.4점을 줌.

○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감시·계도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감시·계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2%에 불과하며,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62.1%나 됨. 대응수준의 평균 평점은 2.28점으로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 분야 9개 항목 중에서 가장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음식점의 원산지 감시·계도’에 대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평균 평점은 2.48점으로, 전문직 공무원 2.29점, 민간 전문가 2.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4>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의 대응수준 평가

(단위 : 점)

구 분	민간 전문가	일반 공무원	전문 공무원	전체	F값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관라 지도	2.69	2.83	2.85	2.79	0.831
유통식품의 수거 및 위해 검사	2.79	3.15	3.09	3.01	3.230**
유통식품의 성분 및 원산지표시 감시와 계도	2.54	2.72	2.66	2.64	0.649
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 유통관리	2.66	2.48	2.58	2.58	0.695
음식점의 위생관리 감시와 계도	2.40	3.13	2.70	2.73	11.710***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감시와 계도	2.10	2.48	2.29	2.28	3.039*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2.60	3.33	3.16	3.03	14.728***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2.69	2.83	2.90	2.81	1.077
소비자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구축 및 처리	2.75	3.05	3.09	2.97	2.950*

주 : ‘매우 미흡’ 1점, ‘대체로 미흡’ 2점, ‘보통’ 3점, ‘대체로 충분’ 4점 ‘매우 충분’ 5점임.

* p<0.1, ** p<0.05, *** p<0.01임.

○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9.3%이며,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24.5%임.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미흡하다는 응답자에 비해 유일하게 많은 업무임.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 분야 9개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인 3.03점(보통 3점)을 받았음.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에 대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평점은 3.33점임. 전문직 공무원은 이보다 낮은 3.16점, 민간 전문가는 가장 낮은 2.6점을 부여함.

○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에 대해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8.3%,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이보다 약 2배 많은 35.1%임. 이 분야의 평

균 평점은 2.81점으로 보통(3점) 이하의 평가를 받았음.

○ 소비자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구축 및 처리

-‘소비자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구축 및 처리’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6.4%,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28.4%로, 미흡하다는 응답자가 약간 더 많음. 이 분야의 평균 평점은 2.97점으로 3점(보통)에 거의 근접하고 있음.

-‘소비자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구축 및 처리’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의 평균 평점은 3.09점임.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3.05점이며, 민간 전문가는 이보다 낮은 2.75점을 부여함.

4)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

○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4개 분야는 모두 평균(3점)이하의 점수를 받아, 대응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이 중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실시’의 평점은 2.43점으로 대응수준이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음(<표 4-26> 참조).

○ 생산자 및 사업자 대상 식품안전 정보·기술 제공 및 교육 실시

-‘생산자 및 사업자 대상 식품안전 정보·기술 제공 및 교육 실시’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2%에 불과하며, 반면 대응이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49.0%로 거의 절반에 이룸. 이 분야의 평균 평점은 2.5점으로 보통(3점) 이하의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1%에 그친 반면, 대응이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51%로 절반을 넘고 있음. 이 분야의 평점은 2.53점으로 보통(3점) 이하의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에 대해 가장 낮은 평점을 준 집단은 2.31점을 부여한 민간 전문가임. 전문직 공무원이 2.59점,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2.7점을 부여함.

○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7%에 불과하며, 대응이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52.9%로 과반수를 넘음. 이 분야에 대한 평균 평점은 2.43점으로 식품안전정보제공 및 교육분야 4개 항목 중 대응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로 평가 받았음.

○ 시민,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정보교환

- 식품안전을 위한 ‘시민,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정보교환’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3%인 반면,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52.9%로 과반수를 넘음. 이 분야의 평균 평점은 2.45점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표 4-25>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 분야의 대응수준 평가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미흡	대체로 미흡	보통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계
생산자 및 사업자 대상식품안전 정보·기술 제공 및 교육 실시	20 (9.6)	82 (39.4)	91 (43.8)	12 (5.8)	3 (1.4)	208 (100.0)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18 (8.7)	88 (42.3)	79 (38.0)	20 (9.6)	3 (1.4)	208 (100.0)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	26 (12.5)	84 (40.4)	82 (39.4)	14 (6.7)	2 (1.0)	208 (100.0)
시민,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정보교환 확대	21 (10.1)	89 (42.8)	83 (39.9)	13 (6.3)	2 (1.0)	208 (100.0)

<표 4-26>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대응수준 평가

(단위 : 점)

구 분	민간 전문가	일반 공무원	전문 공무원	전체	F값
생산자 및 사업자 대상식품안전 정보·기술 제공 및 교육 실시	2.46	2.45	2.57	2.50	0.563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2.31	2.70	2.59	2.53	3.885**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	2.32	2.65	2.36	2.43	2.977*
시민,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정보교환 확대	2.40	2.58	2.40	2.45	1.148

주 : ‘매우 미흡’ 1점, ‘대체로 미흡’ 2점, ‘보통’ 3점, ‘대체로 충분’ 4점 ‘매우 충분’ 5점임.

* p<0.1, ** p<0.05, *** p<0.01임.

제4절 요점 및 정책 시사점

1. 서울은 식품의 대소비자, 유통지의 특성을 가짐.

- 서울시의 식품 1차 생산(재배, 사육) 비중은 전국의 1%에도 못 미침. 식품제조·가공업 비중은 이보다 높은 14.3%이지만, 식품산업 매출액이 전국의 3.8%에 불과함.

- 서울의 도매시장 청과물 유통량은 부산시의 4.5배, 수산물은 인천시의 7.1배임. 서울의 육류소비량은 전국의 21.4%를 차지함. 서울의 식품접객업소 수는 전국의 19.4%, 식품판매업은 17.9%, 수입식품판매업은 47.4%,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29.4%를 차지함.
- 서울은 식품 생산지 역할보다는 식품의 대소비지, 유통지의 특성을 가짐.

2.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목표치 설정이 없음

- 서울시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별로 최소한 또는 최대한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 목표치의 설정이 미흡함. 가령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멘토링 사업을 전체 제조업의 몇 %까지 해야 하는지, 또는 제조업 유형별 목표치에 대해 설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즉 식품망 단계별로 식품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 (최소한, 최대한) 수행해야 하는 사업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3.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전반적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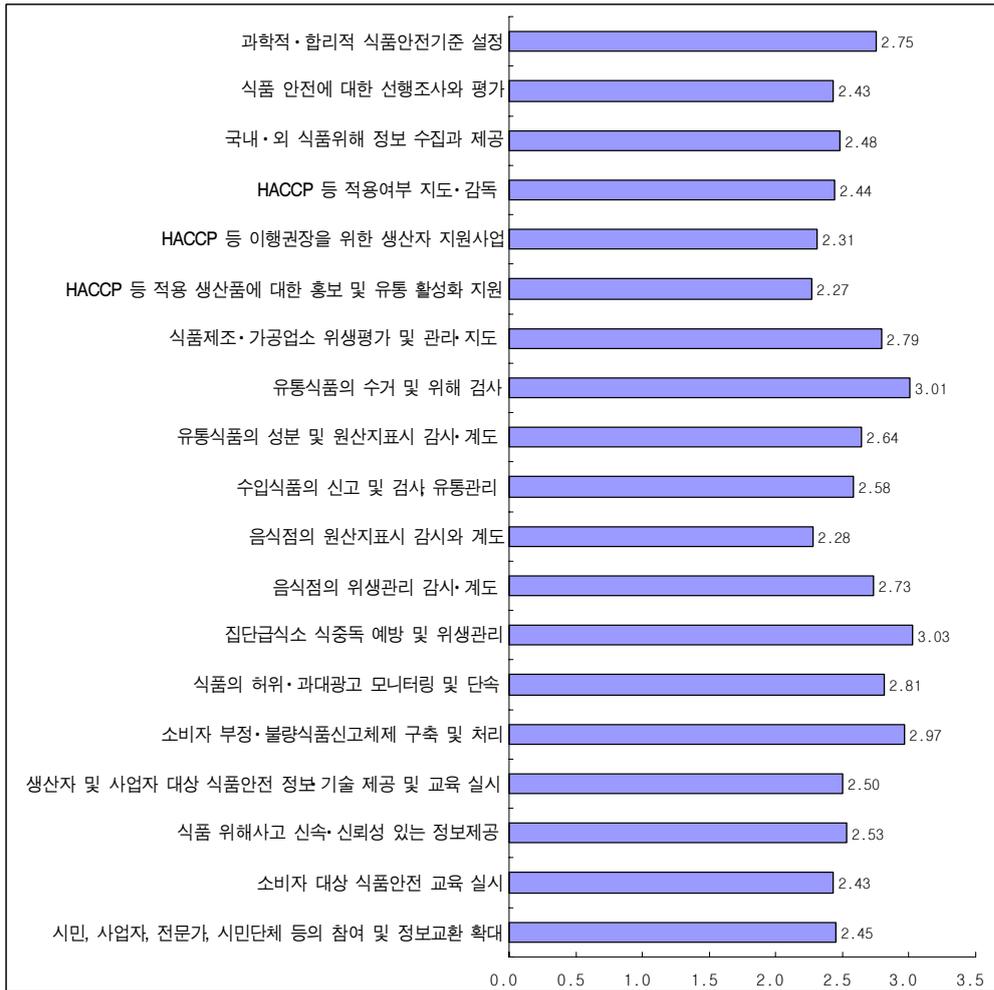
-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위생행정평가 결과(2006년, 2007년)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음. 또한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집중관리업소의 지도점검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음. 그리고 수거검사와 위반업소 처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자치구 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5개 자치구의 경우 특히 위생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점검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4. 서울시민의 식품안전 관심도에 비해 식품안전 신뢰도가 매우 낮음

- 서울시민의 86.1%는 식품안전에 관심이 있음. 그러나 유통식품이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시민(40.7%)보다 신뢰하지 않는 시민(59.1%)이 더 많음.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아, 서울시민의 84.6%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함.
- 식품생산업체, 유통업체, 판매업 종사자에 대해 신뢰한다는 서울 시민은 50%도 되지 않음. 서울시민의 66.1%가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며, 서울시의 식품안전 발표에 대해 35.7%가 신뢰하지 않음.

5.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식품안전관리 19개 업무 중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업무는 하나도 없음. 2개 업무만이 대응수준이 보통이라고 평가를 받고, 나머지 17개 업무는 모두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주 : '매우 미흡' 1점, '대체로 미흡' 2점, '보통' 3점, '대체로 충분' 4점 '매우 충분' 5점임.

<그림 4-3> 식품안전관리 분야별 대응수준 평가

제5장 정책방향 및 행정기반 구축 방안

- 제1절 전문가 및 공무원의 식품안전정책 전망과 의견
- 제2절 국·내외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시사점 종합
-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기본방향
- 제4절 행정기반 구축방안

제5장 정책방향 및 행정기반 구축 방안

제1절 전문가 및 공무원의 식품안전정책 전망과 의견

1. 식품안전 분야별 행정수요 변화 전망

- 식품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들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19개 업무의 행정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식품안전 19개 업무분야 중 4점(조금 증가)을 넘는 항목이 7개이며, 나머지 12개 항목도 모두 3.5점(보통 3점)을 넘고 있음.
- 향후 행정수요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보는 분야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감시와 계도’(4.28점)이며, 두 번째는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4.23점), 세 번째는 ‘유통식품의 성분 및 원산지표시 감시와 계도’(4.19점)임. 특히 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음.
- 식품안전 모든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 전망 중에, 특히 ‘식품안전 기준 설정 및 조사연구’ 분야의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될 것이라고 봄.
- 민간 전문가들은 공무원에 비해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적용과 지원’, ‘식품안전 정보제공과 교육실시’ 분야의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1) 식품안전 기준 설정 및 연구조사

- 식품안전과 관련해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 기준설정’, ‘식품안전 선행조사와 평가’, ‘국내·외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 등의 3개 업무는 모두, 평점이 4점(매우 증가 5점)을 넘어,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 기준설정’이 4.23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아, 향후 행정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할 분야로 전망되고 있음(<표 5-2> 참조).
-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 분야에 대해 일반행정직 공무원(4.42점)이 민간 전문가(4.16점), 전문직공무원(4.14점)에 비해 행정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표 5-2> 참조).

○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

- 향후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 분야의 행정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2.3%,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1.3%임. 즉 83.6%의 응답자가 향후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식품안전 선행조사와 평가

- ‘식품안전 선행조사와 평가’ 분야의 행정수요가 향후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41.8%로 가장 많음.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도 36.5%임. 응답자의 78.3%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국내·외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

- ‘국내·외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에 대한 행정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39.4%로 가장 많으며,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35.1%임. 응답자의 74.5%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5-1> 식품안전기준 설정 및 조사연구 분야 행정수요 전망

(단위 : 명, %)

구 분	매우 감소	조금 감소	보통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계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	1(0.5)	5(2.4)	28(13.5)	86(41.3)	88(42.3)	208(100.0)
식품 안전에 대한 선행조사와 평가	1(0.5)	8(3.8)	36(17.3)	87(41.8)	76(36.5)	208(100.0)
국내·외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	4(1.9)	5(2.4)	44(21.2)	73(35.1)	82(39.4)	208(100.0)

<표 5-2>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기준 설정 및 조사연구 분야 행정수요 전망

(단위 : 점)

구 분	민간 전문가	일반 공무원	전문 공무원	전체	F값
과학적, 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	4.16	4.42	4.14	4.23	2.411*
식품 안전에 대한 선행조사와 평가	4.21	4.13	3.99	4.10	1.266
국내·외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	4.13	4.13	3.99	4.08	0.593

주 : ‘매우 감소’ 1점, ‘조금 감소’ 2점, ‘보통’ 3점, ‘조금 증가, 4점 ‘매우 증가’ 5점임.

* p<0.1, ** p<0.05, *** p<0.01임.

2)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적용 및 지원

○ ‘식품안전 사전관리 수단 적용과 지원’ 분야의 향후 행정수요는 식품안전기준 설정과 연구조사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3개 항목 모두 평점 4점(조금 증가)에 가까운 3.77점, 3.79점, 3.89점을 받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접하고 있음(<표 5-4> 참조).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에 대한 행정수요가 향후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27.9%,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39.4%임. 응답자의 67.3%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행정수요 전망 점수는 4.10점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3.85점), 전문직 공무원(3.75점)에 비해 행정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표 5-4> 참조).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에 대해 향후 행정수요가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7.6%로 가장 많으며,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9.2%임. 응답자의 66.8%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 생산품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 생산품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분야의 행정수요에 대해 응답자의 45.2%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며,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0.2%임. 응답자의 65.4%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 생산품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행정수요 전망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평점이 4.01점으로 나타나, 일반행정직 공무원(3.82점), 전문직 공무원(3.58점)에 비해 행정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표 5-4> 참조).

<표 5-3>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적용 및 지원의 행정수요 전망

(단위 : 명, %)

구 분	매우 감소	조금 감소	보통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계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	2(1.0)	8(3.8)	58(27.9)	82(39.4)	58(27.9)	208(100.0)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	4(1.9)	10(4.8)	55(26.4)	99(47.6)	40(19.2)	208(100.0)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적용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4(1.9)	6(2.9)	62(29.8)	94(45.2)	42(20.2)	208(100.0)

<표 5-4>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적용 및 지원의 행정수요 전망

(단위 : 점)

구 분	민간 전문가	일반 공무원	전문 공무원	전체	F값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	4.10	3.85	3.75	3.89	3.059**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	3.84	3.77	3.72	3.77	0.305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적용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4.01	3.82	3.58	3.79	4.984***

주 : '매우 감소' 1점, '조금 감소' 2점, '보통' 3점, '조금 증가' 4점 '매우 증가' 5점임.

* p<0.1, ** p<0.05, *** p<0.01임.

3)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

- 식품안전 감시·관리 감독 분야 9개 항목 중에서 4점(조금 증가) 이상을 받은 항목은 4개 임. 이 중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감시·제도'가 4.28점을 받아 행정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유통식품 성분 및 원산지표시 감시·제도'는 4.19점, 그 다음으로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는 4.05점, '유통식품의 수거와 위해검사'는 4.0점을 받아 이 업무들도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관리지도', '수입식품의 수거 및 위해검사', '음식점의 위생관리 감시·제도' 등의 3개 업무는 4점(조금 증가 4점)에 약간 못 미치는 3.9점대를 받아,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소비자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구축 및 처리' 2개 분야는 행정수요 전망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인 3.76점, 3.87점을 각각 받았으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표 5-6> 참조).
-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지도관리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관리지도' 분야의 행정수요가 향후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48.1%로 가장 많으며,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23.6%임. 응답자의 71.7%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반행정직 공무원(4.12점)이 전문직 공무원(3.74점)이나 민간 전문가(3.96점)에 비해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표 5-6> 참조).

<표 5-5>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의 행정수요 전망

(단위 : 명, %)

구 분	매우 감소	조금 감소	보통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관리·지도	1(0.5)	5(2.4)	53(25.5)	100(48.1)	49(23.6)	208(100.0)
유통식품의 수거 및 위해 검사	1(0.5)	7(3.4)	37(17.8)	109(52.4)	54(26.0)	208(100.0)
유통식품의 성분 및 원산지표시 감시와 계도	3(1.4)	4(1.9)	26(12.5)	93(44.7)	82(39.4)	208(100.0)
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 유통관리	3(1.4)	10(4.8)	48(23.1)	79(38.0)	68(32.7)	208(100.0)
음식점의 위생관리 감시와 계도	3(1.4)	6(2.9)	52(25.0)	92(44.2)	55(26.4)	208(100.0)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감시와 계도	1(0.5)	8(3.8)	18(8.7)	86(41.3)	95(45.7)	208(100.0)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1(0.5)	5(2.4)	34(16.3)	111(53.4)	57(27.4)	208(100.0)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3(1.4)	7(3.4)	70(33.7)	85(40.9)	43(20.7)	208(100.0)
소비자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구축 및 처리	3(1.4)	5(2.4)	64(30.8)	81(38.9)	55(26.4)	208(100.0)

<표 5-6>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 행정수요 전망

(단위 : 점)

구 분	민간 전문가	행정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전체	F값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관리·지도	3.96	4.12	3.74	3.92	4.175**
유통식품의 수거 및 위해 검사	3.97	3.98	4.04	4.00	0.151
유통식품의 성분 및 원산지표시 감시와 계도	4.21	4.22	4.15	4.19	0.133
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 유통관리	4.03	3.98	3.87	3.96	0.528
음식점의 위생관리 감시와 계도	3.88	3.95	3.91	3.91	0.096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감시와 계도	4.25	4.23	4.34	4.28	0.340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4.06	4.12	3.99	4.05	0.503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3.63	3.88	3.78	3.76	1.357
소비자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구축 및 처리	3.71	3.93	3.95	3.87	1.656

주 : '매우 감소' 1점, '조금 감소' 2점, '보통' 3점, '조금 증가' 4점, '매우 증가' 5점임.

* p<0.1, ** p<0.05, *** p<0.01임.

○ 유통식품의 수거 및 위해 검사

- '유통식품 수거 및 위해검사' 분야의 행정수요가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52.4%로 과반수이며,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26%임. 응답자의 78.4%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유통식품의 성분 및 원산지표시 감시계도

- '유통식품 성분 및 원산지표시 감시계도' 분야의 행정수요에 대해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4.7%,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39.4%를 차지하고 있음. 응답자의 84.1%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수입식품 신고 및 검사, 유통관리

-‘수입식품 신고 및 검사, 유통관리’ 분야의 행정수요에 대해 향후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38%,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32.7%임. 응답자의 70.7%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음식점 위생관리 감시와 계도

-‘음식점 위생관리 감시·계도’ 분야에 대해 행정수요가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4.2%,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26.4%임. 응답자의 70.6%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음식점 원산지표시 감시·계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감시·계도’에 대해 향후 행정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5.7%로 가장 많으며,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41.3%를 차지하고 있음. 응답자의 87.0%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식품안전 감시분야 중 행정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항목임.

○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분야의 행정수요에 대해 향후 조금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53.4%로 과반수이고,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27.4%임. 응답자의 80.8%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에 대한 행정수요가 조금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40.9%,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20.7%임. 응답자의 61.6%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소비자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구축 및 처리

-‘소비자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구축 및 처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향후 조금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38.9%,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26.4%임. 응답자의 65.3%가 이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4) 식품안전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

-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에 대한 행정수요가 3.92점(조금 증가 4점)으로 식품안전 관련정보제공 및 교육실시분야의 4개 항목 중 가장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실시’는 3.79점, ‘생산자 및 사업자 대상 식품안전 정보·기술 제공과 교육실시’ 분야는 3.76점으로 4점(조금 증가)에 근접하고 있음(<표 5-8> 참조).
-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에 대한 행정수요가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3.3%,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26.4%임. 응답자의 69.7%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에 대해 민간 전문가(4.07점)가 일반행정직 공무원(3.95점)이나 전문직 공무원(3.92점)보다 행정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표 5-8> 참조).
- 생산자·사업자 대상 식품안전 정보·기술 제공 및 교육 실시
 - ‘생산자·사업자 대상 식품안전 정보·기술 제공 및 교육 실시’에 대한 행정수요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45.7%, 매우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18.3%임. 응답자의 64%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생산자·사업자 대상 식품안전 정보·기술 제공 및 교육 실시’에 대해 민간 전문가(3.96점)가 일반행정직 공무원(3.62점), 전문직 공무원(3.70점)보다 행정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
 -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에 대한 행정수요가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2.8%,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20.7%임. 전체 응답자의 63.5%가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시민,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정보교환 확대
 - 식품안전을 위한 ‘시민,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정보교환 확대’에 대해 행정수요가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2.8%,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17.8%임. 응답자의 60.6%가 이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시민,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정보교환 확대'에 대해 민간 전문가(3.93 점)가 일반행정직 공무원(3.62점)과 전문직 공무원(3.58점)보다 행정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표 5-8> 참조).

<표 5-7>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분야 행정수요 전망

(단위 : 명, %)

구 분	매우 감소	조금 감소	보통	조금 증가	매우 증가	계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2 (1.0)	4 (1.9)	57 (27.4)	90 (43.3)	55 (26.4)	208 (100.0)
생산자 및 사업자 대상 식품안전 정보·기술 제공 및 교육 실시	2 (1.0)	9 (4.3)	64 (30.8)	95 (45.7)	38 (18.3)	208 (100.0)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	3 (1.4)	4 (1.9)	69 (33.2)	89 (42.8)	43 (20.7)	208 (100.0)
시민,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정보교환 확대	3 (1.4)	11 (5.3)	68 (32.7)	89 (42.8)	37 (17.8)	2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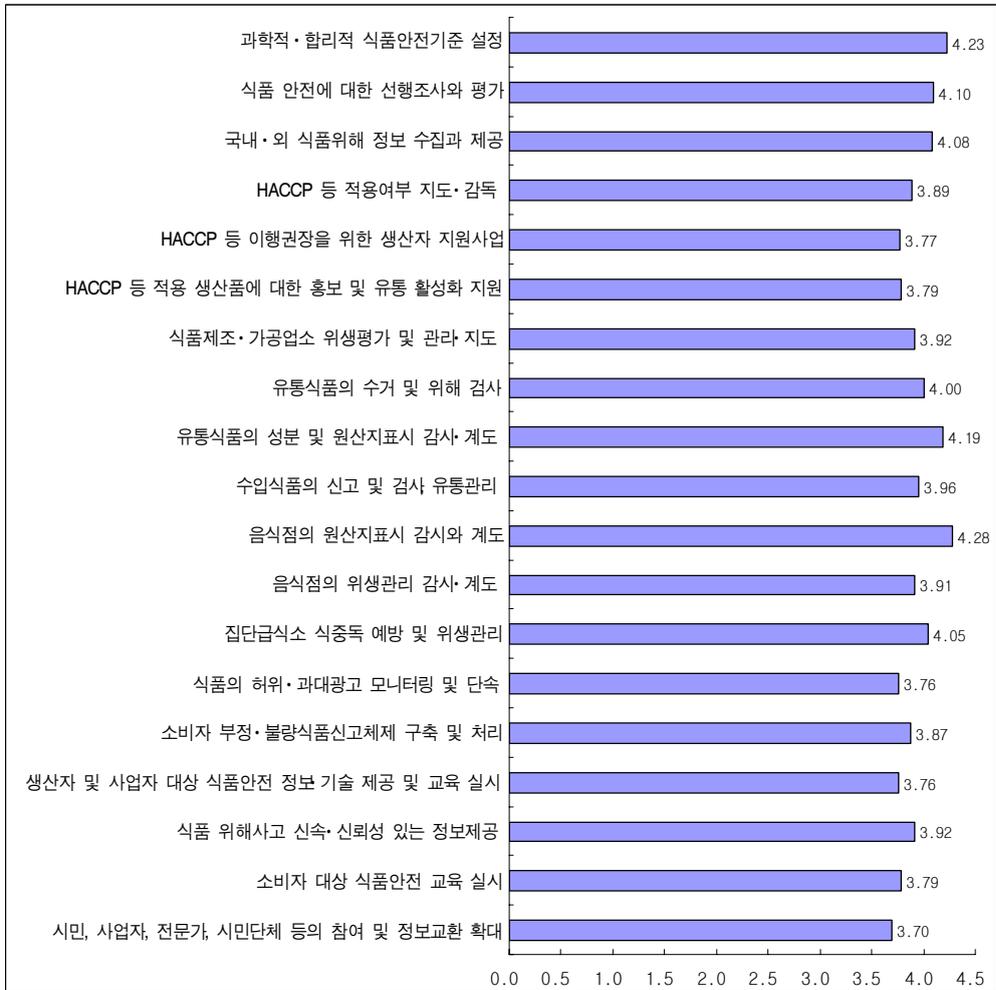
<표 5-8> 응답자 유형별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분야 행정수요 전망

(단위 : 점)

구 분	민간 전문가	행정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전체	F값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4.07	3.95	3.77	3.92	2.418*
생산자 및 사업자 대상 식품안전 정보·기술 제공 및 교육 실시	3.96	3.62	3.70	3.76	3.027*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	3.90	3.73	3.75	3.79	0.776
시민,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정보교환 확대	3.93	3.62	3.58	3.70	3.467**

주 : '매우 감소' 1점, '조금 감소' 2점, '보통' 3점, '조금 증가' 4점 '매우 증가' 5점임.

* p<0.1, ** p<0.05, *** p<0.01임.



주: '매우 미흡' 1점, '대체로 미흡' 2점, '보통' 3점, '대체로 충분' 4점 '매우 충분' 5점임.

<그림 5-1> 식품안전관리 업무별 행정수요 전망

2. 식품안전 분야별 역할분담

- 전문가 및 공무원은 식품안전 업무 역할분담과 관련해 서울시가 식품안전 정보제공과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봄. 또한 자치구는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을 하며, 중앙정부는 식품안전 기준설정 및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봄.
- 이들은 식품안전 기준 설정 및 연구조사 분야의 핵심 행정주체로 중앙정부가 적당하다고 봄. 특히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은 중앙정부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봄.

-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적용 및 지원의 핵심 행정주체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드는 응답비율이 비슷함. 자치구를 합칠 경우, 지방정부의 핵심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의 핵심 행정주체로 자치구가 적당하다고 봄. 특히 음식점 위생관리 감시계도와 원산지표시 감시계도는 자치구가 그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봄.
-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는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항목을 제외하고는 서울시가 그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음. 자치구를 합할 경우, 지방정부의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1) 식품안전 기준 설정 및 연구조사

- 식품안전 기준 설정 및 연구조사 분야의 핵심 행정 주체로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가 많음.

<표 5-9> 식품안전 기준 설정 및 연구조사의 핵심 행정주체

(단위 : 명, %)

구 분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계
과학적, 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	165(79.7)	22(10.6)	20(9.7)	207(100.0)
식품 안전에 대한 선행조사와 평가	114(54.5)	58(27.8)	37(17.7)	209(100.0)
국내·외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	161(77.4)	34(16.3)	13(6.3)	208(100.0)

주 : 중복응답 있음.

- ‘과학적·합리적 식품안전 기준설정’을 담당해야 하는 핵심 행정주체로 응답자의 79.7%가 중앙정부를 들고 있음.
- ‘식품안전 선행조사와 평가’를 담당해야 할 핵심주체로 응답자의 54.5%는 중앙정부를 들고 있으며, 서울시를 드는 응답자가 27.8%, 자치구를 꼽는 응답자는 17.7%로 나타남.
- ‘국내·외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을 담당해야 할 핵심 행정주체로 응답자의 77.4%가 중앙정부를 들고 있음(<표 5-9> 참조).

2)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적용 및 지원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을 담당해야 할 핵심행정주체로 응답자의 38.7%가 서울시를 들고 있으며,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가 37.7%로 거의 비슷한 수준임. 또한 자치구를 드는 응답자는 23.6%임. 서울시와 자치구를 합할 경우 응답자의

62.3%가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의 행정주체를 지방정부로 보고 있음.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의 핵심행정주체로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가 47.4%로 가장 많음. 서울시를 핵심행정주체로 드는 응답자는 34.7%, 자치구를 드는 응답자는 17.8%임. 서울시와 자치구를 합할 경우 응답자의 52.5%가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의 행정주체를 지방정부로 보고 있음.
-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 생산품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의 핵심 행정주체로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가 43.6%, 서울시를 드는 응답자는 40.3%, 자치구는 16.1%임. 서울시와 자치구를 합할 경우 응답자의 56.4%가 이 분야의 행정주체를 지방정부로 보고 있음(<표 5-10> 참조).

<표 5-10>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적용 및 지원의 핵심 행정주체

(단위: 명, %)

구 분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계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	80 (37.7)	82 (38.7)	50 (23.6)	212 (100.0)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	101 (47.4)	74 (34.7)	38 (17.8)	213 (100.0)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적용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92 (43.6)	85 (40.3)	34 (16.1)	211 (100.0)

주: 중복응답 있음.

3)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

-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 분야에서 수입식품을 제외하고는 핵심행정주체로 자치구를 드는 응답자가 가장 많음.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관리지도'를 담당해야할 핵심주체로 응답자의 61.0%가 자치구를 들고 있음. 서울시를 드는 응답자는 31.5%,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는 7.5%에 불과함.

<표 5-11>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의 핵심 행정주체

(단위 : 명, %)

구 분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관리지도	16(7.5)	67(31.5)	130(61.0)	213(100.0)
유통식품의 수거 및 위해 검사	15(7.1)	59(28.0)	137(64.9)	211(100.0)
유통식품의 성분 및 원산지표시 감시와 계도	25(12.0)	66(31.7)	117(56.3)	208(100.0)
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유통관리	143(67.5)	36(17.0)	33(15.6)	212(100.0)
음식점의 위생관리 감시와 계도	4(1.9)	33(15.4)	177(82.7)	214(100.0)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감시와 계도	19(8.9)	43(20.2)	151(70.9)	213(100.0)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19(9.0)	58(27.4)	135(63.7)	212(100.0)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60(27.9)	75(34.9)	80(37.2)	215(100.0)
소비자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구축 및 처리	40(18.4)	77(35.5)	100(46.1)	217(100.0)

주 : 중복응답 있음.

- ‘유통식품의 수거검사’를 담당해야할 핵심 행정주체로 응답자의 64.9%가 자치구를 들고 있으며, 서울시를 드는 응답자가 28.0%,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는 7.1%로 가장 적음.
- ‘유통식품의 성분 및 원산지표시 감시·계도’의 핵심 행정주체로 응답자의 56.3%는 자치구, 응답자의 31.7%는 서울시를 들고 있음.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는 12.0%임.
- ‘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유통관리’의 핵심 행정주체로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가 67.5%로 가장 많음. 서울시가 17.0%, 자치구가 15.6%임.
- ‘음식점의 위생관리 감시와 계도’업무의 핵심 행정주체로 자치구를 드는 응답자가 82.7%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를 드는 응답자가 15.4%임.
- ‘음식점 원산지표시 감시·계도’의 핵심 행정주체로 자치구를 드는 응답자가 70.9%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를 드는 응답자가 20.2%임.
-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업무의 핵심행정주체로 자치구를 드는 응답자가 63.7%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를 드는 응답자도 27.4%임.
-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업무의 핵심행정주체로 자치구를 드는 응답자가 37.2%, 서울시를 드는 응답자가 34.9%,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가 27.9%임.
- ‘소비자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구축과 처리’업무의 핵심행정주체로 자치구를 드는 응답자가 46.1%, 서울시를 드는 응답자가 35.5%,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가 18.4%임(<표 5-11> 참조).

4)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 ‘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의 핵심 행정주체로 서울시를 드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핵심행정주체로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가 47.7%, 서울시를 드는 응답자가 35.6%, 자치구를 드는 응답자가 16.7%임
- ‘생산자·사업자 대상 식품안전 정보·기술 제공 및 교육 실시’ 분야의 핵심행정주체로 응답자의 50.9%가 서울시를 들고 있으며,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는 33.2%, 자치구는 15.9%임.
-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실시’의 핵심행정주체로 서울시를 드는 응답자가 50.0%로 가장 많고, 자치구를 드는 응답자가 29.6%,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가 20.4%임.
- 식품안전을 위한 ‘시민·사업자·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정보교환 확대’ 업무의 핵심행정주체로 서울시를 드는 응답자가 50.5%로 가장 많고, 중앙정부를 드는 응답자가 32%, 자치구를 드는 응답자가 17.6%임(<표 5-12> 참조).

<표 5-12>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 핵심 행정주체

(단위 : 명, %)

구 분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계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103 (47.7)	77 (35.6)	36 (16.7)	216 (100.0)
생산자 및 사업자 대상식품안전 정보·기술 제공 및 교육 실시	71 (33.2)	109 (50.9)	34 (15.9)	214 (100.0)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	44 (20.4)	108 (50.0)	64 (29.6)	216 (100.0)
시민,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정보 교환 확대	71 (32.0)	112 (50.5)	39 (17.6)	222 (100.0)

주 : 중복응답 있음.

3. 식품안전 업무별 서울시의 역할 중요도

- 식품안전 업무 중에서 서울시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분야는 ‘식품안전업무 기획 및 통합·조정 역할’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 분야이며, 세 번째는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지원’ 분야임. 서울시의 역할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업무분야는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임.
- 식품안전 행정발전을 위한 서울시가 역할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는 30명의 응답자가 ‘행

정주체별 식품안전 업무분담 명확화와 통합관리체계, 네트워크화'를 제안하였음. 그리고 12명은 '식품안전 정보제공과 교육실시', 6명은 생산자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였음.

1) 기획조정 및 조사연구

○ 식품안전 업무의 기획 및 계획 기능

-서울시 식품안전과의 역할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온 업무는 '식품안전 업무의 기획 및 계획 기능'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50.5%가 서울시 식품안전과의 '식품안전 업무의 기획 및 계획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했으며, 26.4%는 약간 중요하다고 말함. 즉 응답자의 76.9%가 서울시의 식품안전업무의 기획 및 계획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표 5-13> 참조).

<표 5-13> 서울시의 식품안전 업무 기획조정 및 조사연구 역할 중요도 평가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계
서울시 식품안전 업무의 기획 및 계획 기능	1 (0.5)	10 (4.8)	37 (17.8)	55 (26.4)	105 (50.5)	208 (100.0)
위생과, 보건정책과, 생활경제과 등으로 분산된 식품안전 업무의 조정과 통합	7 (3.4)	12 (5.8)	42 (20.2)	64 (30.8)	83 (39.9)	208 (100.0)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 조정 및 매개자 역할	5 (2.4)	15 (7.2)	52 (25.0)	72 (34.6)	64 (30.8)	208 (100.0)
자치구 식품안전 업무 평가	12 (5.8)	27 (13.0)	70 (33.7)	67 (32.2)	32 (15.4)	208 (100.0)
자치구 간 예산, 사업 등의 격차 조정 및 지원 역할	12 (5.8)	34 (16.3)	56 (26.9)	67 (32.2)	39 (18.8)	208 (100.0)
식품안전 관련 연구, 조사 및 데이터 구축	14 (6.7)	23 (11.1)	53 (25.5)	74 (35.6)	44 (21.2)	208 (100.0)

-특히 민간 전문가(4.46점)는 일반행정직 공무원(4.15점)이나 전문직 공무원(4.06점)에 비해 서울시의 식품안전 기획 및 계획 기능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인식하고 있음(<표 5-14> 참조).

○ 위생과, 보건정책과, 생활경제과 등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업무의 조정과 통합

-서울시 식품안전과에서 여러 부서로 분산된 식품안전 업무의 조정·통합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9.9%이며,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0.8%임. 즉 응

답자의 70.7%가 식품안전과에서 분산된 식품안전 업무의 조정·통합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 조정 및 매개자 역할

-서울시가 식품안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 조정 및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4.6%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30.8%임. 즉 응답자의 65.4%가 서울시가 식품안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 조정 및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표 5-14> 응답자 유형별 서울시의 식품안전업무 기획조정 및 조사연구 역할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구 분	민간 전문가	일반 공무원	전문 공무원	전체	F값
서울시 식품안전 업무의 기획 및 계획 기능	4.46	4.15	4.06	4.22	3.545**
위생과, 보건정책과, 생활경제과 등으로 분산된 식품안전 업무의 조정과 통합	4.06	3.93	3.95	3.98	0.272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 조정 및 매개자 역할	4.01	3.82	3.71	3.84	1.645
자치구 식품안전 업무 평가	3.84	3.15	3.17	3.38	9.766***
자치구 간 예산, 사업 등의 격차 조정 및 지원 역할	3.68	3.37	3.24	3.42	2.866*
식품안전 연구조사 및 데이터 구축	3.53	3.75	3.37	3.53	1.866

주 : ‘매우 낮음’ 1점, ‘약간 낮음’ 2점, ‘보통’ 3점, ‘약간 높음’ 4점, ‘매우 높음’ 5점임.
* p<0.1, ** p<0.05, *** p<0.01임.

○ 자치구 식품안전 업무 평가

-서울시의 ‘자치구 식품안전 업무 평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32.2%가 조금 중요하다고 보며, 15.4%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즉 47.6%의 응답자가 서울시의 자치구 식품안전 업무 평가에 대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서울시의 ‘자치구 식품안전 업무 평가’ 역할 중요성에서 민간 전문가(3.84점)가 일반행정직 공무원(3.15점)이나 전문직 공무원(3.17점)에 비해 이 업무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표 5-14> 참조).

○ 자치구 간 예산, 사업 등의 격차 조정 및 지원 역할

-식품안전과 관련해 서울시의 ‘자치구간 예산, 사업 등의 격차 조정 및 지원역할’에 대해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2.2%,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18.8%임. 즉 응답자의

51%가 서울시의 ‘자치구 간 예산, 사업 등의 격차 조정 및 지원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서울시의 ‘자치구간 예산, 사업 등의 격차 조정 및 지원역할’ 중요성에 대해 민간 전문가 (3.68점)가 일반행정직 공무원(3.37점)이나 전문직 공무원(3.24점)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표 5-14> 참조).

○ 식품안전 연구조사 및 데이터 구축

-서울시 식품안전과의 ‘식품안전 연구조사 및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6%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며, 21.2%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즉 응답자의 56.8%가 서울시의 ‘식품안전 연구조사 및 데이터 구축’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2)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지원

○ HACCP, 이력추적관리제 등의 적용여부 지도·감독

-‘HACCP, 이력추적관리제 등의 적용여부 지도·감독’에 대한 서울시 역할 중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31.3%는 약간 높다고 하며, 18.3%는 매우 높다고 답변함. 응답자의 49.6%가 서울시의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표 5-15> 서울시의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지원 역할 중요도 평가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계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	9 (4.3)	25 (12.0)	71 (34.1)	65 (31.3)	38 (18.3)	208 (100.0)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 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	10 (4.8)	25 (12.0)	64 (30.8)	72 (34.6)	37 (17.8)	208 (100.0)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 식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11 (5.3)	22 (10.6)	70 (33.7)	68 (32.7)	37 (17.8)	208 (100.0)
식품안전 자주(自主)관리 권장을 위한 사업자 대상 지원, 교육, 정보제공	6 (2.9)	22 (10.6)	76 (36.5)	70 (33.7)	34 (16.3)	208 (100.0)

<표 5-16> 응답자 유형별 서울시의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지원 역할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구 분	민간 전문가	일반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전체	F값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 감독	3.41	3.67	3.38	3.47	1.468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 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	3.38	3.70	3.41	3.49	1.727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 식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3.29	3.63	3.50	3.47	1.668
식품안전 자주(自主)관리 권장을 위한 사업자 대상 지원 교육, 정보제공	3.54	3.53	3.44	3.50	0.263

주 : '매우 낮음' 1점, '약간 낮음' 2점, '보통' 3점, '약간 높음' 4점, '매우 높음' 5점임.

* p<0.1, ** p<0.05, *** p<0.01임.

- HACCP, 이력추적관리제 등의 이행 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
 - 'HACCP, 이력추적관리제 등의 이행 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의 서울시 역할에 대해 응답자의 34.6%가 조금 중요하다고 하며, 17.8%는 매우 중요하다고 함. 즉 응답자의 52.4%가 'HACCP, 이력추적관리제 등의 이행 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민간 전문가나 전문직 공무원에 비해 HACCP 등 선진관리수단 지도감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식품안전 자주관리 권장을 위한 사업자 지원, 교육, 정보제공
 - '식품안전 자주관리 권장을 위한 사업자 지원, 교육, 정보제공'의 서울시 역할에 대해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33.7%, 매우 중요하다고 16.3%임. 즉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서울시의 '식품안전 자주관리 권장을 위한 사업자 지원, 교육, 정보제공'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3)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

-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에 대한 서울시 역할의 중요도는 '기획조정 및 조사연구', '식품안전 선진관리수단 지원'에 비해 약간 낮게 평가되고 있음.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지도관리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지도관리’에 대한 서울시 역할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의 25.0%가 약간 높다고 하며, 17.8%는 매우 높다고 함. 즉 응답자의 42.8%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관리’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표 5-17> 참조).

<표 5-17> 서울시의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 역할 중요도 평가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계	평점 (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지도관리	7 (3.4)	24 (11.5)	88 (42.3)	52 (25.0)	37 (17.8)	208 (100.0)	3.42
식품의 수거검사 및 원산지표시제 등 감시·지도 업무	8 (3.8)	24 (11.5)	81 (38.9)	62 (29.8)	33 (15.9)	208 (100.0)	3.42
식품접객업소 위생 감시 및 관리지도	12 (5.8)	34 (16.3)	85 (40.9)	51 (24.5)	26 (12.5)	208 (100.0)	3.22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감시 및 지도업무	11 (5.3)	36 (17.3)	76 (36.5)	46 (22.1)	39 (18.8)	208 (100.0)	3.32
소비자 불량·부정식품 신고 접수 및 처리	7 (3.4)	34 (16.3)	84 (40.4)	57 (27.4)	26 (12.5)	208 (100.0)	3.29

<표 5-18> 응답자 유형별 서울시의 식품안전 감시·관리감독 역할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구 분	민간 전문가	일반 공무원	전문 공무원	전체	F값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관리 지도	3.44	3.52	3.34	3.42	0.544
식품의 수거검사 및 원산지표시상태 등 감시·지도 업무	3.44	3.45	3.39	3.42	0.081
식품접객업소 위생 감시 및 관리지도	3.26	3.32	3.10	3.22	0.839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감시 및 지도업무	3.37	3.58	3.07	3.32	3.709**
소비자 불량·부정식품 신고 접수 및 처리	3.49	3.13	3.25	3.29	2.139

주 : ‘매우 낮음’ 1점, ‘약간 낮음’ 2점, ‘보통’ 3점, ‘약간 높음’ 4점, ‘매우 높음’ 5점임.

* p<0.1, ** p<0.05, *** p<0.01임.

○ 식품 수거검사 및 원산지표시제 등 감시·지도 업무

- ‘식품 수거검사 및 원산지표시제 등 감시·지도 업무’에 대한 서울시 역할의 중요도에 대해 약간 높다고 보는 응답자가 29.8%, 매우 높다는 응답자가 15.9%임. 즉 응답자의 45.7%가 ‘식품 수거검사 및 원산지표시제 등 감시·지도 업무’에 대한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식품접객업소 위생감시 및 지도관리

- ‘식품접객업소 위생감시 및 지도관리’에 대한 서울시 역할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의 24.5%가 조금 높다고 하며, 12.5%가 매우 높다고 응답함. 즉 응답자의 37.0%가 서울시의 ‘식품접객업소 위생감시 및 지도관리’ 역할에 대해 중요하다고 봄. 반면 22.1%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감시 및 지도업무

-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감시 및 지도업무’에 대한 서울시 역할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의 22.1%가 조금 높다고 하며, 매우 높다는 응답자는 18.8%임. 즉 응답자의 40.9%가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감시 및 지도업무’에 대한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반면, 22.6%는 중요하지 않다고 봄.

- 일반행정직 공무원(3.58점)이 이 업무의 서울시 역할에 대해 전문직 공무원(3.07점)이나 민간 전문가(3.3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함(<표 5-18> 참조).

○ 소비자 불량·부정식품 신고 접수 및 처리

- ‘소비자 불량·부정식품 신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서울시 역할 중요도에 대해 약간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27.4%,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12.5%임. 즉 응답자의 39.9%가 이 업무에 대한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19.7%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4) 정보제공 및 홍보와 교육

○ 식품안전 위기관리 긴급대응체제 구축과 운영

- ‘식중독을 비롯한 식품안전 위기관리 긴급대응체제 구축과 운영’의 서울시 역할에 대해 응답자의 37.0%가 중요하다고 보며, 28.8%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즉 응답자의 65.8%가 서울시의 ‘식품안전 위기관리 긴급대응체제 구축과 운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표 5-19> 참조).

- 민간 전문가(3.99점)가 일반행정직 공무원(3.68점)이나 전문직 공무원(3.70점)에 비해 이 업무에 대한 서울시 역할의 중요도를 더 높게 보고 있음(<표 5-20> 참조).

○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

-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에 대한 서울시 역할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의 33.7%가 조금 높다고 보며, 24%는 매우 높다고 봄. 즉 응답자의 57.7%가 서울시의 ‘식품위해 정보 수

집과 제공'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일반행정직 공무원(3.83점)이 민간 전문가(3.43점)나 전문직 공무원(3.58점)에 비해 서울시의 '식품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 역할 중요도가 더 높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

<표 5-19> 서울시의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홍보 교육 역할 중요도 평가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계
식중독을 비롯한 식품안전 위기관리 긴급대응체제 구축과 운영	9 (4.3)	15 (7.2)	47 (22.6)	77 (37.0)	60 (28.8)	208 (100.0)
식품 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	9 (4.3)	27 (13.0)	52 (25.0)	70 (33.7)	50 (24.0)	208 (100.0)
시민 대상 식품안전·건강 식습관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6 (2.9)	26 (12.5)	66 (31.7)	79 (38.0)	31 (14.9)	208 (100.0)
식품안전 관련 사업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 연계, 의견교류 및 활동지원	9 (4.3)	22 (10.6)	72 (34.6)	60 (28.8)	45 (21.6)	208 (100.0)

<표 5-20> 응답자 유형별 서울시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홍보, 교육 역할의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구 분	민간 전문가	일반 공무원	전문 공무원	전체	F값
식중독을 비롯한 식품안전 위기관리 긴급대응체제 구축 운영	3.99	3.68	3.70	3.79	1.713
식품 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	3.43	3.83	3.58	3.60	2.177
시민 대상 식품안전 및 건강 식습관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3.54	3.53	3.42	3.50	0.328
식품안전 관련 사업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 연계, 의견교류 및 활동지원	3.62	3.42	3.54	3.53	0.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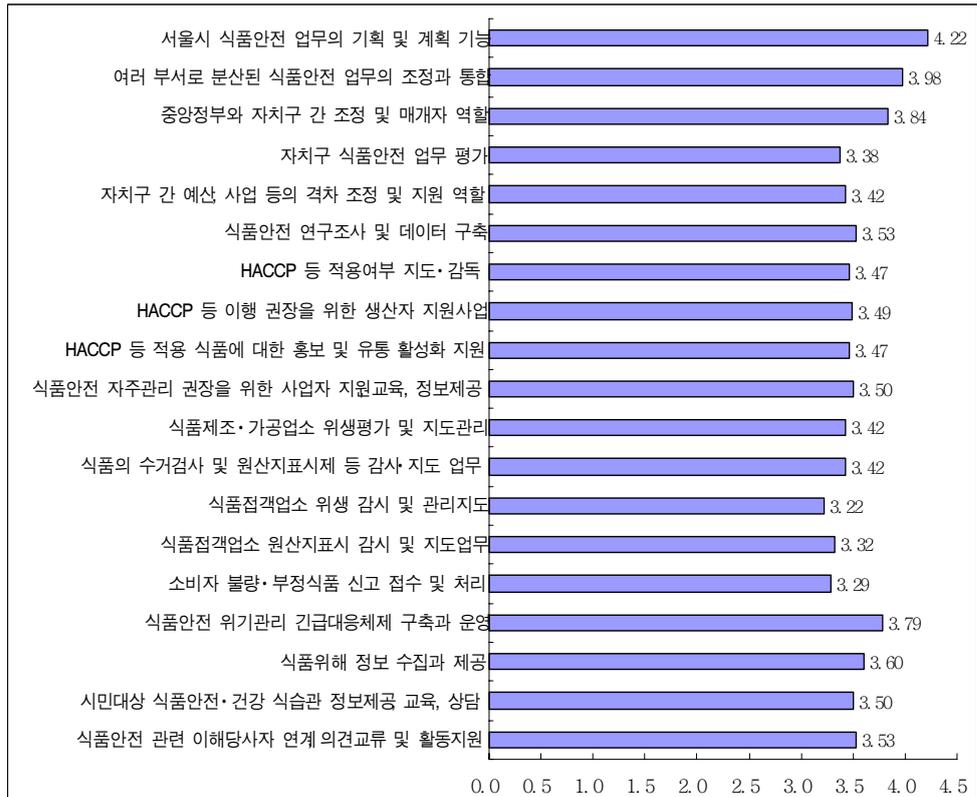
주 : '매우 낮음' 1점, '약간 낮음' 2점, '보통' 3점, '약간 높음' 4점, '매우 높음' 5점임.

* p<0.1, ** p<0.05, *** p<0.01임.

○ 시민대상 식품안전·건강 식습관 정보제공, 교육, 상담

- '시민대상 식품안전·건강 식습관 정보제공, 교육, 상담'에 대한 서울시 역할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의 38%가 약간 높다고 하며, 매우 높다는 응답자는 14.9%임. 즉 응답자의 52.9%가 '시민대상 식품안전·건강 식습관 정보제공, 교육, 상담'에 대한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식품안전 관련 사업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연계, 의견교류 및 활동지원
 - ‘식품안전 관련 사업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연계, 의견교류 및 활동지원’에 대한 서울시 역할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의 28.8%가 조금 높다고 하며, 매우 높다는 응답자는 21.6%임. 즉 응답자의 절반인 50.4%가 ‘식품안전 관련 사업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연계, 의견교류 및 활동지원’에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주: '매우 낮음' 1점, '약간 낮음' 2점, '보통' 3점, '약간 높음' 4점, '매우 높음' 5점임.

<그림 5-2> 식품안전관리업무별 서울시의 역할 중요도 평가

4. 행정기반 구축 과제

- 식품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행정기반 구축 9개 과제 중에서 4점 이상을 받은 항목은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식품위생직·보건직 등의 전문 공무원 확충' 2개임. 나머지 7개 항목도 모두 3.5점 이상(보통 3점, 약간 높음 4점)을 받음.

- 식품안전 행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서는 35명의 응답자가 ‘식품안전 분야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공무원 전문성 향상 교육’을 제안하였음.
-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계획 수립
 - 식품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구축해야 할 행정기반으로 필요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서울시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임. 응답자의 44.2%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며,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37.5%임. 즉 응답자의 81.7%가 ‘서울시 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함(<표 5-21> 참조).
 - 민간 전문가(4.40점)가 일반행정직 공무원(4.22점)이나 전문직 공무원(4.09점)에 비해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표 5-22> 참조).
- 식품안전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직, 보건직 공무원의 정원 확대 및 충원
 - 두 번째로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행정기반은 ‘식품위생직, 보건직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충원’임.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며,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4%임. 즉 74%가 전문인력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봄.

<표 5-21>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기반 항목별 필요도 평가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계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계획 수립	1 (0.5)	5 (2.4)	32 (15.4)	78 (37.5)	92 (44.2)	208 (100.0)
식품안전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직, 보건직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충원	12 (5.8)	11 (5.3)	31 (14.9)	50 (24.0)	104 (50.0)	208 (100.0)
여러 부서로 분산된 식품안전업무 조정을 위한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협의체’ 구성	11 (5.3)	12 (5.8)	50 (24.2)	67 (32.4)	67 (32.4)	207 (100.0)
‘서울시 식품조례’ 제정	9 (4.3)	17 (8.2)	59 (28.5)	69 (33.3)	53 (25.6)	207 (100.0)
식품안전 현장정보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평가 식품안전 시책의 심의·평가·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시 식품안전위원회’ 구성	11 (5.3)	20 (9.6)	58 (27.9)	74 (35.6)	45 (21.6)	208 (100.0)
식품안전 정보교환 및 조정을 목적으로 서울시, 서울 지방식약청,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 행정연락회’ 구성	11 (5.3)	15 (7.2)	71 (34.1)	65 (31.3)	46 (22.1)	208 (100.0)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수거 검사 및 분석 업무 확대와 연구인력 충원	9 (4.3)	19 (9.1)	67 (32.2)	68 (32.7)	45 (21.6)	208 (100.0)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위해 관련 국·내외 사전조사 및 정보수집 기능 확대	6 (2.9)	20 (9.6)	80 (38.5)	57 (27.4)	45 (21.6)	208 (100.0)
식품문제를 건강, 환경, 경제, 문화, 안전 등 종합적 차원에서 계획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 식품위원회’ 설치	12 (5.8)	27 (13.0)	53 (25.5)	71 (34.1)	45 (21.6)	208 (100.0)

- 전문직 공무원(4.34점)이 민간 전문가(4.03점)와 행정직 공무원(3.77점)에 비해 전문인력 충원이 더 필요하다고 봄(<표 5-22> 참조).

<표 5-22> 응답자 유형별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기반 필요도 평가

(단위 : 점)

구 분	민간 전문가	일반 공무원	전문 공무원	전체	F값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계획 수립	4.40	4.22	4.09	4.23	2.606*
식품안전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직, 보건직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충원	4.03	3.77	4.34	4.07	4.240**
여러 부서로 분산된 식품안전업무의 조정을 위한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협의체' 구성	4.09	3.65	3.69	3.81	3.274**
'서울시 식품조례' 제정	4.01	3.72	3.36	3.68	7.141***
식품안전 현장정보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평가 식품안전 시책의 심의·평가·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시 식품안전위원회' 구성	3.96	3.30	3.49	3.59	6.637***
식품안전 정보교환 및 조정을 목적으로 서울시, 서울 지방식약청,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 행정연락회' 구성	3.79	3.48	3.46	3.58	2.094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수거 검사 및 분석 업무 확대와 연구인력 충원	3.68	3.62	3.48	3.58	0.708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위해 관련 국·내외 사전조사 및 정보수집, 정보제공 기능 확대	3.47	3.60	3.59	3.55	0.326
식품문제를 건강, 환경, 경제, 문화, 안전 등 종합적 차원에서 계획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 식품위원회' 설치	3.78	3.27	3.51	3.53	3.325**

주 : '매우 낮음' 1점, '약간 낮음' 2점, '보통' 3점, '약간 높음' 4점, '매우 높음' 5점임.

* p<0.1, ** p<0.05, *** p<0.01임.

○ 분산된 식품안전업무의 조정을 위한 식품안전행정협의체 구성

- 세 번째로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행정기반은 '여러 부서로 분산된 식품안전업무의 조정을 위해 서울시 식품안전행정협의체 구성'임. 응답자의 32.4%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며,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32.4%임. 즉 응답자의 64.8%가 식품안전업무 조정을 위한 서울시 식품안전행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민간 전문가(4.09점)가 일반행정직 공무원(3.65점)과 전문직 공무원(3.69점)에 비해 식품안전행정협의체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서울시 식품조례 제정

- '서울시 식품조례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33.3%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며, 25.6%는 매우

필요하다고 함. 즉 응답자의 58.9%가 서울시 식품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민간 전문가(4.01점)가 일반행정직 공무원(3.72점)이나 전문직 공무원(3.36점)에 비해 서울시 식품조례 제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표 5-22> 참조).

○ 식품안전 시책 심의·자문 역할을 하는 서울시식품위원회 구성

- '식품안전 시책 심의·자문 역할을 하는 서울시식품위원회 구성'에 대해 응답자의 35.6%가 조금 필요하다고 하며, 응답자의 21.6%는 매우 필요하다고 함. 즉 응답자의 57.2%가 서울시식품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민간 전문가(3.96점)의 경우 일반행정직 공무원(3.30점)과 전문직 공무원(3.49점)에 비해 서울시식품위원회 구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표 5-22> 참조).

○ 식품안전 관련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 행정연락회 구성

- 식품안전 정보 교환 및 업무조정을 목적으로 서울시, 서울지방식약청,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 행정연락회 구성'에 대해 응답자의 31.3%는 조금 필요하다고 하며, 22.1%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즉 응답자의 53.4%가 식품안전 행정연락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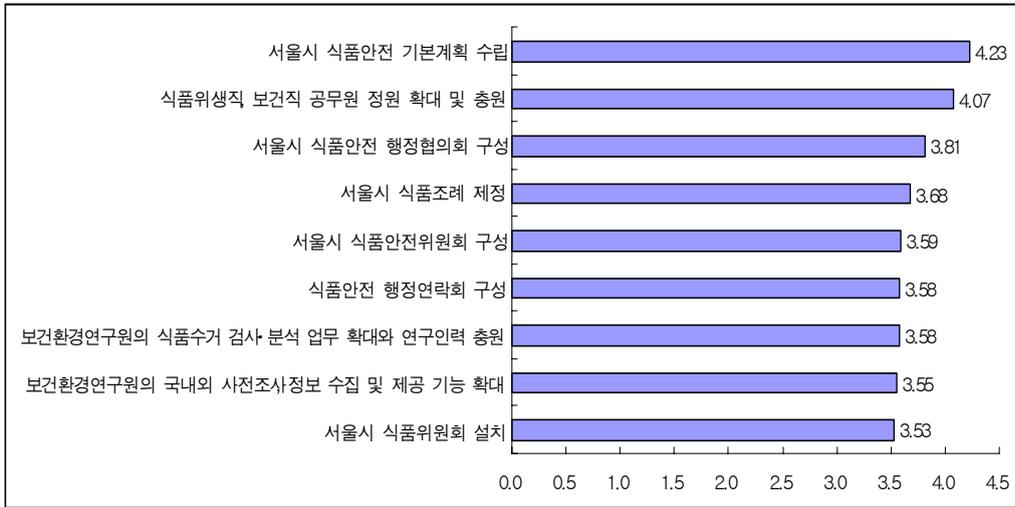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사전조사 및 정보수집 기능 확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조사 및 정보수집 기능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27.4%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며, 응답자의 21.6%는 매우 필요하다고 함. 즉 응답자의 49%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위해 관련 국내외 사전조사 및 정보 수집,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식품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 식품위원회 설치

- 식품문제를 건강·환경·경제·문화·안전 등 종합적 차원에서 계획관리하기 위한 서울시 식품위원회 설치에 대해 응답자의 34.2%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며, 21.6%는 매우 필요하다고 봄. 즉 응답자의 55.7%가 식품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하기 위한 서울시 식품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민간 전문가(3.78점)가 일반행정직 공무원(3.27점), 전문직 공무원(3.51점)에 비해 식품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하기 위한 서울시 식품위원회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표 5-22> 참조).



주 : '매우 낮음' 1점, '약간 낮음' 2점, '보통' 3점, '약간 높음' 4점, '매우 높음' 5점임.

<그림 5-3> 서울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기반 항목별 필요도

제2절 국·내외 식품안전관리실태 및 시사점 종합

1. 식품안전의 정책 이슈화 및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 1990년대 들어 BSE 확산, GM 식품의 상용화, 식품의 국제교역량 증가 등의 이유로 식품 안전이 세계적으로 주요 정책이슈로 대두하고 있음. 그리고 건강과 식품안전, 관광산업과 식품안전, 환경문제와 식품안전이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 이슈가 국가,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08년 들어 일명 광우병 파동, 조류독감 파동, 유전자변형 콩 수입, 식품이물질 사건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선진국 및 세계기구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정책방향으로 수용하고 있음. 첫째,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망 모든 단계에 걸쳐 식품안전을 일관관리함. 둘째, 식품안전관리에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의 세 요소로 구성된 위험분석체계를 도입해 관리함. 셋째,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식품으로 인한 건강위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강구함.
- 식품안전 일관관리 원칙, 위험분석체계에 기반한 관리원칙, 사전예방원칙을 수용하면서, 다

음 5가지 전략들이 채택되고 있는 추세임. 첫째, 식품안전 관리에 소비자인 시민 참여를 강조함. 둘째, 생산자와 사업자의 책임 강조와 지원을 중시함. 셋째, 시민 및 학교의 식품안전 교육을 활성화함. 넷째, 식품안전과 건강간의 연관성을 강조함. 다섯째, 식품안전 정책의 기반이 되는 조사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 중앙정부는 2008년 7월 1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6가지 전략을 제시함. 첫째, 식품위해 사전예방, 둘째, 국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관리, 셋째, 식품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 넷째,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 수입, 다섯째, 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 여섯째, 식품안전추진체계 강화임.

2. 식품안전 통합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과 조례 제정

-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을 일관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 및 이해당사자들 간의 통합 및 조정 네트워크가 중요함. 이런 차원에서 영국, 일본은 기존의 식품안전법(영국), 식품위생법(일본)과 별도로 식품안전 통합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으로 식품기준법(영국), 식품안전기본법(일본)을 제정함. 도쿄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쿄도식품안전조례’를 제정함.
- 우리나라도 2008년 6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함. 서울시는 2008년 8월 현재 서울시식품안전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음.

3. 위험평가기관 기능 강화, 전문인력, 조사연구 강조로 식품안전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

- 선진국은 식품안전평가 전문기구의 신설 또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과학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함. 영국은 2000년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식품기준청을 설치함. 일본은 2003년 내각부에 식품위험평가를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함.
- 도쿄도와 런던의 경우, 식품안전의 확보 기반으로서 기초조사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도쿄도 치요타구의 경우, 식품안전 감시관리업무를 하는 15명의 공무원은 자격요건(의사, 수의사, 공중보건 등)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치요타구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감시원 인력 확충과 전문성 향상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 안전평가를 하는 기관들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 집행액(2007년) 중에서 조사 및 연구사업을 위한 지출은 집행액의 1.7%에 불과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건위생업무 분야 공무원 중 전문공무원(보건·수의·농업·축산직)은 42.6%로 절반이 못됨. 식품관련업소가 치요타구(10,664개소)보다 많은 강남구(14,541개소)의 경우, 보건위생과 공무원은 9명이며, 이 중 5명이 전문공무원임. 이처럼 자치구의 보건위생과가 공중위생업무까지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식품안전 전문공무원의 수와 절대 인력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기준 설정, 실행조사와 평가, 연구조사 분야의 대응수준은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았으나, 향후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됨. 식품안전 전문 공무원의 정원 확대 및 충원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4.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 런던과 도쿄도는 식품안전 일관관리, 위험분석체계 도입을 기본방향으로 수용하고, 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해 식품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런던은 식품안전을 포함한 10개년 런던식품전략계획을, 도쿄도는 5개년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함. 그리고 이 두 도시는 기본계획에 근거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이 연구의 식품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식품안전을 위한 행정기반 구축 과제에 '서울시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5. 식품안전에 소비자인 시민 참여 중시

- 식품안전이 식품안심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함. 이런 점에서 식품안전정책 수립과 집행에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것이 추세임.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사업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계획 공표, 계획 성과를 주민에게 알리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런던시도 런던식품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6개월간 시민홍보, 공청회, 시민의견조사 등의 절차를 거침.

6. 행정부처 및 이해당사자 간 연계·조정 네트워크 강조와 기구 구축

- 도쿄도는 복지보건국, 생활문화국, 환경국, 산업노동국, 중앙도매시장 등 식품 관련 부서의 장으로 ‘식품안전대책추진조정회의’를 구성하여 부서별 관련업무의 연계·조정·정보교환을 하고 있음. 그리고 사안에 따라 관련부서의 과장급으로 대책회(BSE 대책회, 食育대책회 등)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또한 전문가, 사업자대표, 시민대표로 ‘식품안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식품안전시책과 사업에 심의회의 의견과 평가결과를 반영함. 그리고 전문가와 공모를 통해 선출된 도민대표로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식품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 의견을 시책에 반영함.
- 런던의 경우, 식품정책은 소비자인 시민, 사업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루된 이슈이므로, 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으로 협력하여 계획을 추진할 것을 런던 식품전략계획에 명시하고 있음. 식품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런던식품위원회는 중앙부처를 비롯해, 런던지방청, 런던기초자치단체협회, 런던시의 여타 위원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
-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식품안전 업무를 연계, 조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 틀을 갖추게 되었고 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08년 1월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등으로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함. 그리고 식품관련단체협의회(소비자·생산자·유통업단체), 식품안전대책자문단(전문가학회·단체), 식품안전감시협의회(서울시·자치구·소비자단체)를 현재 구성 중임. 하지만 도쿄도처럼 행정부처 간 업무협력, 조정,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공식적 기구는 없음.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는 여러 부서로 분산된 식품안전업무의 조정을 위한 ‘서울시 식품안전행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64.8%가 필요하다고 평가함. 특히 전문가 집단은 공무원에 비해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함.

7. 행정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 식품안전 관리에 여러 행정주체가 관여하는 만큼, 행정주체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있음. 영국은 식품기준청에서 식품안전법을 집행하는 지방정부 및 관련 집행기구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식품안전 업무성과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함. 기초자치단체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감독, 유통식품 감시관리를 맡고 있음. 도교도는 자치구와 협약을 맺어, 식품감시업무의 역할을 분담함. 즉 대규모 제조업체와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감시관리는 도교도가 하고, 자치구는 관내의 여타 식품관련업소에 대한 감시관리업무를 함.

- 우리나라는 식품유형별, 식품망 단계별로 감시관리 업무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은 실정임. 품목별, 식품공급망 단계별 역할분담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도단속의 중첩 및 사각지대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계속 받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안전 업무별로 식약청,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의 역할분담체계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행정주체 간 업무조정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음.

8. 생산자·사업자 책임 강조와 지원사업 추진

- 식품안전의 사전예방관리 차원에서 생산자와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생산자와 사업자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런던은 환경기준이 높은 농업경영계획을 채택하고, 가공제조단계에서는 안전, 보건지침 법규를 강화함. 동시에 농업인과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훈련, 자문, 정보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함. 도교도는 식품안전조례에서 사업자의 식품안전 확보 책임을 강조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도 하고 있음.
- 서울시 식품안전과에서는 2008년 들어 식품제조업체에 전문가를 멘토로 결연하여 기술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교육과 채래시장 식품업소의 위생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농협중앙회와의 협약을 통해 농산물 출하 전의 안전성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농산물을 출하하는 산지안전성검사사업을 하고, 산지안전성검사품을 부착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유통시킴. 서울시도 생산자·사업자의 책임강조와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일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를 구체적 목표치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 서울시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8.8%가 식품생산·가공·제조업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식품안전 및 위생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자의 47.7%가 위반 시 처벌 조치 미약을 꼽고 있으며, 23.2%는 식품관련 종사자의 위생 및 도덕의식 미약을 꼽고 있음.

-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는 식품안전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민간전문가가 공무원에 비해 생산자 지원사업 행정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9. 소비자인 시민 및 학교의 식품안전·식생활 교육 강조

- 소비자인 시민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제53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시민 및 학생 대상 건강·영양교육프로그램에 식품안전을 포함하는 것을 결의함. 런던시는 식품전략계획의 6대 실천과제로 시민들의 식품 이슈 이해도 증진과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학교의 요리 및 식생활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음. 도쿄도도 식품안전 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 및 학생 대상의 식육계획(食育計劃)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교육 실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음. 특히 전문가가 공무원보다 더 미흡하다고 평가함.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교육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63.5%임. 그리고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교육 실시의 행정주체로 서울시를 드는 응답자가 50%이며, 자치구는 29.6%, 중앙정부는 20.4%임.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기본방향

1. 부서별 식품사업을 식품안전 일관관리 개념으로 총괄관리

- 복지국,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생활경제담당관, 식품안전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자치구별로 추진되고 있는 식품관련사업을 식품망 단계별 일관관리 개념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서울시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재배단계 농약 안전성 검사, 도시농장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산지안전성 검사사업 및 산지안전성 검사품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고 있음. 그리고 생활경제담당관은 청평 상수원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주말농장사업을 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들로 1차 생산단계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구 분	1차 생산단계 (재배·사육)		제2차 생산단계 (제조·가공)		유통단계	소비단계
	서울 시내	서울 시외	서울 시내	서울 시외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공사						
식품안전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생활경제담당관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자치구 식품안전 부서						

<그림 5-4> 서울시 부서별 식품안전 일관관리 개념

- 식품안전추진반의 제조업체 식품안전 기술지원사업과 HACCP 지원사업으로 2차 생산단계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식품안전추진반의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래시장 위생관리, 생활경제담당관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사업, 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 속성검사 및 원산지표시 지도감독,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의 유통식품 수거 및 감시업무로는 유통단계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식품안전추진반의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운영,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의 식품접객업소 위생 감시·감독, 생활경제담당관의 농축산물직거래 지원사업, 소비자보호사업, 농업기술센터의 전국 우수농산물 추천 및 우리농산물 가공 및 요리교육은 소비단계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임.
- 서울시의 부서별 식품사업을 종합해보면 식품망 단계별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식품망 단계별 식품안전 일관관리(즉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부서별 단위사업의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별 사업들을 식품안전 일관관리 개념을 적용하여 총괄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함.

2. 식품안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 적용

- 식품안전 문제를 환경, 식품산업, 건강, 음식문화와 통합하여 접근하는 방향이 필요함. 식품 안전과 환경, 식품산업, 건강, 음식문화는 상호의존적 정책영역으로, 상호상승시키는 관계에 있음. WHO는 보건정책에서 식품안전이 우선순위를 갖도록 식품 안전성 향상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등의 경제적 이득, 경제발전(식품시장 확대, 관광경쟁력 제고) 효과를 강조하기도 함.
- 런던시의 경우, 식품안전, 환경, 식품경제, 음식문화, 식품안보가 상호의존적 정책분야이며, 통합적 식품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계도시 런던’이란 시정목표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음. 이런 차원에서 런던시의 식품정책은 8단계의 식품망 단계(1차 생산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계까지)마다, 환경, 건강, 식품경제, 음식문화, 식품안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이런 통합적 식품정책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 일관관리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예를 들면 로컬푸드(local food)유통사업은 식품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유통시간 단축과 이력추적관리의 용이성 등으로 식품안전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진됨. 또한 환경기준이 높은 영농방식 채택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중개서비스는 환경부담을 감소시키고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되고 있음. 런던시의 임대채소밭 확대사업의 경우, 런던의 환경, 식품생산에 대한 시민 및 학생교육, 식품안전 확보라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온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3. 이해관계자 식품안전 역량 강화

- 최근 식품안전 사건의 원인 및 식품 관련 이슈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됨. 식품안전 문제는 식품 국제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 간 분쟁을 야기할 잠재성이 있는 분야임. 그리고 정부 불신,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분야가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생산자·사업자, 위험평가자, 위험관리 담당 정책결정자 및 집행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소비자 시민 및 청소년의 역량강화
 - 소비자인 시민, 청소년이 식품안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식품안전정책에서는 소비자 및 학생 대상의 식육사업(食育事

業)을 중시하여, 식육계획(食育計劃)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식육(食育)은 건전한 식생활과 건강 추구, 음식문화 계승을 위해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지식습득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의 선택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서울시도 연령별, 또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식품안전 및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 및 강좌 등의 방식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함.

○ 공무원의 역량강화

- 식품안전 사건의 복잡성, 식품이슈의 복합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음. 현재 서울시는 식품직군이 없는데, 식품직군을 설치하여 식품분야 전문 공무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 인력 중에서 일반행정직 비율이 53%인 반면, 보건·수의직은 32%에 불과함. 25개 자치구의 보건위생업무 인력의 47%는 일반행정직이며, 보건·수의·농업·축산직은 43%임. 하지만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하므로,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전문공무원의 차별화된 식품안전 교육훈련이 필요함. 또한 식품분야 업무에 관련 직군의 전문직 공무원 배치율을 점차 확대해야 함.

○ 안전평가 및 조사연구 기능 강화

- 서울시에는 위험평가 담당과 조사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 식품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식품안전 선행조사와 평가의 핵심주체로 중앙정부를 선택한 응답자가 55%이지만, 서울시와 자치구를 드는 응답자도 45%가 됨. 식품안전 관련 연구 조사 및 자료 구축에서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57%임.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 평가업무 확대와 연구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4.3%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국·내외 사전조사와 정보 수집 및 제공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49%임. 서울시가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독자적인 위험평가 기능을 강화·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런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험평가 및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충원 및 장비확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생산자·사업자 역량강화

- 식품 생산자와 사업자의 자주책임을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세계적 추세임. 생산자와 사업자의 식품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기술보급 및 교육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해야 함.

4. 식품안전에 시민 참여와 정보제공 증시

- 서울시가 식품안전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잘해 식품안전의 과학성,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하여도, 시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식품안심을 확보할 수 없음. 따라서 소비자인 시민의 의견을 식품안전정책에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에 시민과 소비자단체의 참여기회를 강화해야 함. 서울시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공청회, 계획안 공고와 홍보절차를 거쳐야 하며, 매년 사업성과를 공고하도록 함.

5. 식품안전 기초조사연구의 활성화

- 식품안전을 건강, 환경, 식품경제, 관광, 식량안보 등의 영역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제에 대한 기초조사연구가 전제되어야 함. 그리고 서울시가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식품안전정책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조사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기초조사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제4절 행정기반 구축방안

1. 조직

1) 식품보건국(가칭) 신설

(1)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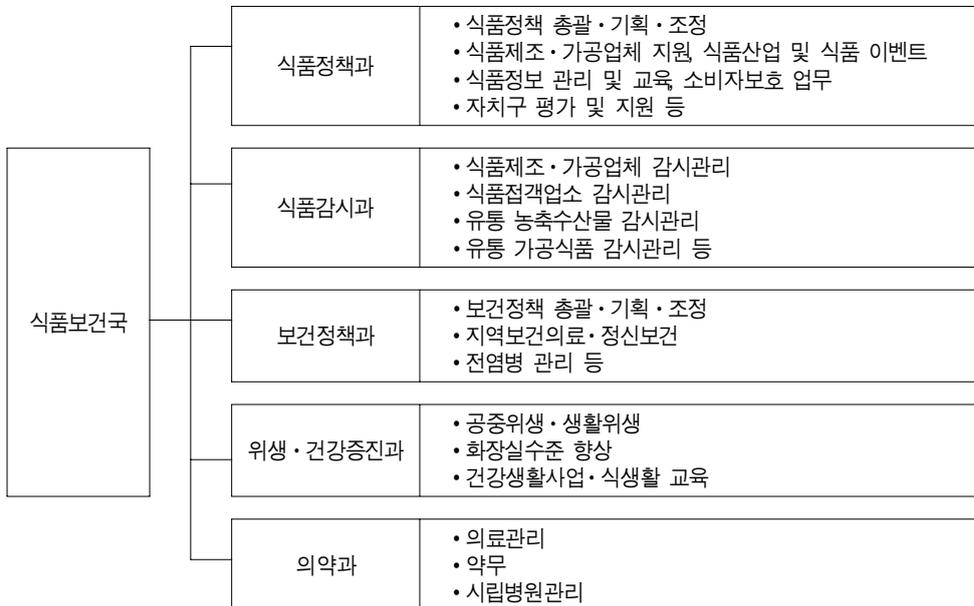
- 식품안전 업무와 보건·건강업무를 단일 국 단위로 배치함.
 - 식품안전업무와 보건·건강업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 예를 들면 식중독 발생의 초기보고와 대책은 보건소장을 거치게 되어 있음. 25개 자치구 중 21개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안전·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염병 관련 시험연구와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음. 보건·건강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정책담당관, 건강증진담

당관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하에 있음. 식품안전, 보건·건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양분화되어 업무전달체계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식품안전과의 기획, 통합·조정 역할 강화
 - 식품안전추진단의 위생과, 식품안전과,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업무가 감시·감독에 치중되고 있음. 식품안전과의 기획, 통합·조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보교류·홍보·교육·소비자보호 업무 강화
 - 식품안전에서 식품안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험정보교환 업무가 중요하므로 위험정보교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함.

(2) 개편안

- 복지국의 식품안전추진단, 여성가족정책관의 보건정책담당관, 건강증진담당관 업무를 통합하여 식품보건국(가칭)을 신설함. 이곳의 식품분야에 식품안전정책을 총괄·기획·조정하는 식품정책과와 식품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식품감시과를 둬. 보건분야에는 보건정책을 총괄·기획·조정하는 보건정책과, 위생 및 건강업무를 담당하는 위생·건강증진과, 의약업무 담당 의약과를 둬.



<그림 5-5>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체계 개편안

2)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조정회의(가칭) 구성과 운영

(1) 방향

- 식품안전기본법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면 중앙정부의 경우, 8개 부처가 부처별 식품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국무총리는 부처별 계획을 근거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로 통보를 하고, 각 부처는 이에 근거하여 부처별 식품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서울시도 식품안전 통합일관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의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를 준용함.

(2) 운영안

- 생활경제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공사, 보건환경연구원, 특별사법경찰지원과 등 식품관련부서의 장으로 '식품안전대책조정회의'를 구성함. 의장은 식품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으로 함.
- 식품안전대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관련업무의 식품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
- 식품안전추진회의에서 기관별 식품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조정 및 논의를 거치고, 의장은 이를 반영하여 식품안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함. 의장은 '서울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 식품안전종합관리계획을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견청취,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침.
- '식품안전대책조정회의'의 구성과 역할을 서울시식품안전조례에 명문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도록 함.

2. 인력

1) 자치구 식품안전위생 분야 공무원 적정 배치

(1) 현황과 문제점

- 식품위생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지침에 의하면 자치구는 식품관련업소의 영업 신고와 관리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자치구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과 지도·점검, 식품유통·판매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 유통 가공식품의 수거·검사, 엽경채소류 수거·검사, 학교주변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 식품회수명령과 폐기 조치 등의 업무를 해야 함.

- 자치구의 식품안전업무는 규제행정분야에 속하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행정업무가 아니므로 자치구 행정에서 중요도가 낮고 관심을 덜 받는 분야임. 이런 점에서 인력 감축 시 우선대상 분야가 되면서,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직무분석에 따른 적정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음.
- 자치구의 식품안전 담당부서의 인력이 업무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되지 않았으며, 인력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식품관련업소가 가장 많은 강남구(1만 4,541개)의 보건위생과 인력이 9명이며, 업소수가 가장 적은 금천구(4,273개)의 보건위생과 인력은 13명임. 일반행정직과 전문직군(보건, 수의, 농업, 축산직 등) 공무원 수도 자치구별 차이가 큼. 종로구는 보건위생과 인력 11명 중 1명만 전문직군이며, 반면 동작구는 보건위생과 인력 14명 중에서 8명이 전문직군임.
- 식품관련업소수가 1만 664개소가 있는 도쿄도 치요타구의 경우, 전문직 공무원 15명이 식품안전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허가업무, 민원, 상담 등에 업무가 국한되고 감시지도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평가를 함. 이에 따라 인력 확충이 과제로 대두됨. 서울시의 공무원 1인당 식품관련업소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1인당 1,616개소이고, 가장 적은 구는 315개소로 자치구별 차이가 큼. 더욱이 보건위생과에서 공중위생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1인당 식품관련업소 수는 실제 이보다 더 많음. 이처럼 자치구의 식품안전 담당 인력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전반적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이 미흡하고 수거검사도 미흡함.

(2) 방안

- 자치구에서 수행해야 하는 식품안전 직무를 기준으로 표준화된 필요인력수를 산정하는 연구를 함. 공무원 1인당 담당업소 수, 전문직군 필요인력수를 산정하여, 이 기준을 근거로 자치구의 식품안전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전문직군(보건, 수의직, 농업, 축산 등)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중앙정부,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정원 확대 방안을 모색함.
- 식품안전 업무의 전문성이 점차 요구되므로 서울시도 식품직군을 두고, 식품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함.

2) 공무원 식품안전 교육 내실화

(1) 방향

- 식품안전 업무내용이 계속 변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식품안전 조직과 공무원의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전문직 공무원은 식중독 대응 모의훈련과 같은 교육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전문공무원과 함께 행정공무원 대상으로 식품안전 업무 교육을 강화하며, 직군별 차별화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함.

(2) 방안

- 서울시에서 전문직(보건, 수의, 농업, 축산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전문 공무원 교육을 실시함. 커리큘럼 구성과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함.
- 서울시에서 식품안전 업무에 배치받은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공무원 교육을 실시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도 할 수 있음.

3.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초조사연구 기능 강화

-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수거식품의 안전성 검사에 업무가 국한되어 있음. 식품안전 기준 설정과 위험평가 기능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식품안전 선형조사, 해외정보와 학술 정보 수집, 시험검사법 개발과 개량 등의 기초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서울시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 서울시도 런던, 도쿄도처럼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식품 전문가들은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기반으로 '서울시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서울시 식품안전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식품안전기본계획은 런던의 식품전략계획처럼 식품망 단계별로 식품안전과 건강, 환경, 식품경제, 식량안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도록 함.

- 런던, 도쿄도처럼 계획수립과정에 시민의견 반영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구함.

5. 식품진흥기금의 활용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이 2007년 현재 약 954억원이 조성되어 있음. 식품진흥기금 집행액의 약 절반이 음식점 시설개선 용자사업에 지원됨.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 공무원 교육훈련커리큘럼 개발, 기초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문헌자료〉

- 곽노성, 「국가 식품안전관리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보건복지포럼 제71호, 2002.
- 광주광역시, 「광주통계연보」, 2006.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7.
- 대구광역시, 「대구통계연보」, 2006.
-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2006.
-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 2006.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6~2007.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0, 2003, 2004, 2005, 2006, 2006.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년 식품안전 관리지침」, 2007.
-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 「WHO의 식품안전을 위한 세계적 전략」, 2005.
- 오승용, 「농축산물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2002.
- 울산광역시, 「울산통계연보」, 2006.
- 이철호, 「서울시민 밥상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정책 발전방안」, 식품안전정책 서울포럼, 2008.
- 인천광역시, 「인천통계연보」, 2006.
- 최지현 외,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7.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OECD 식품안전성특별회의 대응전략 연구」, 2000.
- 도쿄도 복지보건국, 「東京都食品安全推進計劃」, 2005.
- 千代田區, 「2008년 千代田區食品衛生監視指導計劃」, 2008.
- London Development Agency,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for London*, 2006.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legal.seoul.go.kr/2005/law/now_law.php

sihe.seoul.go.kr

www.city.chiyoda.lg.jp

www.food.gov.uk

www.fsc.go.jp

www.fsi.seoul.go.kr

www.hpa.org.uk

www.kfda.go.kr

www.lacors.gov.uk

www.lda.gov.uk

www.london.gov.uk

www.mifaff.go.kr/

www.the-apa.co.uk

www.Tokyo-eiken.go.JP

부 록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2008년 현재 「서울시 식품안전을 위한 행정기반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식품안전 정책방향 및 과제설정과 관련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고견은 서울시의 식품안전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08.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작성방법

각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항목을 보기에서 골라 해당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조사기간 및 회수방법

동봉한 조사표는 귀하의 이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완료한 조사표는 아래 연구원 이메일로 회신하시거나,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 아래 연구원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조사표는 6월 18일까지 작성을 완료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137-071)

담당자 : 신경희 ☎ 2149-1255 / email skhee@sdi.re.kr

정순주 ☎ 2149-1368 / email prayeris@sdi.re.kr

1. 다음은 식품안전을 위한 업무들입니다. 각 업무별로 아래 질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래 보기에서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를 골라 표 안에 적어 주십시오.

1-1. 각 업무별로 현재 우리 사회의 대응수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각 업무별로 향후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3. 각 업무별로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1. 현재 대응수준				
: ① 매우 미흡 ② 대체로 미흡 ③ 보통 ④ 대체로 충분 ⑤ 매우 충분				
1-2. 행정수요 변화전망				
: ① 매우 감소 ② 조금 감소 ③ 보통 ④ 조금 증가 ⑤ 매우 증가				
1-3. 핵심 행정주체				
: ① 중앙정부 ② 서울시 ③ 자치구				

업무 내용	1-1. 현재 대응수준	1-2. 행정수요 변화	1-3. 핵심 행정주체
<식품안전 기준 및 위험관리>			
1) 과학적, 합리적 식품안전기준 설정			
2) 식품 안전에 대한 선행조사와 평가			
3) 국내·외 식품 위해(危害) 정보 수집과 제공			
4)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			
5)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 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			
6)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업무 내용	1-1. 현재 대응수준	1-2. 행정수요 변화	1-3. 핵심 행정주체
<식품안전 관리 감독>			
7) 유통식품의 수거 및 위해 검사			
8) 유통식품의 성분 및 원산지 표시 감시와 계도			
9)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관라 지도			
10)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감시와 계도			
11) 음식점의 위생관리 감시와 계도			
12)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13) 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 유통관리			
14)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15) 소비자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구축 및 처리			
<정보 및 교육>			
16) 생산자 및 사업자 대상 식품안전 정보·기술 제공 및 교육 실시			
17) 식품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18)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			
19) 시민,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정보 교환 확대			

2. 서울시는 2008년 1월 위생과 식품안전팀을 분리 확대하여 식품안전과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식품안전과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각 업무에 대하여 서울시 단위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로서의 중요도를 보기를 참조하여 적어주십시오.

〈보기〉
중요도 :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담당 역할	중요도
1) 서울시 식품안전 업무의 기획 및 계획 기능	
2) 위생과, 보건정책과, 생활경제과 등으로 분산된 식품안전 업무의 조정과 통합	
3)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 조정 및 매개자 역할	
4) 식품안전 관련 연구, 조사 및 데이터 구축	
5) 자치구 식품안전 업무 평가	
6) 자치구간 예산, 사업 등의 격차 조정 및 지원 역할	
7) 식품의 수거검사 및 원산지 표시상태 등 감시·지도 업무	
8) 식품접객업소 위생 감시 및 관리지도	
9)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 감시 및 지도업무	
10)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위생평가 및 관라 지도	
11)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여부 지도·감독	
12)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이행 권장을 위한 생산자 지원사업	
13) 식중독을 비롯한 식품안전 위기관리 긴급대응체제 구축과 운영	
14) 식품 위해 정보 수집과 제공	
15) 시민 대상 식품안전 및 건강 식습관 정보 제공 및 교육 상담	
16) 식품안전 자주(自主)관리 권장을 위한 사업자 대상 지원 교육, 정보 제공	
17) 소비자 불량·부정식품 신고 접수 및 처리	
18) HACCP, GAP, GMP, 이력추적관리제 적용 식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19) 식품안전 관련 사업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간 연계 의견교류 및 활동지원	

3. 서울시가 식품안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래 제시된 행정기반 항목에 대하여 서울시 단위에서 필요한 정도를 보기를 참조하여 적어주십시오.

〈보기〉

필요도 :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행정기반 항목	필요도
1) '서울시 식품조례' 제정	
2)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계획 수립	
3) 식품안전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직 보건직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충원	
4) 식품문제를 건강, 환경, 경제, 문화, 안전 등 종합적 차원에서 계획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 식품위원회' 설치	
5) 식품안전 현장정보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평가, 식품안전 시책의 심의·평가·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시 식품안전위원회' 구성	
6) 식품안전과, 위생과, 보건정책과, 생활경제과, 특별사법경찰지원과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된 식품안전업무의 조정을 위한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협의회' 구성	
7) 식품안전 정보교환 및 조정을 목적으로 서울시, 서울 지방식약청,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 행정연락회' 구성	
8)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수거 검사 및 분석 업무 확대와 연구인력 충원	
9)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위해 관련 국·내외 사전조사 및 정보수집 정보제공 기능 확대	

4. 문항2와 문항3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 서울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나 필요한 행정기반 등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직접 적어주십시오.

5.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특성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5-1. 성별 1) 남자 2) 여자

5-2. 연령 만_____세

5-3.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일반행정 공무원 2) 보건직, 수의직, 식품위생직 등의 전문 공무원
- 3) 교수 및 연구원 4) 기업의 식품전문가
- 5) 소비자 및 시민단체 활동가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영문요약(Abstract)

Policy Recommendations for Food Safety in Seoul

Kyung-Hee Shin · Kyung-Hye Kim · Soon-Joo Ju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policy directions and to suggest better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order to guarantee food safety to the public. This study consists of four subject areas. Firstly, it reviews the international trend of food safety policy, followed by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third part covers the administration system for food safety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ased on these reviews, it recommends policy guidelines for food safety policy in Seoul.

This study suggests five guidelines as follows. First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eeds to integrate food related administration offices into an unified unit in order to perform effective management. Secondly, food safety policy should be combined with health, environment, and food economy policies. Thirdly, empowerment of stake-holders such as consumers, food producers, food businessmen, public officers, and researchers is a base line requirement. Fourthly,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more encouraged and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more efforts to provide food related information to the public. Lastly, more investment on basic research is recommended.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International Trend of Food Safety Policy

1. Principles of Food Safety Management in Public
2. Food Safety Policies in Abroad

Chapter 3 The Analysis of Policies and Management System for Food Safety in Korea

1. Legal System for Food Safety
2. Management System for Food Safety
3. Policies for Food Safety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4. Management System for Food Safety at the Local Level

Chapter 4 The Evaluation of Food Safety Polici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 Food Production and Food Consumption in Seoul
2. Conditions of Food Safety Management in Seoul
3. Evaluation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hapter 5 Policy Recommendations for Food Safety in Seoul

1. Prospects of Professionals and Public Officers on Food Safety Policy
2. Basic Directions
3. Suggestions for Better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ference

Abstract

시정연 2008-SR-02

**서울시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행정기반 구축 방안**

발행인 정문건

발행일 2008년 9월 30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5,000원 ISBN 978-89-8052-619-2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